

북한인권자료집

#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 김수암 · 조정현 · 유현정 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자료집

#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 김수암 · 조정현 · 유현정 편

##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인 쇄 2012년 12월

발 행 2012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8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표지·레이아웃 디자인 두일디자인 (02-2285-0936)

인 쇄 처 두일디자인

가 격 19,500원

ISBN 978-89-8479-658-4 93340

© 통일연구원, 2012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관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 발간사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는 북한인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북한인권  
권에 대한 관심을 국내외에 확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북한인권 자료집  
을 매년 발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첫 작품으로 탈북자와 관련  
된 국제조약과 중국, 북한, 우리나라의 법령을 묶어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  
니다. 원문과 번역본의 비교를 위해 국제조약의 경우에는 영문 조약 원문을,  
그리고 중국 법령의 경우에는 중국어 원문을 각각 실었습니다.

본 자료집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탈북자 문제는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점에서 제1장은 재중 탈북  
자의 강제송환과 관련된 조약과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자조약으로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및 고문방지협약과 중국과 북한의 양자조약인  
1986년 북중 상호협력의정서를 실었습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은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반하는 국제법 위반행위입니다. 비록 북중 간에는  
1986년 상호협력의정서가 체결되어 있지만 강제송환금지는 국제법상 강행규  
범의 일종으로 간주하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강행규범에 반하는 조약은 국  
제법상 무효입니다. 다시 말해 북한과 중국은 양자조약인 1986년 상호협력  
의정서를 근거로 탈북자 강제송환의 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1장  
에는 이밖에도 탈북자의 체포 및 처벌과 관련이 있는 중국과 북한의 국내법으  
로 중국의 형법과 우리의 출입국관리법에 해당하는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출경입경관리법, 북한의 형법과 출입국관리법을 실었습니다. 특히 2012년 6월  
30일 제정된 중국의 출경입경관리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

규정되어 있는데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정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출경입경관리법의 시행으로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은 폐지되게 됩니다.

제2장은 탈북자 문제의 또 다른 어두운 측면인 무국적 탈북아동과 관련된 조약 및 일반논평과 법령들로 편집하였습니다. 재중 무국적 탈북아동의 보호와 관련이 있는 조약으로 아동권리협약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실었고 관련된 내용으로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13도 함께 실었습니다. 또한 관련된 국내법령으로 중국의 헌법과 국적법 및 의무교육법, 북한의 국적법, 우리나라의 국적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실었습니다. 무국적 탈북아동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교육의 기회 박탈입니다. 그러나 무국적 탈북 아동에 대한 교육의 기회 박탈은 중국 국내법 위반입니다. 중국 의무교육법 제2조는 적령기의 ‘모든’ 아동이 반드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 제4조는 ‘중국 국적을 지닌 모든 적령기의 아동’은 성별, 민족, 종족, 가정의 재산상황, 종교 신앙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탈북 아동들을 출생 등록하고 교육을 시킬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고,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 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은

---

자국 관할권 하에서 아동이나 그의 부모 또는 후견인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1966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특히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에서 교육상의 비차별 원칙은 외국인을 포함하여 당사국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령(學齡)기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법적 지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집에 실려 있는 국제조약과 중국의 법령을 면밀하게 연구하여 탈북자 강제송환의 부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법적 논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무국적 탈북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관련 법령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적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적극 강구될 필요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집이 탈북자 문제를 이해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2년 10월

통일연구원장 김태우



# 목차

##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 김수암 · 조정현 · 유현정 편

• 발간사 .....	v
<b>제1장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관련 조약 및 법령 .....</b>	<b>1</b>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3
1-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26
2.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53
2-1.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57
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	63
3-1.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79
4. 1986. 8. 12 중국과 북한간 변경지역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업무를 위한 상호협력 의정서 .....	100
4-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State Security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Ministry of Public Security .....	107
5. 중화인민공화국 형법(부분 발췌) .....	120
5-1. 中華人民共和國 刑法 .....	135
6.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	149
6-1. 中華人民共和國 外國人入境出境管理法 .....	156
7.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관리법 .....	162
7-1. 中華人民共和國 出境入境管理法 .....	185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부분 발췌) .....	205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 .....	212

# 목차

제2장 무국적 탈북아동 관련 조약 및 일반논평과 법령	221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223
1-1.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248
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80
2-1.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293
3.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13	310
3-1.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3	331
4. 중화인민공화국 헌법(부분 발췌)	347
4-1. 中華人民共和國 憲法	353
5.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358
5-1. 中華人民共和國 國籍法	361
6.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364
6-1. 中華人民共和國 義務教育法	379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392
8. 대한민국 국적법	396
9. 대한민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407
최근 발간자료 안내	425

## 제 1 장

#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관련 조약 및 법령

---





#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전 문(前 文)

체약국은,

국제연합헌장과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세계인권선언이, 인간은 차별없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수차에 걸쳐 난민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또한 난민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의 가능한 한 광범위한 행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였음을 고려하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종전의 국제협정들을 개정하고 통합하고, 또한 그러한 문서의 적용범위와 그러한 문서에서 정하여진 보호를 새로운 협정에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며,

난민에 대한 비호의 부여가 특정 국가에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국제적 범위와 성격을 가진다고 국제연합이 인정하는 문제에 관한 만족할 만한 해결은 국제협력이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며, 모든 국가가 난민문제의 사회적, 인도적 성격을 인식하고, 이 문제가 국가간의 긴장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하며,

국제연합 난민최고대표가 난민의 보호에 관하여 정하는 국제협약의 적용을 감독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고, 또한 각국과 국제연합 난민최고대표와의 협력에 의하여 난민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의 효과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임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장 일반규정

### 제 1 조 “난민”이라는 용어의 정의

A. 이 협약의 적용상, “난민”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용된다.

(1) 1926년 5월 12일 및 1928년 6월 30일의 약정 또는 1933년 10월 28일 및 2월 10일의 협약, 1939년 9월 14일의 의정서 또는 국제난민기구헌장에 의하여 난민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 국제난민기구가 그 활동기간중에 행한 부적격 결정은 당해 자가 (2)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당해자가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 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의 경우에, “국적국”이라 함은 그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각각을 말하며,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에 기초한 정당한 이유없이 어느 하나의 국적국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당해자에게 국적국의 보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B. (1) 이 협약의 적용상 제1조 A의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a) “1951년 1월 1일 이전에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 또는

(b) “1951년 1월 1일 이전에 유럽 또는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각 계약국은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기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선언을 행한다.

(2) (a)규정을 적용할 것을 선택한 계약국은 언제든지 (b)규정을 적용할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그 의무를 확대할 수 있다.

C. 이 협약은 A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이 종지된다.

(1) 임의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또는

(2) 국적을 상실한 후 임의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또는

(3)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고, 또한 새로운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4)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는 공포때문에 정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밖에 체류하고 있었으나 그 국가에서 임의로 다시 정주하게 된 경우, 또는

(5) 난민으로 인정되어온 근거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국적 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이 조항은 이 조 A(1)에 해당하는 난민으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한 이유로서 과거의 박해에 기인하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원용할 수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국적이 없는 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되어온 근거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종전의 상주 국가에 되돌아올 수 있을 경우. 다만 이 조항은 이 조 A(1)에 해당하는 난민으로서 종전의 상주국가에 돌아오기를 거부한 이유로서 과거의 박해에 기인하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원용할 수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D. 이 협약은 국제연합 난민최고대표 외에 국제연합의 기관이나 또는 기구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중지되는 경우 그 자는 그 사실에 의하여 이 협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이익을 받을 자격이 있다.

E. 이 협약은 거주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는 데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F.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평화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규정하는 국제문서에 정하여진 그러한 범죄를 범한 자.

(b)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

(c)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행한 자.

## 제 2 조 일반적 의무

모든 난민은 자신이 체재하는 국가에 대하여 특히 그 국가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 및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의무를 진다.

## 제 3 조 무 차별

체약국은 난민에게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한 차별없이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 4 조 종교

체약국은 그 영역내의 난민에게 종교를 실천하는 자유 및 자녀의 종교적 교육에 관한 자유에 대하여 적어도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호의적 대우를 부여한다.

### 제 5 조 이 협약과는 관계없이 부여되는 권리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이 협약과는 관계없이 난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 6 조 “동일한 사정하에서”라는 용어

이 협약의 적용상, “동일한 사정하에서”라는 용어는, 그 성격상 난민이 충족시킬 수 없는 요건을 제외하고, 특정 개인이 그가 난민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 특정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체재 또는 거주 기간과 조건에 관한 요건을 포함한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제 7 조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

1. 체약국은 난민에게 이 협약이 더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
2. 모든 난민은 어떠한 체약국의 영역내에서 3년간 거주한 후 그 체약국의 영역내에서 입법상의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를 받는다.
3. 각 체약국은 자국에 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에 상호주의의 적용없이 난민에게 이미 인정되고 있는 권리와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그 권리와 이익을 계속 부여한다.
4. 체약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권리와 이익외의 권리와 이익을 상호주의의 적용없이 난민에게 부여할 가능성과 제2항에 규정하는 거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난민과 제3항에 규정하는 권리와 이익이 인정되고 있지 아니한 난민에게도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를 적용할 가능성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제2항 및 3항의 규정은 이 협약의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 규정하는 권리와 이익 및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권리와 이익에 관하여서도 적용한다.

## 제 8 조 예외적 조치의 면제

체약국은 특정한 외국 국민의 신체,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취하여야는 예외적 조치에 관하여, 형식상 당해 외국의 국민인 난민에 대하여 단순히 그의 국적만을 이유로 그 조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상 이 조에 명시된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체약국은 적당한 경우 그러한 난민을 위하여 그 예외적 조치를 한다.

## 제 9 조 잠정조치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전시 또는 기타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에 처하여, 특정 개인에 관하여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잠정적으로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조치는 특정 개인이 사실상 난민인가의 여부, 또한 그 특정 개인에 관하여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가의 여부를 체약국이 결정할 때까지에 한한다.

## 제 10 조 거주지 계속

1. 제2차 세계대전중에 강제로 퇴거되어 어느 체약국의 영역으로 이동되어서 그 영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은 그러한 강제체류기간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내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2. 난민이 제2차 세계대전중에 어느 체약국의 영역으로부터 강제로 퇴거되었다가 이 협약의 발효일 이전에 거주를 위하여 그 영역내로 귀환한 경우 그러한 강제퇴거 전후의 거주기간은 계속적인 거주가 요건이 되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계속된 하나의 기간으로 본다.

## 제 11 조 난민선원

체약국은 자국을 기국으로 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으로서 정규적으로

근무중인 난민에 관하여서는 자국의 영역에서 정주하는 것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타국에서의 정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자국의 영역에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 제 2 장 법적지위

### 제 12 조 개인적 지위

1. 난민의 개인적 지위는 주소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2. 난민이 이미 취득한 권리로서 개인적 지위에 따르는 것, 특히 혼인에 따르는 권리는 난민이 체약국의 법률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르는 것이 필요한 경우 이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체약국에 의하여 존중된다. 다만, 문제의 권리는 난민이 난민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도 그 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 제 13 조 동산 및 부동산

체약국은 난민에게 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과 이에 관한 기타 권리의 취득 및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및 기타의 계약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 제 14 조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난민은 발명, 의장, 상표, 상호등의 산업재산권의 보호 및 문학적, 예술적 및 학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보호에 관하여, 상주거소를 가지는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부여받는다. 기타 체약국



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 난민이 상주거소를 가지는 국가의 국민에게 그 체약국의 영역에서 부여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부여받는다.

### 제 15 조 결사의 권리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내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비정치적이고 비영리적인 단체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 제 16 조 재판받을 권리

1. 난민은 모든 체약국의 영역에서 자유로이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난민은 상주거소를 가지는 체약국에서 법률구조와 소송비용의 담보면제를 포함하여 재판받을 권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그 체약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3. 난민은 상주거소를 가지는 체약국외의 체약국에서 제2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상주거소를 가지는 체약국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 제 3 장 유급직업

### 제 17 조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에 관하여,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체약국이 국내 노동시장의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고용에 관하여 취하는 제한적 조치는 그 체약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에 이미 그 조치로부터 면제된 난민이나, 또는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시키는 난민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a) 그 체약국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b) 그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배우자가 있는 자. 난민이 그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이익을 원용하지 못한다.

(c) 그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1명 또는 그 이상의 자녀를 가진 자.

3. 체약국은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에 관하여 모든 난민, 특히 노동자 모집계획 또는 이주민계획에 따라 그 영역안에 입국한 난민의 권리를 자국민의 권리와 동일하게 할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 제 18 조 자 영 업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있는 난민에게 독립하여 농업, 공업, 수공업 및 상업에 종사하는 권리 및 상업상, 산업상 회사를 설립할 권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 제 19 조 자 유 업

1. 각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체재하는 난민으로서 그 체약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승인한 자격증서를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할 것을 희망하는 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체약국은 본토 지역이외에 자국이 국제관계에서 책임을 가지는 영역내에서 상기한 난민이 정주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한다.

## 제 4 장 복 지

### 제 20 조 배 급

공급이 부족한 물자의 분배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주민전체에 적용되는 배급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난민은 그 배급제도의 적용에 있어서 내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 제 21 조 주 거

체약국은 주거에 관한 사항이 법령의 규제를 받거나 또는 공공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경우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주거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 제 22 조 공공교육

1.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에 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체약국은 난민에게 초등교육외의 교육, 특히 수학의 기회, 학업에 관한 증명서, 자격증서 및 학위로서 외국에서 수여된 것의 승인,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감면 및 장학금의 급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 제 23 조 공공구제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공공구제와 공적원조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 제 24 조 노동법제와 사회보장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 (a) 보수의 일부를 구성하는 가족수당을 포함한 보수, 노동시간, 시간외 노동, 유급휴가, 가내노동에 관한 제한, 최저고용연령, 견습과 훈련, 여성과 연소자의 노동 및 단체교섭의 이익향유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규율을 받거나 또는 행정기관의 관리하에 있는 것.
  - (b) 사회보장(산업재해, 직업병, 출산, 질병, 폐질, 노령, 사망, 실업, 가족부양 기타 국내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되는 급부사유에 관한 법규). 다만,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i) 취득한 권리와 취득과정중에 있는 권리의 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 (ii)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의 국내법령이 공공자금에서 전액 지급되는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또한 통상의 연금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기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정하는 것.
2.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에서 기인하는 난민의 사망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그의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체약국의 영역 밖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3. 체약국은 취득되거나 또는 취득의 과정중에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의 유지에 관하여 다른 체약국간에 이미 체결한 협정 또는 장차 체결할 문제의 협정의 서명국의 국민에게 적용될 조건을 난민이 충족시키고 있는 한 그 협정에 의한 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그 난민에게 부여한다.
4. 체약국은 상기한 체약국과 비체약국간에 현재 유효하거나 장래 유효하게 될 유사한 협정에 의한 이익과 동일한 이익을 가능한 한 난민에게 부여하는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 제 5 장 행정적 조치

### 제 25 조 행정적 원조

1. 난민이 그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외국기관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기관의 원조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체약국은 자국의 기관 또는 국제기관에 의하여 그러한 원조가 난민에게 부여 되도록 조치한다.
2. 제1항에서 말하는 자국의 기관 또는 국제기관은 난민에게 외국인이 통상적으로 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또는 이를 통하여 발급받은 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그 감독하에 이들 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다.
3. 상기와 같이 발급된 문서 또는 증명서는 외국인이 본국의 기관으로부터 또는 이를 통하여 발급받은 공문서에 대신하는 것으로 하고, 반증이 없는 한 신빙성을 가진다.
4. 궁핍한 자에 대한 예외적인 대우를 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조에 규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수수료는 타당하고 또한 동종의 사무에 대하여 자국민에게 징수하는 수수료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제27조 및 제28조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 26 조 이동의 자유

각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있는 난민에게 그 난민이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및 그 체약국의 영역안에서 자유로이 이동할 권리를 부여한다.

### 제 27 조 신분증명서

체약국은 그 영역내에 있는 난민으로서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한다.

### 제 28 조 여행증명서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역밖으로의 여행을 위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고, 이 여행증명서에 관하여서는 이 협정 부속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체약국은 그 영역안에 있는 다른 난민에게도 이러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또한 체약국은 특히 그 영역안에 있는 난민으로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이러한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2. 종전의 국제협정의 체약국이 국제협정이 정한 바에 따라 난민에게 발급한 여행증명서는 이 협약의 체약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이 조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취급된다.

### 제 29 조 재정상의 부과금

1. 체약국은 난민에게 유사한 상태에 있는 자국민에게 과하고 있거나 또는 과해질 조세 기타 공과금(명칭 여하를 불문한다)이외의 공과금을 과하지 아니한다. 또한 조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유사한 상태에 있는 자국민에게 과하는 금액보다도 고액의 것을 과하지 아니한다.
2. 전항의 규정은 행정기관이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를 포함한 문서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에 관한 법령을 난민에게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 30 조 자산의 이전

1. 체약국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난민이 그 영역안에서 반입한 자산을 정주하기 위하여 입국허가를 받은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허가한다.

2. 체약국은 난민이 입국허가된 타국에서 정주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산에 대하여 그 소재지를 불문하고 그 난민으로부터 그 자산의 이전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 제 31 조 피난국에 불법으로 있는 난민

1. 체약국은 그 생명 또는 자유가 제1조의 의미에 있어서 위협되고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온 난민으로서 허가없이 그 영역에 입국하거나 또는 그 영역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을 이유로 형벌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난민이 지체없이 당국에 출두하고 또한 불법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있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체약국은 상기한 난민의 이동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이외의 제한을 과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러한 제한은 그 난민의 체약국에 있어서의 체재가 합법적인 것이 될 때까지 또는 그 난민이 타국에의 입국허가를 획득할 때까지만 적용된다. 체약국은 그러한 난민에게 타국에의 입국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편의를 부여한다.

### 제 32 조 추방

1. 체약국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이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법적으로 그 영역에 있는 난민을 추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이러한 난민의 추방은 법률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행하여진다.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난민은 추방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증거를 제출하고, 또한 권한있는 기관 또는 그 기관이 특별히 지명하는 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이 목적을 위한 대리인을 세우는 것이 인정된다.

3. 체약국은 상기 난민에게 타국에의 합법적인 입국허가를 구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부여한다. 체약국은 그 기간동안 동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조치를 취할 권리를 유보한다.

### 제 33 조 추방 또는 송환의 금지

1.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체약국에 있는 난민으로서 그 국가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고 그 국가공동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된 자는 이 규정의 이익을 요구하지 못한다.

### 제 34 조 귀화

체약국은 난민의 동화 및 귀화를 가능한 한 장려한다. 체약국은 특히 귀화 절차를 신속히 행하기 위하여 또한 이러한 절차에 따른 수수료 및 비용을 가능한 한 경감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 제 6 장 실시 및 경과규정

### 제 35 조 국내당국과 국제연합과의 협력

1. 체약국은 국제연합 난민최고대표 사무국 또는 그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의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이들 기관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특히 이들 기관이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감독하는 책무의 수행에 있어서 이들 기관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2. 체약국은 국제연합 난민최고대표 사무국 또는 그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이 국제연합의 관할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와 통계를 적당한 양식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 (a) 난민의 상태
- (b) 이 협약의 실시상황
- (c) 난민에 관한 현행법령 및 장차 시행될 법령

### 제 36 조 국내법령에 관한 정보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협약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법령을 송부한다.

### 제 37 조 종전의 협약과의 관계

이 협약의 제28조 제2항을 침해함이 없이, 이 협약은 체약국사이에서 1922년 7월 5일, 1924년 5월 31일, 1926년 5월 12일, 1928년 6월 30일 및 1935년 7월 30일의 협약, 1933년 10월 28일 및 1938년 2월 10일의 협약, 1939년 9월 14일의 의정서 및 1946년 10월 15일의 협약을 대신한다.

## 제 7 장 최종조항

### 제 38 조 분쟁의 해결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협약 당사국간의 분쟁으로서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분쟁당사국중 어느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된다.

### 제 39 조 서명, 비준 및 가입

1. 이 협약은 1951년 7월 28일에 제네바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그 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 협약은 1951년 7월 28일부터 동년 8월

31일까지 국제연합 구주사무국에서, 동년 9월 17일부터 1952년 12월 31일까지 국제연합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다시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난민 및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전권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된 국가 또는 총회에 의하여 서명하도록 초청받은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고,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협약은 본조 제2항에 언급된 국가들의 가입을 위해 1951년 7월 28일부터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제 40 조 적용지역조항

1. 어떠한 국가도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자국이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는 영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이 협약을 적용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은 이 협약이 그 국가에 대하여 발효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

2. 그후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언제든지 통고함으로써 그러한 적용을 행하고 또한 그 적용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90일후 또는 그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의 양자중 늦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관계국가는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영역에 관하여 이 협약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헌법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그러한 영역의 정부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 제 41 조 연방조항

체약국이 연방제 또는 비단일제 국가인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a) 이 협약의 규정으로서 그 실시가 연방의 입법기관의 입법권의 범위안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연방정부의 의무는 연방제국가가 아닌 체약국의 의무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b) 이 협약의 규정으로서 그 실시가 연방구성국, 주 또는 현의 입법권의 범위 내에 속하고 또한 연방의 헌법제도상 구성국, 주 또는 현이 입법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것에 관하여서는 연방정부는 구성국, 주 또는 현의 적당한 기관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빨리 호의적인 권고와 함께 그 규정을 통보한다.

(c) 이 협약의 체약국인 연방제국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이 협약의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약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연방과 그 구성단위의 법령 및 관행에 관한 설명을 제시하고, 또한 입법 기타의 조치에 의하여 이 협약의 규정이 실시되고 있는 정도를 보여준다.

### 제 42 조 유 보

1. 어떠한 국가도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의 제1조, 제3조, 제4조, 제16조제1항, 제33조, 제36조 내지 제46조 규정외에는 협약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유보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국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당해 유보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 제 43 조 발 효

1. 이 협약은 여섯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은 여섯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 비준 또는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 제 44 조 폐 기

1. 어떠한 체약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이 협약을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후에 당해 체약국

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3. 제40조에 따라 선언 또는 통고를 행한 국가는 그후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상기한 영역에 이 협약의 적용을 중지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 그 선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 45 조 개 정

1. 어떠한 체약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이 협약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국제 연합총회는 상기 요청에 관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를 권고한다.

### 제 46 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한 통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제39조에 규정한 비회원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 (a) 제1조 B에 의한 선언 및 통고
- (b) 제39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 (c) 제40조에 의한 선언 및 통고
- (d) 제42조에 의한 유보 및 철회
- (e) 제43조에 의한 이 협약의 발효일
- (f) 제44조에 의한 폐기 및 통고
- (g) 제45조에 의한 개정의 요청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1951년 7월 28일 제네바에서 모두 정보인 영어, 불란서어로 본서 1통을 작성하

였다. 본서는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되고, 그 인증등본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제39조에 규정된 비회원국에 송부된다.

## 부 속 서

### 제 1 항

1. 이 협약 제28조에 규정하는 여행증명서의 양식은 부록에 첨부된 견본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2. 증명서는 적어도 2개 언어로 작성되고, 그중 하나의 언어는 영어 또는 불어로 한다.

### 제 2 항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 국가의 규칙에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는 양친의 어느 일방 또는 예외적인 경우 다른 성인난민의 여행증명서를 병기할 수 있다.

### 제 3 항

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는 자국민의 여권에 대한 수수료의 최저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4 항

특별한 경우 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명서는 가능한 한 다수의 국가에 대하여 유효한 것으로 발급한다.

### 제 5 항

증명서는 발급기관의 재량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 제 6 항

1. 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은 그 증명서의 명의인이 합법적으로 타국의 영역내에 거주를 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명서의 발급기관이 있는 국가의 영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 그 발급 기관의 권한에 속한다.
2. 외교기관 또는 영사기관으로서 특히 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기관은 자국 정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체약국은 이미 그 영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는 난민으로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갱신, 연장 또는 새로운 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 제 7 항

체약국은 이 협약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 제 8 항

난민이 가려고 희망하는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은 그의 입국을 인정할 용의가 있고 또한 사증이 필요한 경우에 그 난민이 소지한 증명서에 사증을 부여한다.

## 제 9 항

1. 체약국은 최종 목적지 영역의 사증을 취득한 난민에게 통과사증을 발급할 것을 약속한다.
2. 상기한 사증의 발급은 외국인에 대한 사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거부할 수 있다.

## 제 10 항

출국사증, 입국사증 또는 통과사증에 대한 수수료는 외국의 여권에 사증을 부여하는 경우의 수수료의 최저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11 항

난민이 다른 체약국의 영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를 정한 경우에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하는 책임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역의 권한있는 기관에 있고, 그 난민은 그 기관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제 12 항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종전의 증명서를 회수하고, 그 증명서를 발급국에 반송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급국에 이를 반송한다. 그와 같은 기재가 없는 경우 그 발급기관은 회수한 증명서를 무효로 한다.

## 제 13 항

1. 각 체약국은 이 협약 제28조에 따라 발급한 여행증명서의 명의인에 대하여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 언제라도 그 영역에 돌아오는 것을 허가할 것을 약속한다.
2. 체약국은 전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명서의 명의인에게 출입국에 관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체약국은 예외적인 경우 또는 난민의 체재가 일정기간에 한하여 허가된 경우 그 난민이 체약국의 영역에 돌아올 수 있는 기간을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3개월을 미달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 제 14 항

제13항의 규정만을 예외로 하고, 이 부속서의 규정은 체약국의 영역에의 입국,

통과, 체재, 정주 및 출국에 관한 조건을 규율하는 법령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 제 15 항

증명서의 발급 또는 이의 기재사항은 그 명의인의 지위 특히 국적을 결정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 16 항

증명서의 발급은 그 명의인에게 발급국의 외교기관 또는 영사기관에 의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결코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이들 기관에 대하여 보호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 1-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PREAMBLE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Considering that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pproved on 10 December 1948 by the General Assembly have affirmed the principle that human beings shall enjoy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without discrimination,

Considering that the United Nations has, on various occasions, manifested its profound concern for refugees and endeavoured to assure refugees the widest possible exercise of thes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Considering that it is desirable to revise and consolidate previous international agreements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o extend the scope of and the protection accorded by such instruments by means of a new agreement,

Considering that the grant of asylum may place unduly heavy burdens on certain countries, and that a satisfactory solution of a problem of which the United Nations has recognized the international- scope and nature cannot therefore be achieved without international co-operation,

Expressing the wish that all States, recognizing the social and humanitarian nature of the problem of refugees, will do everything within their power to prevent this problem from becoming a cause of tension between States,

Noting that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is charged with the task of supervis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providing for the

protection of refugees, and recognizing that the effective co-ordination of measures taken to deal with this problem will depend upon the co-operation of States with the High Commissioner,

Have agreed as follows:

##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 **Article 1. Definition of the term “refugee”**

A.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the term “refugee” shall apply to any person who:

(1) Has been considered a refugee under the Arrangements of 12 May 1926 and 30 June 1928 or under the Conventions of 28 October 1933 and 10 February 1938, the Protocol of 14 September 1939 or the Constitution of the 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

Decisions of non-eligibility taken by the 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 during the period of its activities shall not prevent the status of refugee being accorded to persons who fulfil the conditions of paragraph 2 of this section;

(2) As a result of events occurring before 1 January 1951 and owing to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is outside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and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at country; or who, not having a nationality and being outside the country of his former habitual residence as a result of such events,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return to it.

In the case of a person who has more than one nationality, the term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shall mean each of the countries of which he is a national, and a person shall not be deemed to be lacking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if, without any valid reason based on well-founded fear, he has not availed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one of the countries of which he is a national.

B.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words “events occurring before 1 January 1951” in article 1, section A, shall be understood to mean either (a) “events occurring in Europe before 1 January 1951”; or (b) “events occurring in Europe or elsewhere before 1 January 1951”; and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make a declaration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or accession, specifying which of these meanings it applies for the purpose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2) Any Contracting State which has adopted alternative (a) may at any time extend its obligations by adopting alternative (b) by means of a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C.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apply to any person falling under the terms of section A if:

(1) He has voluntarily re-availed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or

(2) Having lost his nationality, he has voluntarily reacquired it; or

(3) He has acquired a new nationality, and enjoys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 of his new nationality; or

(4) He has voluntarily re-established himself in the country which he left or outside which he remained owing to fear of persecution; or

(5) He can no longer, because the circumstances in connection with which he has been recognized as a refugee have ceased to exist, continue to refuse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Provided that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a refugee falling under section A (1) of this article who is able to invoke compelling reasons arising out of previous persecution for refusing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e country of nationality;

(6) Being a person who has no nationality he is, because the circumstances in connection with which he has been recognized as a refugee have ceased to exist, able to return to the country of his former habitual residence;  
Provided that this paragraph shall not apply to a refugee falling under section A (1) of this article who is able to invoke compelling reasons arising out of previous persecution for refusing to return to the country of his former habitual residence.

D.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persons who are at present receiving from organs or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other than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protection or assistance. When such protection or assistance has ceased for any reason, without the position of such persons being definitively settl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resolution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these persons shall ipso facto be entitled to the benefits of this Convention.

E.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a person who is recogn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untry in which he has taken residence as hav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which are attached to the possession of the nationality of that country.

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to any person with respect to whom there are serious reasons for considering that.

(a) He has committed a crime against peace, a war crime, or a crime against

humanity, as defined in the international instruments drawn up to make provision in respect of such crimes;

(b) He has committed a serious non-political crime outside the country of refuge prior to his admission to that country as a refugee;

(c) He has been guilty of acts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 **Article 2. General obligations**

Every refugee has duties to the country in which he finds himself, which require in particular that he conform to its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to measures taken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 **Article 3. Non-discrimination**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ppl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o refugees without discrimination as to race, religion or country of origin.

### **Article 4. Religion**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to refugees within their territories treatment at least as favourable as that accorded to their nationals with respect to freedom to practise their religion and freedom as regards the religious education of their children.

### **Article 5. Rights granted apart from this Convention**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deemed to impair any rights and benefits granted by a Contracting State to refugees apart from this Convention.

### **Article 6. The term “in the same circumstances”**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in the same circumstances” implies that any requirements (including requirements as to length and conditions of sojourn or residence) which the particular individual would have to fulfil for the enjoyment of the right in question, if he were not a refugee, must be fulfilled by him, with the exception of requirements which by their nature a refugee is incapable of fulfilling.

### **Article 7. Exemption from reciprocity**

1. Except where this Convention contains more favourable provisions, a Contracting State shall accord to refugees the same treatment as is accorded to aliens generally.
2. After a period of three years' residence, all refugees shall enjoy exemption from legislative reciprocity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States.
3.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continue to accord to refugees the rights and benefits to which they were already entitled, in the absence of reciprocity, at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at State.
4.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consider favourably the possibility of according to refugees, in the absence of reciprocity, rights and benefits beyond those to which they are entitled according to paragraphs 2 and 3, and to extending exemption from reciprocity to refugees who do not fulfil the conditions provided for in paragraphs 2 and 3.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3 apply both to the rights and benefits referred to in articles 13, 18, 19, 21 and 22 of this Convention and to rights and benefits for which this Convention does not provide.

### **Article 8. Exemption from exceptional measures**

With regard to exceptional measures which may be taken against the person, property or interests of nationals of a foreign State,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 apply such measures to a refugee who is formally a national of the said State solely on account of such nationality. Contracting States which, under their legislation, are prevented from applying the general principle expressed in this article, shall, in appropriate cases, grant exemptions in favour of such refugees.

### **Article 9. Provisional measures**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prevent a Contracting State, in time of war or other grave and exceptional circumstances, from taking provisionally measures which it considers to be essential to the national security in the case of a particular person, pending a determination by the Contracting State that that person is in fact a refugee and that the continuance of such measures is necessary in his case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 **Article 10. Continuity of residence**

1. Where a refugee has been forcibly displace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nd removed to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State, and is resident there, the period of such enforced sojourn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lawful residence within that territory.
2. Where a refugee has been forcibly displace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from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State and has, prior to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returned there for the purpose of taking up residence, the period of residence before and after such enforced displacement

shall be regarded as one uninterrupted period for any purposes for which uninterrupted residence is required.

#### **Article 11. Refugee seamen**

In the case of refugees regularly serving as crew members on board a ship flying the flag of a Contracting State, that State shall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their establishment on its territory and the issue of travel documents to them or their temporary admission to its territory particularly with a view to facilitating their establishment in another country.

### **CHAPTER II JURIDICAL STATUS**

#### **Article 12. Personal status**

1. The personal status of a refugee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of his domicile or, if he has no domicile, by the law of the country of his residence.
2. Rights previously acquired by a refugee and dependent on personal status, more particularly rights attaching to marriage, shall be respected by a Contracting State, subject to compliance, if this be necessary, with the formalities required by the law of that State, provided that the right in question is one which would have been recognized by the law of that State had he not become a refugee.

#### **Article 13.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to a refugee treatment as favourable as possible and, in any event, not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to aliens



generally in the same circumstances, as regards the acquisition of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and other rights pertaining thereto, and to leases and other contracts relating to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 **Article 14. Artistic rights and industrial property**

In respect of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such as inventions, designs or models, trade marks, trade names, and of rights in literary, artistic and scientific works, a refugee shall be accorded in the country in which he has his habitual residence the same protection as is accorded to nationals of that country. In the territory of any other Contracting States, he shall be accorded the same protection as is accorded in that territory to nationals of the country in which he has his habitual residence.

#### **Article 15. Right of association**

As regards non-political and non-profit-making associations and trade unions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to refugees lawfully staying in their territory the most favourable treatment accorded to nationals of a foreign country, in the same circumstances.

#### **Article 16. Access to courts**

1. A refugee shall have free access to the courts of law on the territory of all Contracting States.
2. A refugee shall enjo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his habitual residence the same treatment as a national in matters pertaining to access to the courts, including legal assistance and exemption from *cautio judicatum solvi*.
3. A refugee shall be accorded in the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 2 in

countries other than that in which he has his habitual residence the treatment granted to a national of the country of his habitual residence.

### **CHAPTER III GAINFUL EMPLOYMENT**

#### **Article 17. Wage-earning employment**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to refugees lawfully staying in their territory the most favourable treatment accorded to nationals of a foreign country in the same circumstances, as regards the right to engage in wage-earning employment.

2. In any case, restrictive measures imposed on aliens or the employment of aliens for the protection of the national labour market shall not be applied to a refugee who was already exempt from them at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e Contracting State concerned, or who fulfills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 He has completed three years' residence in the country;

(b) He has a spouse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the country of residence.

A refugee may not invoke the benefit of this provision if he has abandoned his spouse;

(c) He has one or more children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the country of residence.

3.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assimilating the rights of all refugees with regard to wage-earning employment to those of nationals, and in particular of those refugees who have entered their territory pursuant to programmes of labour recruitment or under immigration schemes.

### **Article 18. Self-employment**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to a refugee lawfully in their territory treatment as favourable as possible and, in any event, not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to aliens generally in the same circumstances, as regards the right to engage on his own account in agriculture, industry, handicrafts and commerce and to establish commercial and industrial companies.

### **Article 19. Liberal professions**

1.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accord to refugees lawfully staying in their territory who hold diplomas recogn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at State, and who are desirous of practising a liberal profession, treatment as favourable as possible and, in any event, not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to aliens generally in the same circumstances.

2.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use their best endeavours consistently with their laws and constitutions to secure the settlement of such refugees in the territories, other than the metropolitan territory, for whose international relations they are responsible.

## **CHAPTER IV WELFARE**

### **Article 20. Rationing**

Where a rationing system exists, which applies to the population at large and regulates the general distribution of products in short supply, refugees shall be accorded the same treatment as nationals.

### **Article 21. Housing**

As regards housing, the Contracting States, in so far as the matter is regulated by laws or regulations or is subject to the control of public authorities, shall accord to refugees lawfully staying in their territory treatment as favourable as possible and, in any event, not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to aliens generally in the same circumstances.

### **Article 22. Public education**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to refugees the same treatment as is accorded to nationals with respect to elementary education.
2.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to refugees treatment as favourable as possible, and, in any event, not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to aliens generally in the same circumstances, with respect to education other than elementary education and, in particular, as regards access to studies, the recognition of foreign school certificates, diplomas and degrees, the remission of fees and charges and the award of scholarships.

### **Article 23. Public relie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to refugees lawfully staying in their territory the same treatment with respect to public relief and assistance as is accorded to their nationals.

### **Article 24. Labour legislation and social security**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to refugees lawfully staying in their territory the same treatment as is accorded to nationals in respect of the following matters;

(a) In so far as such matters are governed by laws or regulations or are subject to the control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remuneration, including family allowances where these form part of remuneration, hours of work, overtime arrangements, holidays with pay, restrictions on home work, minimum age of employment, apprenticeship and training, women's work and the work of young persons, and the enjoyment of the benefits of collective bargaining;

(b) Social security (legal provisions in respect of employment injury, occupational diseases, maternity, sickness, disability, old age, death, unemployment, family responsibilities and any other contingency which, according to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is covered by a social security scheme), subject to the following limitations:

(i) There may be appropriate arrangements for the maintenance of acquired rights and rights in course of acquisition;

(ii)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f the country of residence may prescribe special arrangements concerning benefits or portions of benefits which are payable wholly out of public funds, and concerning allowances paid to persons who do not fulfil the contribution conditions prescribed for the award of a normal pension.

2. The right to compensation for the death of a refugee resulting from employment injury or from occupational disease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fact that the residence of the beneficiary is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State.

3.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tend to refugees the benefits of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m, or which may be concluded between them in the future, concerning the maintenance of acquired rights and rights in the process of acquisition in regard to social security, subject only to the conditions which

apply to nationals of the States signatory to the agreements in question.

4. The Contracting States will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extending to refugees so far as possible the benefits of similar agreements which may at any time be in force between such Contracting States and non- contracting States.

## **CHAPTER V ADMINISTRATIVE MEASURES**

### **Article 25. Administrative assistance**

1. When the exercise of a right by a refugee would normally require the assistance of authorities of a foreign country to whom he cannot have recourse, the Contracting States in whose territory he is residing shall arrange that such assistance be afforded to him by their own authorities or by an international authority.

2. The authority or authorities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deliver or cause to be delivered under their supervision to refugees such documents or certifications as would normally be delivered to aliens by or through their national authorities.

3. Documents or certifications so delivered shall stand in the stead of the official instruments delivered to aliens by or through their national authorities, and shall be given credence in the absence of proof to the contrary.

4. Subject to such exceptional treatment as may be granted to indigent persons, fees may be charged for the services mentioned herein, but such fees shall be moderate and commensurate with those charged to nationals for similar services.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rticles 27 and 28.

### **Article 26. Freedom of movement**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accord to refugees lawfully in its territory the right to choose their place of residence and to move freely within its territory subject to any regulations applicable to aliens generally in the same circumstances.

### **Article 27. Identity papers**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ssue identity papers to any refugee in their territory who does not possess a valid travel document.

### **Article 28. Travel documents**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ssue to refugees lawfully staying in their territory travel documents for the purpose of travel outside their territory, unless compelling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order otherwise require, and the provisions of the Schedule to this Convention shall apply with respect to such documents. The Contracting States may issue such a travel document to any other refugee in their territory; they shall in particular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the issue of such a travel document to refugees in their territory who are unable to obtain a travel document from the country of their lawful residence.

2. Travel documents issued to refugees under previous international agreements by Parties thereto shall be recognized and treated by the Contracting States in the same way as if they had been issued pursuant to this article.

### **Article 29. Fiscal charges**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 impose upon refugees duties, charges or taxes, of any description whatsoever, other or higher than those which are

or may be levied on their nationals in similar situations.

2. Nothing in the above paragraph shall prevent the application to refugee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charges in respect of the issue to aliens of administrative documents including identity papers.

### **Article 30. Transfer of assets**

1. A Contracting State shall, in conformity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permit refugees to transfer assets which they have brought into its territory, to another country where they have been admitted for the purposes of resettlement.

2. A Contracting State shall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the application of refugees for permission to transfer assets wherever they may be and which are necessary for their resettlement in another country to which they have been admitted.

### **Article 31. Refugees unlawfully in the country of refuge**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 impose penalties, on account of their illegal entry or presence, on refugees who, coming directly from a territory where their life or freedom was threatened in the sense of article 1, enter or are present in their territory without authorization, provided they present themselves without delay to the authorities and show good cause for their illegal entry or presence.

2.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 apply to the movements of such refugees restrictions other than those which are necessary and such restrictions shall only be applied until their status in the country is regularized or they obtain admission into another country.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llow such refugees a reasonable period and all the necessary facilities to obtain admission



into another country.

### **Article 32. Expulsion**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 expel a refugee lawfully in their territory save on ground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order.
2. The expulsion of such a refugee shall be only in pursuance of a decision reached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of law. Except where compelling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otherwise require, the refugee shall be allowed to submit evidence to clear himself, and to appeal to and be represented for the purpose before competent authority or a person or persons specially designa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3.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llow such a refugee a reasonable period within which to seek legal admission into another country. The Contracting States reserve the right to apply during that period such internal measures as they may deem necessary.

### **Article 33. Prohibition of expulsion or return (“refoulement”)**

1. No Contracting State shall expel or return (“refouler”) a refugee in any manner whatsoever to the frontiers of territories where his life or freedom would be threatened on account of his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2. The benefit of the present provision may not, however, be claimed by a refugee whom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regarding as a danger to the security of the country in which he is, or who, having been convicted by a final judgement of a particularly serious crime, constitutes a danger to the community of that country.

#### **Article 34. Naturalization**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s far as possible facilitate the assimilation and naturalization of refugees. They shall in particular make every effort to expedite naturalization proceedings and to reduce as far as possible the charges and costs of such proceedings.

### **CHAPTER VI EXECUTORY AND TRANSITORY PROVISIONS**

#### **Article 35. Co-operation of the national authorities with the United Nations**

1. The Contracting States undertake to co-operate with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or any other agency of the United Nations which may succeed it, in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and shall in particular facilitate its duty of supervising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2. In order to enable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or any other agency of the United Nations which may succeed it, to make reports to the competent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the Contracting States undertake to provide them in the appropriate form with information and statistical data requested concerning:

- (a) The condition of refugees,
- (b)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vention, and
- (c) Laws, regulations and decrees which are, or may hereafter be, in force relating to refugees.

#### **Article 36. Information on national legislation**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communicate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laws and regulations which they may adopt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 **Article 37. Relation to previous conventions**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28, paragraph 2, of this Convention, this Convention replaces, as between Parties to it, the Arrangements of 5 July 1922, 31 May 1924, 12 May 1926, 30 June 1928 and 30 July 1935, the Conventions of 28 October 1933 and 10 February 1938, the Protocol of 14 September 1939 and the Agreement of 15 October 1946.

### **CHAPTER VII FINAL CLAUSES**

#### **Article 38.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pute between Parties to this Convention relating to its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which cannot be settled by other means, shall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t the request of any one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 **Article 39. Signature, ratification and accession**

1.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ed for signature at Geneva on 28 July 1951 and shall thereafter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t shall be open for signature at the European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from 28 July to 31 August 1951 and shall be re-opened for signature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from 17 September 1951 to 31 December 1952.

2.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on behalf of all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also on behalf of any other State invited to attend the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on the Status of Refugees and Stateless Persons or to which an invitation to sign will have been addressed by the General Assembly. It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3.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from 28 July 1951 for accession by the Stat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 **Article 40. Territorial application clause**

1. Any State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or accession, declare that this Convention shall extend to all or any of the territories for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which it is responsible. Such a declaration shall take effect when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for the State concerned.

2. At any time thereafter any such extension shall be made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shall take effect as from the ninetieth day after the day of receipt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is notification, or a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the State concerned, whichever is the later.

3. With respect to those territories to which this Convention is not extended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or accession, each State concerned shall consider the possibility of taking the necessary steps in order to extend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o such territories, subject, where necessary for constitutional reasons, to the consent of the Governments of such territories.

### **Article 41. Federal clause**

In the case of a Federal or non-unitary State,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a) With respect to those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at come within the legislative jurisdiction of the federal legislative authority, the obligations of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to this extent be the same as those of parties which are not Federal States;

(b) With respect to those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at come within the legislative jurisdiction of constituent States, provinces or cantons which are not, under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the Federation, bound to take legislative action,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bring such articles with a favourable recommendation to the notice of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States, provinces or cantons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c) A Federal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shall, at the request of any other Contracting State transmitted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upply a statement of the law and practice of the Federation and its constituent units in regard to any particular provision of the Convention showing the extent to which effect has been given to that provision by legislative or other action.

### **Article 42. Reservations**

1.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or accession, any State may make reservations to articles of the Convention other than to articles 1, 3, 4, 16 (1), 33, 36-46 inclusive.

2. Any State making a reserv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at any time withdraw the reservation by a communication to that effect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 **Article 43. Entry into force**

1.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on the ninetieth day following the day of deposit of the six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or acceding to the Convention after the deposit of the six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ninetieth day following the date of deposit by such State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 **Article 44. Denunciation**

1. Any Contracting State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at any time by a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2. Such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for the Contracting State concerned one year from the date upon which it is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3. Any State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or notification under article 40 may, at any time thereafter, by a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declare that the Convention shall cease to extend to such territory one year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 **Article 45. Revision**

1. Any Contracting State may request revision of this Convention at any time by a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2.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shall recommend the steps,

if any, to be taken in respect of such request.

**Article 46. Notifications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non-member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39:

- (a) Of declarations and notifications in accordance with section B of article 1;
- (b) Of signatures,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9;
- (c) Of declarations and notific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
- (d) Of reservations and withdrawal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2;
- (e) Of the date on which this Convention will come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43;
- (f) Of denunciations and notific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4;
- (g) Of requests for revi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45.

In faith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have signed this Convention on behalf of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Done at Geneva, this twenty-eighth day of July,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fifty-one, in a single copy, of which the English and Frenc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and which shall remain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and certified true copies of which shall be delivered to al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to the non-member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39.

## **Schedule**

### **Paragraph 1**

1. The travel document referred to in article 28 of this Convention shall be similar to the specimen annexed hereto.
2. The document shall be made out in at least two languages, one of which shall be English or French.

### **Paragraph 2**

Subject to the regulations obtaining in the country of issue, children may be included in the travel document of a parent or,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of another adult refugee.

### **Paragraph 3**

The fees charged for issue of the document shall not exceed the lowest scale of charges for national passports.

### **Paragraph 4**

Save in special or exceptional cases, the document shall be made valid for the largest possible number of countries.

### **Paragraph 5**

The document shall have a validity of either one or two years, at the discretion of the issuing authority.



### **Paragraph 6**

1. The renewal or extension of the validity of the document is a matter for the authority which issued it, so long as the holder has not established lawful residence in another territory and resides lawfully in the territory of the said authority. The issue of a new document is, under the same conditions, a matter for the authority which issued the former document.
2. Diplomatic or consular authorities specially authorized for the purpose, shall be empowered to extend, for a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the validity of travel documents issued by their Governments.
3.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renewing or extending the validity of travel documents or issuing new documents to refugees no longer lawfully resident in their territory who are unable to obtain a travel document from the country of their lawful residence.

### **Paragraph 7**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recognize the validity of the document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8 of this Convention.

### **Paragraph 8**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untry to which the refugee desires to proceed shall, if they are prepared to admit him and if a visa is required, affix a visa on the document of which he is the holder.

### **Paragraph 9**

1. The Contracting States undertake to issue transit visas to refugees who have obtained visas for a territory of final destination.

2. The issue of such visas may be refused on grounds which would justify refusal of a visa to any alien.

#### **Paragraph 10**

The fees for the issue of exit, entry or transit visas shall not exceed the lowest scale of charges for visas on foreign passports.

#### **Paragraph 11**

When a refugee has lawfully taken up residence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the responsibility for the issue of a new document,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rticle 28 shall be that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territory, to which the refugee shall be entitled to apply.

#### **Paragraph 12**

The authority issuing a new document shall withdraw the old document and shall return it to the country of issue, if it is stated in the document that it should be so returned; otherwise it shall withdraw and cancel the document.

#### **Paragraph 13**

1. Each Contracting State undertakes that the holder of a travel document issued by it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 of this Convention shall be readmitted to its territory at any time during the period of its validity.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sub-paragraph, a Contracting State may require the holder of the document to comply with such formalities as may be prescribed in regard to exit from or return to its territory.

3. The Contracting States reserve the rights, in exceptional cases, or in cases

where the refugee's stay is authorized for a specific period, when issuing the document, to limit the period during which the refugee may return to a period of not less than three months.

#### **Paragraph 14**

Subject only to the terms of paragraph 13, the provisions of this Schedule in no way affect the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conditions of admission to, transit through, residence and establishment in, and departure from,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 **Paragraph 15**

Neither the issue of the document nor the entries made thereon determine or affect the status of the holder, particularly as regards nationality.

#### **Paragraph 16**

The issue of the document does not in any way entitle the holder to the protection of the diplomatic or consular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issue, and does not ipso facto confer on these authorities a right of protection.

## 2.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1951년 7월 28일 제네바에서 작성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이 195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난민이 된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을 고려하고,

협약이 채택된 후 새로운 사태에 의하여 난민이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이들 난민은 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고려하며,

1951년 1월 1일 이전이라는 제한에 관계없이 협약의 정의에 해당되는 모든 난민이 동등한 지위를 향유함이 바람직하다고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조 총 칙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이하에서 정의된 난민에 대하여 협약의 제2조에서 제34조까지를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의정서의 적용상, “난민”이라는 용어는, 이 조제3항의 적용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협약 제1조 A(2)에서 “195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이라는 표현과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서”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경우 협약 제1조의 정의에 해당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3.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에 의하여 어떠한 지리적 제한도 없이 적용된다. 다만, 이미 협약의 당사국이 된 국가로서 협약 제1조 B(1) (a)를 적용한다는 선언을 행하고 있는 경우에 그 선언은 동조 B(2)에 따라 그 국가의 의무가 확대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 하에서도 적용된다.

### 제 2 조 국내당국과 국제연합과의 협력

1.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국 또는 이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이들 기관과 협력할 것을 약속하고, 특히 이들 기관이 이 의정서 규정의 적용을 감독하는 책무의 수행에 있어서 이들 기관에 편의를 제공한다.

2.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국 또는 이를 승계하는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이 국제연합의 관할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청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적당한 양식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 (a) 난민의 상태
- (b) 이 의정서의 실시상황
- (c) 난민에 관한 현행법령 및 장래 시행될 법령

### 제 3 조 국내법령에 관한 정보

이 의정서의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이 의정서의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법령을 송부한다.

### 제 4 조 분쟁의 해결

이 의정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이 의정서 당사국간의 분쟁으로서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분쟁당사국중 어느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된다.

### 제 5 조 가입

이 의정서는 협약의 모든 당사국과 이들 당사국외의 국가로서 국제연합 또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회원국 또는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이 의정서에 가입하도록 초청받은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제 6 조 연방조항

연방제 또는 비단일제 국가인 경우에는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a) 이 의정서의 제1조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협약의 규정으로서 이들 규정의 실시가 연방의 입법기관의 입법권의 범위안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서는, 연방 정부의 의무는 연방제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의 의무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b) 이 의정서의 제1조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협약의 규정으로서 이들 규정의 실시가 구성국, 주 또는 현의 입법권의 범위안에 속하고 또한 연방의 헌법제도 상 구성국, 주 또는 현이 입법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것에 관하여, 연방정부는 구성국, 주 또는 현의 적당한 기관에 대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호의적인 권고와 함께 그 규정을 통보한다.

(c) 이 의정서의 당사국인 연방제 국가는, 이 의정서의 기타 당사국으로부터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제1조제1항에 따라 적용되는 협약 규정의 실시에 관한 연방과 그 구성단위의 법령 및 관행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입법 기타의 조치에 의하여 이들 규정이 실시되고 있는 정도를 제시한다.

## 제 7 조 유보와 선언

1. 어떠한 국가도 이 의정서에 가입시 이 의정서 제4조에 관하여, 또한 협약의 제1조, 제3조, 제4조, 제16조제1항 및 제33조 규정을 제외하고 이 의정서의 제1조에 따를 협약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유보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의 당사국이 이 조에 따라 행한 유보는 협약의 적용을 받는 난민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2. 협약 제42조에 따라 협약의 당사국이 협약에 대하여 행한 유보는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에 따른 의무에 관하여서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국가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당해 유보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4.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이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가 협약 제4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한 선언은, 가입시 당해당사국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반대의 통고를 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에 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협약 제40조제2항과 제3항 및 제44조제3항의 규정은 이 의정서에 준용된다.

### 제 8 조 발 효

1. 이 의정서는 여섯번째의 가입서가 기탁된 날에 발효한다.
2. 이 의정서는 여섯번째의 가입서가 기탁된 후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가입서가 기탁된 날에 발효한다.

### 제 9 조 폐 기

1. 이 의정서의 어떠한 당사국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이 의정서를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후에 관계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제 10 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한 통보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상기 제5조에 규정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의정서의 발효 일자, 가입, 유보, 유보의 철회, 폐기 및 이에 관계된 선언 및 통고를 통보한다.

### 제 11 조 국제연합 사무국 문서보존소에의 기탁

중국어, 영어, 불란서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이 의정서의 본서는, 국제연합 총회의장과 사무총장이 서명한 후 국제연합 사무국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사무총장은 그 인증등본을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과 상기 제5조에 규정하는 기타 국가들에게 송부한다.

## 2-1.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Protocol,

Considering that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done at Geneva on 28 July 195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vention) covers only those persons who have become refugees as a result of events occurring before 1 January 1951,

Considering that new refugee situations have arisen since the Convention was adopted and that the refugees concerned may therefore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Convention,

Considering that it is desirable that equal status should be enjoyed by all refugees covered by the definition in the Convention irrespective of the dateline 1 January 1951,

Have agreed as follows:

### Article 1. General provision

1.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Protocol undertake to apply articles 2 to 34 inclusive of the Convention to refugees as hereinafter defined.
2. For the purpose of the present Protocol, the term “refugee” shall, except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3 of this article, mean any person within the definition of article 1 of the Convention as if the words “As a result of events occurring before 1 January 1951 and …” and the words “… as a result of such events”, in article 1 A (2) were omitted.
3. The present Protocol shall be applied by the States Parties hereto without any geographic limitation, save that existing declarations made by States already



Parties to the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 B (1) (a) of the Convention, shall, unless extended under article 1 B (2) thereof, apply also under the present Protocol.

## **Article 2. Co-operation of the national authorities with the United Nations**

1.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Protocol undertake to co-operate with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or any other agency of the United Nations which may succeed it, in the exercise of its functions, and shall in particular facilitate its duty of supervising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Protocol.

2. In order to enable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or any other agency of the United Nations which may succeed it, to make reports to the competent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Protocol undertake to provide them with the information and statistical data requested, in the appropriate form, concerning:

- (a) The condition of refugees;
- (b)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Protocol;
- (c) Laws, regulations and decrees which are, or may hereafter be, in force relating to refugees.

## **Article 3. Information on national legislation**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Protocol shall communicate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laws and regulations which they may adopt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the present Protocol.

#### **Article 4.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pute between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Protocol which relates to its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and which cannot be settled by other means shall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t the request of any one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 **Article 5. Accession**

The present Protocol shall be open for accession on behalf of all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of any other State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or member of any of the specialized agencies or to which an invitation to accede may have been address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 **Article 6. Federal clause**

In the case of a Federal or non-unitary State,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 (a) With respect to those articles of the Convention to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I, paragraph 1, of the present Protocol that come within the legislative jurisdiction of the federal legislative authority, the obligations of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to this extent be the same as those of States Parties which are not Federal States;
- (b) With respect to those articles of the Convention to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 paragraph 1, of the present Protocol that come within the legislative jurisdiction of constituent States, provinces or cantons which are not, under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the Federation, bound to take legislative

action,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bring such articles with a favourable recommendation to the notice of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States, provinces or cantons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c) A Federal State Party to the present Protocol shall, at the request of any other State Party hereto transmitted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upply a statement of the law and practice of the Federation and its constituent units in regard to any particular provision of the Convention to be appl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 paragraph 1, of the present Protocol, showing the extent to which effect has been given to that provision by legislative or other action.

#### **Article 7. Reservations and declarations**

1. At the time of accession, any State may make reservations in respect of article 4 of the present Protocol and in respect of the appli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 of the present Protocol of any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ther than those contained in articles 1, 3, 4, 16(1) and 33 thereof,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a State Party to the Convention reservations made under this article shall not extend to refugees in respect of whom the Convention applies.

2. Reservations made by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42 thereof shall, unless withdrawn, be applicable in relation to their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Protocol.

3. Any State making a reserv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at any time withdraw such reservation by a communication to that effect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4. Declarations made under article 40, paragraphs 1 and 2, of the Convention

by a State Party thereto which accedes to the present Protocol shall be deemed to apply in respect of the present Protocol, unless upon accession a notification to the contrary is addressed by the State Party concern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provisions of article 40, paragraphs 2 and 3, and of article 44, paragraph 3, of the Convention shall be deemed to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esent Protocol.

#### **Article 8. Entry into Protocol**

1. The present Protocol shall come into force on the day of deposit of the sixth instrument of accession.
2. For each State acceding to the Protocol after the deposit of the sixth instrument of accession, the Protocol shall come into force on the date of deposit by such State of its instrument of accession.

#### **Article 9. Denunciation**

1. Any State Party hereto may denounce this Protocol at any time by a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2. Such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for the State Party concerned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it is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 **Article 10. Notifications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the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5 above of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accessions, reservations and withdrawals of reservations to and denunciations of the present Protocol, and of declarations and notifications relating hereto.

**Article 11. Deposit in the archives of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A copy of the present Protocol, of which the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igned by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an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Secretariat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will transmit certified copies thereof to all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to the other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5 above.

### 3.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천명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향유하는 평  
등하며 불가양한 권리를 인정하는 데서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이룩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국제연합헌장 특히 제55조에 따라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보편적으로 존중하  
고 이의 준수를 촉진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고,  
어느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와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  
한국제규약 제7조에 유의하며,  
1975년 12월 9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고문및그밖의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로부터만인의보호에관한선언에 유의하고,  
세계적으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실효적이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 1 장

### 제 1 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문”이라 함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

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이 조는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거나 포함하게 될 국제 문서나 국내입법을 해하지 아니한다.

## 제 2 조

1. 당사국은 자기나라 관할하의 영토내에서 고문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입법·행정·사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한다.
2. 전쟁상태, 전쟁의 위협, 국내의 정치불안정 또는 그 밖의 사회적 긴급상황 등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3. 상관 또는 당국의 명령은 고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원용될 수 없다.

## 제 3 조

1.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협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와 같이 믿을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당국은 가능한 경우 관련국가에서 현저하며 극악한 또는 대규모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존재하여 왔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사항을 고려한다.

## 제 4 조

1. 당사국은 모든 고문행위가 자기나라의 형법에 따라 범죄가 되도록 보장하며, 고문 미수, 고문 공모 또는 가담에 해당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다룬다.
2. 당사국은 이러한 범죄가 그 심각성이 고려된 적절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도록

록 한다.

### 제 5 조

1.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에 제4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가. 범죄가 자기나라 관할하의 영토내에서 또는 자기나라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실행된 경우
  - 나. 범죄혐의자가 자기나라의 국민인 경우
  - 다. 피해자가 자기나라의 국민이며 자기나라의 관할권 행사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당사국은 범죄혐의자가 자기나라 관할하의 영토내에 소재하나 이러한 범죄 혐의자를 제1항에 규정된 어느 국가에도 제8조에 따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이 협약은 국내법에 따라 행사되는 어떠한 형사관할권도 배제하지 아니한다.

### 제 6 조

1. 당사국은 제4조에 규정된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가 자기나라 영토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 입수된 정보를 검토한 후 상황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즉시 범죄혐의자를 구금하거나 또는 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그 밖의 법적 조치를 취한다. 구금 또는 그 밖의 법적 조치는 당사국의 법에 따르나, 형사절차나 범죄인 인도 절차를 개시하는 데 필요한 기간만 지속될 수 있다.
2. 위의 조치를 취한 국가는 즉시 예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3. 제1항에 따라 구금된 개인은 가장 인근에 소재하는 국적국의 적절한 대표, 무국적자인 경우에는 자신이 상주하고 있는 국가의 대표와 즉각적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는다.

4. 어느 국가가 이 조에 따라 개인을 구금하는 경우,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국가에 그 개인의 구금사실 및 구금을 정당화하는 상황을 즉시 통고한다. 제2항에 규정된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국가는 조사결과를 제5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에 신속히 통보하며, 관할권을 행사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알린다.

### 제 7 조

1. 당사국은 제4조에 규정된 범죄를 실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가 자기나라 영토 안에 소재하나, 제5조에 규정된 사건과 관련 이러한 범죄혐의자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소를 위하여 사건을 권한있는 당국에 회부한다.
2. 이러한 당국은 자기나라 법에 따라 통상적인 중범죄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을 내린다.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 및 유죄판결에 필요한 증거의 수준은 제5조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증거의 수준만큼 엄격하여야 된다.
3. 제4조에 규정된 범죄와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 관련된 자는 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보장받는다.

### 제 8 조

1. 제4조에 규정된 범죄는 당사국 사이의 현행 범죄인 인도조약상 인도대상 범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당사국은 향후 그들 사이에 체결될 모든 범죄인 인도조약에 이러한 범죄를 인도대상 범죄로 포함시킨다.
2.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 인도의 조건으로 하고 있는 당사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는 경우, 당사국은 이 협약을 이러한 범죄에 대한 범죄인 인도의 법적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는 피요청국의 법에 규정된 그 밖의 조건에 따른다.
3. 조약의 존재를 범죄인 인도의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사국은 피요청국의

법이 규정한 조건에 따라 위의 범죄를 그들 사이의 인도대상 범죄로 인정한다.

4. 당사국 사이의 범죄인 인도 목적상 위의 범죄는 범죄 발생지에서는 물론 제5조제1항에 따라 관할권을 확립하여야 하는 국가의 영토에서도 실행된 것으로 취급된다.

### 제 9 조

1. 제4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제기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서로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하며, 이러한 지원에는 당사국이 보유한 형사절차상 필요한 모든 증거의 제공이 포함된다.
2. 당사국은 당사국 사이에 체결된 사법공조 조약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수행한다.

### 제 10 조

1. 당사국은 여하한 형태의 체포·구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된 개인의 구금·심문 또는 처리에 관여할 수 있는 민간이나 군의 법집행요원·의료인·공무원 및 그 밖의 요원들의 훈련과정에 고문방지에 관한 교육 및 정보가 충실하게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은 위 요원들의 임무 및 기능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에 고문금지 내용을 포함시킨다.

### 제 11 조

고문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자기나라 관할하의 영토내에서 여하한 형태의 체포·구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된 개인을 구금·처리하는 각종 제도는 물론 심문 규칙·지침·방법 및 관행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 제 12 조

당사국은 자기나라 관할하의 영토내에서 고문이 자행되었다고 믿을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권한있는 당국이 신속하고 공평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보장한다.

## 제 13 조

당사국은 자기나라 관할하의 영토내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권한있는 당국에 고소하여 신속하고 공평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고소인과 증인이 고소 또는 증거제공으로 인하여 부당한 취급이나 협박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조치를 취한다.

## 제 14 조

1. 당사국은 자기나라의 법체계 안에서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구제를 받고, 또한 가능한 한 완전한 재활수단을 포함하여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고문행위의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부양가족이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피해자나 그 밖의 개인들이 국내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 15 조

당사국은 고문의 결과 행해진 것으로 입증된 진술이 모든 소송에서 증거로 원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위의 진술사실이 고문 혐의자에 대한 소송에서 그 진술이 행하여졌다는 증거로 원용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 16 조

1. 당사국은 자기나라 관할하의 영토내에서 제1조에 규정된 고문에 미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 공무원이  
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이들의 교사·동·묵인 아래 이루어  
지는 것을 방지한다. 특히 제10조·제11조·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의무  
는 “고문”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 밖의 형태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  
인 대우나 처벌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여 그대로 적용한다.

2. 이 협약의 규정은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금지하  
거나 범죄인 인도·추방과 관련된 그 밖의 국제문서나 국내법의 규정을 해하지  
아니한다.

## 제 2 장

### 제 17 조

1. 다음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고문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지니고 인권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  
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이들은 개인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이들 전문가는  
당사국이 선출하며, 선출시에는 공평한 지역적 안배 및 법률적 경험을 가진  
인사가 일부 포함되는 것이 유익하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이 지명한 후보자 명부에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각 당사국은 자기나라 국민중에서 후보자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당사국은  
후보자 지명시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에 따라 설치된 인권이사  
회의 위원중 고문방지위원회에 재임하고자 하는 인사를 지명하는 것이 유익하  
다는 점을 유념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2년마다 소집하는 당사국회의에서  
선출된다. 당사국의 3분의 2가 의사정족수를 구성하는 이 회의에서 위원회  
위원은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 대표로부터 절대 다수표를 획득한 자중 최다  
득표자 순으로 선출된다.

4. 최초 선거는 이 협약 발효일로부터 6월 안에 실시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최소한 각 선거일 4월 전에 모든 당사국에 서한을 발송하여, 3월 안에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와 같이 지명된 모든 후보자의 명부를 지명국을 표시하여 알파벳 순으로 작성하며, 이 명부를 모든 당사국에 송부한다.
5.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후보로 재지명되는 경우 재선될 수 있다. 다만, 최초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중 5명의 임기는 2년 만에 종료한다. 이들 위원 5명은 최초 선거 직후 제3항에 규정된 회의의 의장이 추천으로 선정한다.
6. 위원회의 위원이 사망·사임하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전체 당사국 과반수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위원의 잔여 임기동안 재임할 다른 전문가를 자기나라 국민 중에서 지명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지명안을 당사국에 통지한 후 6주 안에 전체 당사국의 반 또는 그 이상이 반대를 표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 지명안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7. 당사국은 위원회 위원들의 임무수행중 발생하는 위원들의 경비를 부담한다.

## 제 18 조

1.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임원은 재선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다만, 이 규칙은 특히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 가. 의사정족수는 위원 6인으로 한다.
  - 나. 위원회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이 협약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원과 시설을 제공한다.
4.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소집한다. 제1차 회의 이후

위원회는 의사규칙에 규정되는 시기에 회합한다.

5. 당사국은 당사국 회의 및 위원회 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를 부담하며, 이러한 경비에는 제3항에 따라 국제연합이 부담한 인건비·시설비 등과 같은 제반경비로서 국제연합에 상환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 제 19 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이 협약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후 1년 안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그 이후에 당사국은 새로이 취한 조치에 관하여 매 4년마다 추가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가 요청하는 그 밖의 보고서를 제출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보고서를 모든 당사국에 송부한다.

3.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적인 의견제시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제시를 관련 당사국에 송부한다. 관련당사국은 이에 대한 견해를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행한 의견제시를 관련 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견해와 함께 제24조에 따라 작성되는 위원회의 연례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관련당사국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또한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사본을 포함시킬 수 있다.

### 제 20 조

1. 위원회가 어떤 당사국의 영토내에서 고문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근거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접수하는 경우, 위원회는 그 당사국에 대하여 그러한 정보를 조사하는 데 협조할 것과, 또한 이를 위하여 관련 정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2. 위원회는 관련당사국이 제출한 의견 및 그 밖에 입수 가능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하여 정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위원중 1명 또는 그 이상을 지명하여 비공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원회에 긴급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사가 실시되는 경우, 위원회는 관련당사국에 협력을 요청한다. 관련당사국과 합의하는 경우 이러한 조사에는 관련당사국의 영토 방문이 포함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위원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상황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제시 및 제안과 함께 관련당사국에 송부한다.

5. 제1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된 위원회의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국의 협력을 요청한다. 제2항에 따라 실시된 조사절차가 완료된 후, 위원회는 관련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쳐 조사결과 요지를 제24조에 따라 작성되는 연례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결정할 수 있다.

## 제 21 조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어떤 당사국이 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다른 당사국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통보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이러한 통보를 수리하여 심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이 조에 따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러한 통보는, 위원회의 권능을 자기나라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선언을 한 당사국이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리되어 심리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선언을 하지 아니한 당사국과 관련된 통보를 이 조에 따라 처리할 수 없다. 이 조에 따라 수리된 통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가.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이 협약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서면통보로 이 문제에 관하여 그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통보접수국은 통보접수 3월 안에 통보국에 대하여 관련문제를 설명하는 설명서나 그 밖의 해명서를 제공한다. 이 설명서나 해명서는 가능하고 적절한 범위

안에서 국내절차 및 이미 취해졌거나 계류중이거나 이용가능한 구제수단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접수국이 최초 통보를 접수한 후 6월 안에 두 관련당사국 사이에 문제가 만족스럽게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 당사국은 위원회와 타방당사국에 대한 통고를 통해, 위원회에 문제를 회부할 권리를 가진다.

다. 위원회는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시도되어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이 조에 따라 회부된 문제를 처리한다. 다만, 구제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이 협약 위반으로 피해를 받은 자에게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통보를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검토한다.

마. 마호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에 대한 존중에 기초하여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토록하기 위하여 관련당사국에 주선을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임시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이 조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나호에 규정된 관련당사국에게 모든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사. 나호에 규정된 관련당사국은 위원회에서 문제가 심리되는 동안 대표를 참석시킬 권리와 구두 및 서면진술권을 가진다.

아. 위원회는 나호에 따른 통고 접수일부터 12월 안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1) 마호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하는 경우, 위원회의 보고내용은 사실관계 및 해결내용에 관한 약술로 한정된다.

(2) 마호의 규정에 따라 해결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위원회의 보고내용은 사실관계에 관한 약술로 한정되며, 관련당사국이 제출한 서면진술 및 구두진술기록이 보고서에 첨부된다.



어떤 문제와 관련된 것이든 보고서는 관련당사국에게 통보된다.

2.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약의 5개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선언을 하는 때에 발효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선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선언의 사본을 그 밖의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선언은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 철회될 수 있다. 철회는 이 조에 따라 이미 송부되어 통보의 대상이 된 문제의 심리를 해하지 아니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선언철회에 관한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관련당사국이 새로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이러한 당사국의 통보는 더 이상 이 조에 따라 수리되지 아니한다.

## 제 22 조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자기나라의 관할권 내에 소재하는 개인이 당사국의 협약 규정 위반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그 개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통보를 수리하고 심리할 권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이 조에 따라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선언을 하지 아니한 당사국과 관련된 통보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익명의 통보, 통보제출권의 남용 또는 이 협약의 규정과 양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보에 대하여는 이를 이 조에 따라 수리될 수 없는 통보로 간주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이 조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된 통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선언을 하였으며 협약 규정을 위반한 혐의당사국에게 주의를 환기시킨다. 6월 안에 접수국은 사건의 내용과 스스로 취한 구제조치를 설명하는 설명서나 해명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4. 위원회는 개인이 직접 또는 그의 대리인 및 관련당사국이 제공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이 조에 따라 수리된 통보를 심리한다.
5.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전에는 이 조에 따른 개인의 통보를 심리하

지 아니한다.

가. 동일한 문제가 다른 국제적인 조사 또는 해결절차에 따라 심리되었거나 현재 심리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하였을 것. 다만, 구제 수단의 적용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또는 이 협약 위반으로 피해를 받은 자에게 효과적인 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6. 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통보를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검토한다.

7.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견을 관련당사국과 개인에게 송부한다.

8. 이 조의 규정은 이 협약의 5개 당사국이 제1항에 따라 선언을 하는 때에 발효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선언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선언의 사본을 그 밖의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선언은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 철회될 수 있다. 철회는 이 조에 따라 이미 송부되어 통보의 대상이 된 문제의 심리를 해하지 아니한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선언철회에 관한 통고를 접수한 후에는, 당사국이 새로이 선언을 하지 아니하는 한, 개인 또는 그의 대리인의 통보는 더 이상 이 조에 따라 수리되지 아니한다.

## 제 23 조

위원회의 위원 및 제21조제1항마호에 따라 임명되는 임시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국제연합의 특권·면제에관한협약의 관련 부분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제연합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중인 전문가의 편의와 특권·면제를 향유한다.

## 제 24 조

위원회는 이 협약에 따른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모든 당사국과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한다.

### 제 3 장

#### 제 25 조

1. 이 협약은 모든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 제 26 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 제 27 조

1. 이 협약은 스무번 째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스무번 째의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나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 제 28 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비준 또는 가입시에 제20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유보를 한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 언제든지 이러한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 제 29 조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개정안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러한 개정안을 즉시 모든 당사국에게 통보하며, 당사국들이 개정안의 심의·표결을 위하여 당사국회의 개최

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자신에게 통고하여 주도록 요청한다. 위의 통보일부터 4월 안에 최소한 당사국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안이 이 회의에 출석하여 투표한 당사국의 과반수로 채택되는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채택된 개정안의 수락을 위해 모든 당사국에 송부한다.

2. 제1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이 협약의 당사국 3분의 2가 각자의 헌법절차에 따라 이를 수락하였다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이 발효하는 경우 개정안은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과거에 수락한 이 협약의 규정 및 개정안에 계속 구속된다.

### 제 30 조

1.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2개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사이의 분쟁이 교섭에 의하여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당사국중 1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당사국이 중재재판 요청일부터 6월 안에 중재재판부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당사국은 이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2. 각국은 이 협약의 서명·비준 또는 가입시에 자기나라는 제1항에 구속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그 밖의 당사국은 이러한 유보를 행한 당사국과의 관계에서 제1항에 구속받지 아니한다.

3. 제2항에 따라 유보를 행한 당사국은 언제든지 국제연합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 제 31 조

1.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로 이 협약을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2. 이러한 탈퇴는 탈퇴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작위 또는 부작위와 관련된 당사

국의 협약상 의무를 면제시키지 아니하며, 또한 탈퇴 발효일 이전에 위원회가 이미 심리중인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심리를 해하지 아니한다.

3. 위원회는 당사국의 탈퇴가 발효한 날 이후에 이러한 당사국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의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

### 제 32 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및 이 협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한다.

가. 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서명·비준 및 가입

나. 제27조에 따른 이 협약의 발효일 및 제29조에 따른 개정의 발효일

다. 제31조에 따른 탈퇴

### 제 33 조

1.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2.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모든 국가에 송부한다.

### 3-1.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Consider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cognition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Recognizing that those rights derive from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Considering the obligation of States under the Charter, in particular Article 55, to promote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Having regard to article 5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rticle 7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both of which provide that no one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to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Having regard also to the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9 December 1975,

Desiring to make more effective the struggle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roughout the world,

Have agreed as follows:

## **PART I**

### **Article 1**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torture” means any act by which severe pain or suffering, whether physical or mental, is intentionally inflicted on a person for such purposes as obtaining from him or a third person information or a confession, punishing him for an act he or a third person has committed or is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or intimidating or coercing him or a third person, or for any reason based on discrimination of any kind, when such pain or suffering is inflicted by or at the instigation of or with the consent or acquiescence of a public official or other person acting in an official capacity. It does not include pain or suffering arising only from, inherent in or incidental to lawful sanctions.
2. This article is without prejudice to any international instrument or national legislation which does or may contain provisions of wider application.

### **Article 2**

1. Each State Party shall take effective legislative, administrative, judicial or other measures to prevent acts of torture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2. No exceptional circumstances whatsoever, whether a state of war or a threat of war, internal political instability or any other public emergency, may be invoked as a justification of torture.
3. An order from a superior officer or a public authority may not be invoked as a justification of torture.

### Article 3

1. No State Party shall expel, return (“refouler”) or extradite a person to another State where there are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he would be in danger of being subjected to torture.
2.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whether there are such grounds,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considerations including, where applicable, the existence in the State concerned of a consistent pattern of gross, flagrant or ma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 Article 4

1.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all acts of torture are offences under its criminal law. The same shall apply to an attempt to commit torture and to an act by any person which constitutes complicity or participation in torture.
2. Each State Party shall make these offences punishable by appropriate penalties which take into account their grave nature.

### Article 5

1. Each State Party shall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its jurisdiction over the offences referred to in article 4 in the following cases:
  - (a) When the offences are committed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or on board a ship or aircraft registered in that State;
  - (b) When the alleged offender is a national of that State;
  - (c) When the victim is a national of that State if that State considers it appropriate.
2. Each State Party shall likewise take such measures as may be necessary to establish its jurisdiction over such offences in cases where the alleged



offender is present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and it does not extradite him pursuant to article 8 to any of the State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3. This Convention does not exclude any criminal jurisdiction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internal law.

### **Article 6**

1. Upon being satisfied, after an examination of information available to it, that the circumstances so warrant, any State Party in whose territory a person alleged to have committed any offence referred to in article 4 is present shall take him into custody or take other legal measures to ensure his presence. The custody and other legal measures shall be as provided in the law of that State but may be continued only for such time as is necessary to enable any criminal or extradition proceedings to be instituted.

2. Such State shall immediately make a preliminary inquiry into the facts.

3. Any person in custody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be assisted in communicating immediately with the nearest appropriate representative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or, if he is a stateless person, with the representative of the State where he usually resides.

4. When a State, pursuant to this article, has taken a person into custody, it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5, paragraph 1, of the fact that such person is in custody and of the circumstances which warrant his detention. The State which makes the preliminary inquiry contemplat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promptly report its findings to the said States and shall indicate whether it intends to exercise jurisdiction.

## Article 7

1. The State Party in the territory under whose jurisdiction a person alleged to have committed any offence referred to in article 4 is found shall in the cases contemplated in article 5, if it does not extradite him, submit the case to its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 of prosecution.
2. These authorities shall take their decision in the same manner as in the case of any ordinary offence of a serious natur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In the cases referred to in article 5, paragraph 2, the standards of evidence required for prosecution and conviction shall in no way be less stringent than those which apply in the cases referred to in article 5, paragraph 1.
3. Any person regarding whom proceedings are brought in connection with any of the offences referred to in article 4 shall be guaranteed fair treatment at all stages of the proceedings.

## Article 8

1. The offences referred to in article 4 shall be deemed to be included as extraditable offences in any extradition treaty existing between States Parties. States Parties undertake to include such offences as extraditable offences in every extradition treaty to be concluded between them.
2. If a State Party which makes extradition conditional on the existence of a treaty receives a request for extradition from another State Party with which it has no extradition treaty, it may consider this Convention as the legal basis for extradition in respect of such offences. Extradition shall be subject to the other conditions provid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State.
3. States Parties which do not make extradition conditional on the existence of a treaty shall recognize such offences as extraditable offences between

themselves subject to the conditions provided by the law of the requested State.

4. Such offences shall be treated, for the purpose of extradition between States Parties, as if they had been committed not only in the place in which they occurred but also in the territories of the States required to establish their jurisdic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paragraph 1.

### **Article 9**

1. States Parties shall afford one another the greatest measure of assistance in connection with criminal proceedings brought in respect of any of the offences referred to in article 4, including the supply of all evidence at their disposal necessary for the proceedings.

2. States Parties shall carry out their obligations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in conformity with any treaties on mutual judicial assistance that may exist between them.

### **Article 10**

1.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education and information regarding the prohibition against torture are fully included in the training of law enforcement personnel, civil or military, medical personnel, public officials and other persons who may be involved in the custody, interrogation or treatment of any individual subjected to any form of arrest, detention or imprisonment.

2. Each State Party shall include this prohibition in the rules or instructions issued in regard to the duties and functions of any such person.

### **Article 11**

Each State Party shall keep under systematic review interrogation rules, instructions, methods and practices as well as arrangements for the custody and treatment of persons subjected to any form of arrest, detention or imprisonment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with a view to preventing any cases of torture.

### **Article 12**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its competent authorities proceed to a promp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wherever there is reasonable ground to believe that an act of torture has been committed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 **Article 13**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any individual who alleges he has been subjected to torture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has the right to complain to, and to have his case promptly and impartially examined by, its competent authorities. Steps shall be taken to ensure that the complainant and witnesses are protected against all ill-treatment or intimidation as a consequence of his complaint or any evidence given.

### **Article 14**

1.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in its legal system that the victim of an act of torture obtains redress and has an enforceable right to fair and adequate compensation, including the means for as full rehabilitation as possible. In the event of the death of the victim as a result of an act of torture, his dependants shall be entitled to compensation.

2.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ffect any right of the victim or other persons to compensation which may exist under national law.

### **Article 15**

Each State Party shall ensure that any statement which is established to have been made as a result of torture shall not be invoked as evidence in any proceedings, except against a person accused of torture as evidence that the statement was made.

### **Article 16**

1. Each State Party shall undertake to prevent in any territory under its jurisdiction other acts of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which do not amount to torture as defined in article I, when such acts are committed by or at the instigation of or with the consent or acquiescence of a public official or other person acting in an official capacity. In particular, the obligations contained in articles 10, 11, 12 and 13 shall apply with the substitution for references to torture of references to other forms of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2.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e without prejudice to the provisions of any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 or national law which prohibits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r which relates to extradition or expulsion.

## PART II

### Article 17

1.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Committee against Tortur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which shall carry out the functions hereinafter provided.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ten experts of high moral standing and recognized competenc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who shall serve in their personal capacity. The experts shall be elected by the States Parties, consideration being given to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and to the usefulness of the participation of some persons having legal experience.
2.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from a list of persons nominated by States Parties. Each State Party may nominate one person from among its own nationals. States Parties shall bear in mind the usefulness of nominating persons who are also member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who are willing to serve on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3. Elections of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held at biennial meetings of States Parties conven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t those meetings, for which two thirds of the States Parties shall constitute a quorum, the persons elected to the Committee shall be those who obtain the largest number of votes and an absolute majority of the votes of the representatives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4. The initial election shall be held no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At least four months before the date of each election,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address a letter to the States Parties inviting them to submit their nominations within

three months. The Secretary-General shall prepare a list in alphabetical order of all persons thus nominated, indicating the States Parties which have nominated them, and shall submit it to the States Parties.

5.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for a term of four years. They sha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if renominated. However, the term of five of the members elected at the first election shall expire at the end of two years; immediately after the first election the names of these five members shall be chosen by lot by the chairman of the meeting referred to in paragraph 3 of this article.

6. If a member of the Committee dies or resigns or for any other cause can no longer perform his Committee duties, the State Party which nominated him shall appoint another expert from among its nationals to serve for the remainder of his term,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The approval shall be considered given unless half or more of the States Parties respond negatively within six weeks after having been inform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proposed appointment.

7. States Parties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expenses of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while they are in performance of Committee duties.

### **Article 18**

1. The Committee shall elect its officers for a term of two years. They may be re-elected.

2.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its own rules of procedure, but these rules shall provide, inter alia, that:

(a) Six members shall constitute a quorum;

(b) Decisions of the Committee shall be made by a majority vote of the members

present.

3.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provide the necessary staff and facilities for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under this Convention.

4.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convene the initial meeting of the Committee. After its initial meeting, the Committee shall meet at such times as shall be provided in its rules of procedure.

5. The States Parties shall be responsible for expense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holding of meetings of the States Parties and of the Committee, including reimbursement to the United Nations for any expenses, such as the cost of staff and facilities, incurred by the United Nations pursuant to paragraph 3 of this article.

### **Article 19**

1. The States Parties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reports on the measures they have taken to give effect to their undertakings under this Convention, within one year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the State Party concerned. Thereafter the States Parties shall submit supplementary reports every four years on any new measures taken and such other reports as the Committee may request.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ransmit the reports to all States Parties.

3. Each report shall be considered by the Committee which may make such general comments on the report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 and shall forward these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That State Party may respond with any observations it chooses to the Committee.



4. The Committee may, at its discretion, decide to include any comments made by it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this article, together with the observations thereon received from the State Party concerned, in its annual report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 If so requested by the State Party concerned, the Committee may also include a copy of the report submitted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 **Article 20**

1. If the Committee receives reliable information which appears to it to contain well-founded indications that torture is being systematically practised in the territory of a State Party, the Committee shall invite that State Party to co-operate in the examination of the information and to this end to submit observations with regard to the information concerned.

2. Taking into account any observations which may have been submitted by the State Party concerned, as well as any other relevant information available to it, the Committee may, if it decides that this is warranted, designate one or more of its members to make a confidential inquiry and to report to the Committee urgently.

3. If an inquiry is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Committee shall seek the co-operation of the State Party concerned. In agreement with that State Party, such an inquiry may include a visit to its territory.

4. After examining the findings of its member or members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the Commission shall transmit these findings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together with any comments or suggestions which seem appropriate in view of the situation.

5. All the proceedings of the Committee referred to in paragraphs 1 to 4 of this article shall be confidential, and at all stages of the proceedings the co-operation of the State Party shall be sought. After such proceedings have been completed with regard to an inquiry mad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the Committee may, after consultations with the State Party concerned, decide to include a summary account of the results of the proceedings in its annual report made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

### **Article 21**

1. A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may at any time declare under this article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to the effect that a State Party claim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fulfilling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Such communications may be received and considered according to the procedures laid down in this article only if submitted by a State Party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recognizing in regard to itself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No communication shall be dealt with by the Committee under this article if it concerns a State Party which has not made such a declaration. Communications received under this article shall be dealt with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dure;

(a) If a State Party considers that another State Party is not giving effect to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it may, by written communication, bring the matter to the attention of that State Party.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receipt of the communication the receiving State shall afford the State which sent the communication an explanation or any other statement in writing clarifying the matter, which should include, to the extent possible and pertinent,

reference to domestic procedures and remedies taken, pending or available in the matter;

(b) If the matter is not adjusted to the satisfaction of both States Parties concerned within six months after the receipt by the receiving State of the initial communication, either State shall have the right to refer the matter to the Committee, by notice given to the Committee and to the other State;

(c) The Committee shall deal with a matter referred to it under this article only after it has ascertained that all domestic remedies have been invoked and exhausted in the matter, in conformity with the generally recognized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This shall not be the rule where the application of the remedies is unreasonably prolonged or is unlikely to bring effective relief to the person who is the victim of the violation of this Convention;

(d) The Committee shall hold closed meetings when examining communications under this article;

(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ubparagraph (c), the Committee shall make available its good offices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with a view to a friendly solution of the matter on the basis of respect for the obligation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For this purpose, the Committee may, when appropriate, set up an ad hoc conciliation commission;

(f) In any matter referred to it under this article, the Committee may call upon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to supply any relevant information;

(g)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referred to in subparagraph (b), shall have the right to be represented when the matter is being considered by the Committee and to make submissions orally and/or in writing;

(h) The Committee shall, within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notice under subparagraph (b), submit a report:

(i) If a solution within the terms of subparagraph (e) is reached, the Committee shall confine its report to a brief statement of the facts and of the solution reached;

(ii) If a solution within the terms of subparagraph (e) is not reached, the Committee shall confine its report to a brief statement of the facts; the written submissions and record of the oral submissions made by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shall be attached to the report. In every matter, the report shall be communicated to the States Parties concerned.

2.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come into force when fiv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have made declarations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uch declarations shall be deposited by the States Parties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ransmit copies thereof to the other States Parties. A declaration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Such a withdrawal shall not prejudice the consideration of any matter which is the subject of a communication already transmitted under this article; no further communication by any State Party shall be received under this article after the notification of withdrawal of the declaration has been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unless the State Party concerned has made a new declaration.

## **Article 22**

1. A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may at any time declare under this article that it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or on behalf of individuals subject to its jurisdiction who claim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by a State Party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No communication shall be received by the Committee if it concerns a State Party which has not made such a declaration.

2. The Committee shall consider inadmissible any communication under this article which is anonymous or which it considers to be an abuse of the right of submission of such communications or to be incompatibl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3.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the Committee shall bring any communications submitted to it under this article to the attention of the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under paragraph 1 and is alleged to be violating any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ithin six months, the receiving State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written explanations or statements clarifying the matter and the remedy, if any, that may have been taken by that State.

4. The Committee shall consider communications received under this article in the light of all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it by or on behalf of the individual and by the State Party concerned.

5. The Committee shall not consider any communications from an individual under this article unless it has ascertained that:

(a) The same matter has not been, and is not being, examined under another procedure of international investigation or settlement;

(b) The individual has exhausted all available domestic remedies; this shall not be the rule where the application of the remedies is unreasonably prolonged or is unlikely to bring effective relief to the person who is the victim of the violation of this Convention.

6. The Committee shall hold closed meetings when examining communications under this article.

7. The Committee shall forward its views to the State Party concerned and to the individual.

8.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come into force when fiv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have made declarations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uch declarations shall be deposited by the States Parties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ransmit copies thereof to the other States Parties. A declaration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Such a withdrawal shall not prejudice the consideration of any matter which is the subject of a communication already transmitted under this article; no further communication by or on behalf of an individual shall be received under this article after the notification of withdrawal of the declaration has been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unless the State Party has made a new declaration.

### **Article 23**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and of the ad hoc conciliation commissions which may be appointed under article 21, paragraph 1 (e), shall be entitled to the facilities,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experts on mission for the United Nations as laid down in the relevant sect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United Nations.

### **Article 24**

The Committee shall submit an annual report on its activities under this Convention to the States Parties and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 **PART III**

#### **Article 25**

1. This Convention is open for signature by all States.
2. This Convention is subject to ratificatio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 **Article 26**

This Convention is open to accession by all States.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 **Article 27**

1.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twen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this Convention or acceding to it after the deposit of the twen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own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 **Article 28**

1. Each State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or ratification of this Convention or accession thereto, declare that it does not recognize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provided for in article 20.
2. Any State Party having made a reserv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at any time, withdraw this reservation by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 **Article 29**

1. Any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may propose an amendment and file 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shall thereupon communicate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States Parties with a request that they notify him whether they favour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 d voting upon the proposal. In the event that within four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communication at least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favours such a conference,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the confere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y amendment adopted by a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t the conference shall be submitted by the Secretary-General to all the States Parties for acceptance.

2. An amendment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enter into force when two thirds of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have notified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at they have accepted it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3. When amendments enter into force, they shall be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which have accepted them, other States Parties still being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any earlier amendments which they have accepted.

### **Article 30**

1. Any dispute between two or more States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which cannot be settled through negotiation shall, at the request of one of them,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f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request for arbitration the Parties are unable to agree on the organization of the arbitration, any one of those Parties may refer the disput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by request in conformity with the Statute of the Court.

2. Each State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or ratification of this Convention or accession thereto, declare that it does not consider itself bound by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other States Parties shall not be bound by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ith respect to any State Party having made such a reservation.

3. Any State Party having made a reserv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is article may at any time withdraw this reservation by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 **Article 31**

1. A State Party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Denunciation becomes effective one year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

2. Such a denunciation shall not have the effect of releasing the State Party from its obligations under this Convention in regard to any act or omission which occurs prior to the date at which the denunciation becomes effective, nor shall denunciation prejudice in any way the continued consideration of any matter which is already under consideration by the Committee prior to the date at which the denunciation becomes effective.

3. Following the date at which the denunciation of a State Party becomes effective, the Committee shall not commence consideration of any new matter

regarding that State.

### **Article 3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all States which have signed this Convention or acceded to it of the following:

- (a) Signatures,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under articles 25 and 26;
- (b)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under article 27 and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any amendments under article 29;
- (c) Denunciations under article 31.

### **Article 33**

1. This Convention,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of this Convention to all States.

#### 4. 1986. 8. 12 중국과 북한간 변경지역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업무를 위한 상호협력 의정서\*

중화인민공화국公安부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보위부는 양국公安, 보위기관의 우호협력을 진일보 발전시키려는 희망을 갖고 쌍방 간에 변경지역 내에서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업무와 관련된 상호 협력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협의에 달성하였다.

**제1조** 쌍방은 양국 변경지역의 안전유지와 국가사회재산 및 주민의 생명 재산 보호업무에 관해 상호 협력한다.

- ① 쌍방은 화재, 수재, 풍재, 지진재해, 산재사고 등 각종 재해사고에 대한 예방 업무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일방은 재해사고로 인해 부득이하게 자신의 지역 내로 들어온 상대방 주민을 마땅히 구제하여야 한다.
- ② 일방은 상대방이 분실한 선박, 가축, 가금 및 기타 재산을 습득하였을 경우에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되고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신속히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측은 신속히 이를 수령해야 한다.
- ③ 만약 일방인 변경지역에서 전염병이나 병충해가 발생하거나 상대방 지역으로 전염되어올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쌍방 협상을 통해 국경지역의 통행을 잠시 금지시킬 수 있다.
- ④ 만약 일방이 자국 경내 혹은 변경지역에서 수행하는 임무가 상대방 국가, 사회재산 및 주민의 생명, 재산에 위해가 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과 협상을 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 출처: 정일영·박춘호 공편, 『한·중 수교 십년 중국국적 조선족과 탈북난민 문제』 (서울: 백상재단, 2003), pp. 251~264.

- ⑤ 만약 일방이 변경지역에서 시체를 발견할 경우에는 마땅히 그 국적과 사망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만약에 사망자가 상대지역 주민일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사망자가 쌍방과 관련된 범죄사건이거나 국적이 불명할 경우에는 쌍방이 협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만약 사망자의 국적을 판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체가 발견된 지역의 국가에서 처리한다.
- ⑥ 주민의 생명과 사회재산이 위해가 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쌍방은 압록강과 두만강의 공동지역에서 무기를 사용하거나 폭약으로 사냥 또는 고기 잡는 것을 금지한다.
- ⑦ 쌍방의 군경인원은 변경에서 공무를 수행할 때 반혁명분자가 파괴활동을 기도하거나 단속 받는 사람이 폭력으로 반항하여 자신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등 특수한 상황 이외에는 총을 발사해서는 안되며 군견을 풀어놓아서도 안된다.

**제2조** 쌍방은 양국변경지역과 변경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경호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 ① 쌍방은 압록강과 두만강의 변경을 공동의 경호구역으로 한다. 경호임무의 편의를 위해 일방 영토에 가까운 지역에 대한 경호임무는 그 해당지역 국가가 책임을 진다.
- ② 쌍방의 당 및 국가지도자가 탑승한 전용열차가 국경의 다리를 통과할 때에 쌍방은 국경의 다리주변 수역에 대해 경호 업무를 강화한다.
- ③ 양국 변경상의 시설에 대한 경호업무에 관해서는 쌍방이 합의한 관련협정에 의거하여 각자가 담당해야 할 임무를 책임지며 자신의 실제상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쌍방은 상기 경호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쌍방은 양국 변경지역의 통행질서를 유지하는 업무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 ① 양국 변경지역의 통행지점은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확정하여야 하며 상호변경을 통해 검사기관을 설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쌍방은 여권, 변경주민국경통행증, 변경공무통행증 및 쌍방이 협의를 통해 증명한 기타 증명서에 의거 양국 변경에 대한 통행을 허가하며 통행자는 증명서에서 지정하는 지점으로 국경을 통과해야 한다.
- ③ 양국 변경지역의 시, 현, 군의 공안과 출입국 업무기관 책임자는 상대방 변경지역으로 친척 방문하러 가는 변경주민에 대해 1개월간의 변경주민국경통행증을 발급해주며 규정된 변경주민 국경통행증 전용도장을 찍어준다. 변경지역 친척 방문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하고 관리를 강화하되 상대방 변경지역에 반드시 근친이 있을 경우에만 허가해 준다. 변경지역 주민이 근친 이외의 여타 친척을 방문하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초청통지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근친의 범위와 통지서 양식 및 사용방법은 쌍방변경지역의 공안과 안전 총대표 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변경공안과 안전 총대표 및 부총대표는 변경지역 업무를 위해 내왕하는 공무원인에 대해 1년 이내의 변경공부 통행증을 발급해준다.
- ④ 국경 통행시간은 다음과 같다.
  1. 4월~9월: 북경시간 8시~18시(중국 Summer Time 시간 9시~19시), 평양시간 9시~19시
  - 10월~3월: 북경시간 8시~17시, 평양시간 9시~18시 일요일 및 공휴일도 필요한 통행을 보장한다.
  2. 규정된 통행시간 이외에는 인원이나 교통수단의 국경통과를 일체 금지한다.

(기타 협의는 허가를 취득한 인원이나 교통수단은 예외) 긴급한 사정으로 규정시간 이외에 국경을 통행해야 하는 인원이나 교통수단은 상대방

변경 검사기관의 동의를 받은 후 국경을 통과할 수 있다.

- ⑤ 일방의 변경경호 인원, 변경지역 공무원인원 및 주민(교통수단 포함)이 상대방 변경지역의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상대방의 변경공안, 안전총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⑥ 양국 변경지역 관계기관의 협정체결 및 새로운 변경통행 문제에 관해서는 사전에 쌍방의 공안, 보위부가 협상하여 정한다. 단 긴급한 상황에서는 쌍방의 변경공안, 안전대표가 협상하여 해결하고 사후에 각자의 총대표에게 보고한다.

**제4조** 쌍방은 주민의 불법월경 방지업무에 관해 상호 협력한다.

- ① 합법적인 증명을 미소지하거나 소지한 증명에 명시된 통행지점 및 검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월경한 경우, 불법 월경자로 처리한다. 단, 재해 및 부득이한 원인으로 어느 일방의 경내로 진입한 상대방의 인원에 대해서는 불법 월경자로 보지 않는다. 변경주민 국경통행증을 소지하고 공안, 출입국 업무기관의 허락을 받고서 비변경지역으로 들어온 자에 대해서는 불법 월경으로 보지 않는다.
- ② 불법월경 인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그 명단 및 유관자료를 상대방에게 넘겨준다. 단, 월경후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본국의 법률에 따라 처리하되 그 상황을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제5조** 쌍방은 범죄자 처리문제를 상호 협력한다.

- ① 반혁명분자(간첩, 테러리스트, 파괴, 암살분자 포함) 및 일반 범죄자가 상대방의 경내로 도망해 들어가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 응당 통보해야 한다. 무기 혹은 폭약 등 위험이 발생할 경우 소지하고 상대방으로 도망해 갈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범죄자의 사진, 신체특징, 휴대무기 및 위험물, 월경지점 등 관련된 상세상황을 즉각 상대방에게 통보

하되 쌍방간의 상호 연계를 취하는데 있어서는 시간, 지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통지를 받은 일방은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상대방이 범죄자를 저지, 체포토록 도와준다. 만약 범죄자를 조사, 체포했을 경우에는 응당 범인을 상대방에게 인계해주어야 한다. 일방이 상대방의 경내로 도망해 들어간 범인을 계속 추적, 체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조사, 체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측은 응당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범인을 체포하여 관련자료와 함께 일방에게 인계해 주어야 한다. 만약 체포된 범죄자가 상대방의 경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쌍방의 협상을 거쳐 체포한 측의 법률에 의거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때에 그 정황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쌍방은 상대방 변경의 안전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정보자료를 얻었을 경우 이를 상호 통보해 준다.
- ③ 양국에 관련된 안전에 관해서는 협상을 거쳐 자국의 조사업무를 책임지고 긴밀한 연계를 가지며 상호 상황을 알아본다.
- ④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경내로 이주할 경우, 응당 그 자료를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 ⑤ 일방은 자기 경내로 이주해온 상대방 인원에 대한 신분이 불확실할 경우 상대방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측은 조사하여 답변해주어야 한다. 만약 자기 경내를 거쳐 상대방 경내로 들어가는 제3국인이 상대방의 안전에 위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자의 신분 및 상황에 관한 자료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 쌍방은 양국 접경지역의 시, 현, 군을 중국·조선의 변경지역으로 정하고 변경지역의 행정구역에 변동이 있을 시는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제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부부장과 조선인민공화국 국가보위부 부부장

은 중국·조선 변경지역의 공안, 안전 수석대표가 된다. 중·조 쌍방은 변경 공안, 안전 총대표 1인과 부총대표 약간명을 두며 중국측 공안 총대표, 부총대표는 변경 성 공안청의 책임자와 공안청 변방업무 책임자가 담당한다.

쌍방은 적당한 인원의 공안, 안전대표를 두되 변경지역 시, 현, 군의 공안, 보위기관 책임자가 담당한다. 변경공안 안전 총대표, 부총대표는 중국 공안부와 조선 국가보위부 부장이 각각 임명한다. 공안, 안전대표는 공안, 안전 총대표가 각각 임명한다. 쌍방은 반드시 임명자 명단을 상호 통보한다.

**제8조** 각급 중·조 변경공안, 안전대표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 ① 중·조 변경공안, 안전 수석대표의 임무는 중·조 변경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업무를 토론하고 제정하는 업무에 관해 상호 협조한다는 원칙적인 업무를 책임진다.
- ② 중·조 변경공안과 안전 총대표의 임무는 변경공안과 안전 수석대표회의를 통해 논의 결정된 사항의 집행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제정한다.
- ③ 중·조 변경공안, 안전 부총대표의 임무는 공안과 안전 총대표의 업무를 보좌한다. 총대표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지정된 부총대표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 ④ 중·조 변경공안과 안전대표의 임무는 각 시, 현, 군내의 수석 대표회의와 총대표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 및 총대표, 부총대표가 처리한 사항을 책임지고 집행한다.

**제9조** 쌍방의 각급 변경공안과 안전 대표간의 상호 연락 및 협상절차는 아래와 같다.

- ① 중·조 공안, 안전 수석대표 및 각급 변경공안, 안전대표간의 연락과 일상업



무는 전화, 서신, 인편 등의 방법으로 직접 수행한다. 필요시 외교적 절차를 밟아 연락을 취한다.

- ② 쌍방은 범죄인, 불법일경인, 가공물자 및 재산을 인계할 때마다 쌍방간에 협상을 통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하여 진행한다.
- ③ 중·조 변경공안, 안전 수석대표회의는 3년마다 1회 개최되고 변경공안, 안전 총대표회의는 2년마다 1회 개최한다. 회의장소는 쌍방이 윤번제로 하며 회의대표는 회의가 개최되는 국가의 대표가 담당한다. 회의 소집이 필요할 때에는 먼저 회의개최의 시기, 장소, 의제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중·조 변경공안, 안전 수석대표간에는 2개월 전에, 변경공안, 안전 총대표간에는 1개월 전에, 부총대표와 대표간에는 5일 전에 통보하여 동의를 얻도록 한다. 공안과 안전대표는 긴급 상황하에서는 쌍방이 협상을 통해서 기간 제한 없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공안, 안전총대표, 부총대표가 상대방 국경을 통과할시에는 반드시 중국 공안부부장, 조선 국가보위부 부장이 서명한 대표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본 의정서는 쌍방 정부의 비준을 얻어야 하며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의정서는 유효기간은 20년으로 하며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당사국의 어느 일방이 서면을 통해 다른 일방에게 본 의정서를 종료하자는 요구를 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5년간 연장된다.

본 의정서는 1986년 8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단둥에서 서명되어 중문, 조선문으로 각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모두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대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부 대표

## 4-1.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State Security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Ministry of Public Security

Mutual Cooperation Protocol for the Work of Maintaining National Security and Social Order in the Border Area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State Security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inistry of Public Security, in the hope of further developing the friendly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security and state security agencies of both countries, have reached an agreement, as follows, on mutual cooperation issues relating to the work of maintaining national security and social order within the border areas.

### ARTICLE 1

Both sides shall mutually cooperate on the work of protecting national social property and the life and property of the residents and of maintaining the safety of the border areas of the two countries.

#### Clause 1

Both sides shall actively cooperate on the work of preventing all kinds of calamities such as fire, floods, wind disasters, earthquake damage and industrial accidents. One side must provide appropriate relief to the other's side's residents who unavoidably enter its own area due to calamity.

#### Clause 2

In the event that one side finds a lost vessel, livestock, poultry or other property of the other side, it shall not be arbitrarily handled; it must be aptly safeguarded. The other side must be promptly notified, and the notified side must promptly take back [ the property in question].

#### Clause 3

In the event that in one side's border area there occurs an infectious disease or insect infestation or the other side's area is in danger of being contaminated, the other side must be immediately notified. When necessary, passage through the border area may be temporarily prohibited through negotiations of both sides.

#### Clause 4

In the event that the duties performed by one side within its own boundaries or in its border area are of harm to the other side's country, social property, or the life and property of the residents, negotiations must be held with the other side or safety measures must be adopted.

#### Clause 5

In the event that a corpse is discovered in one side's border area, its nationality and cause of death must be investigated as a matter of course. If the deceased is a resident of the other area, it must be handed over to the other side, and if the deceased is of a criminal case involving both sides or if the nationality is unknown, an investigation may be carried out jointly by both sides. If the nationality of the deceased cannot be determined, it shall be handled by the

country in whose area the corpse was found.

Clause 6

In order to prevent accidents that are of harm to the lives of the residents or to social property, both sides are prohibited from hunting or fishing using explosives or weapons in the jointly controlled waters of the Yalu and Tumen rivers.

Clause 7

It is prohibited that either side's law enforcement officers fire guns or release police dogs in the course of performing official business at the border unless under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when the safety of their own lives is put in peril by an antirevolutionary element attempting destructive activities or by a person being restrained who resists with violence.

**ARTICLE 2**

Both sides shall mutually cooperate on the work of patrolling both countries' border areas and the facilities installed in the border areas.

Clause 1

Both sides deem the border of the Yalu and Tumen rivers as a joint patrol zone. For ease of patrol duties, the concerned area's country shall take responsibility for the area near its territory.

Clause 2

when a private train carrying either side's party or national leaders passes the

bridge on the border, both sides shall reinforce patrol of the waters surrounding the border bridge.

Clause 3

Regarding the patrol of the facilities on the border of both countries, each side shall take responsibility for the duties it is in charge of based on the agreement consented to by both sides and perform the work according to its actual circumstances.

Clause 4

Each side must relay to the other on demand the materials necessary in the performance of the aforementioned patrol duties.

### ARTICLE 3

Both sides shall mutually cooperate on the work of maintaining order in the passage through the border areas of the two countries.

Clause 1

The passage points of the border areas of the two countries must be settled through consultation with the other side, a mutual border passage inspection agency shall be established, and work shall be performed to maintain order in border passage.

Clause 2

Both sides shall permit passage through the two countries, borders based on passport, border-resident border pass, border-business pass or other certificates

that have been authenticated through the consultation of both sides, and the passer must cross the border at the place designated on the certificate.

#### Clause 3

Persons in charge of entry/exit bureaus and public security in the cities, prefectures and counties in the border areas of the two countries shall issue to border residents who visit relatives on the other sides border area a one-month border-resident border pass and affix the prescribed seal [exclusively used] for border-resident passes-Persons who visit relatives in the border areas shall receive permission after undergoing strict screening, and controls shall be reinforced, with permission granted only in cases where immediate relatives are in the other side's border area. In the case of a border resident visiting relatives who are other than immediate, an "invitation notice" process must be undergone. The scope of immediate relatives, the form of the written notice and [its] method of use shall be settled through a meeting of the Public Security and Safety Chief Representatives of both side's border areas. The Chief and Deputy Representatives of Border Public Security and Safety shall issue a border-work pass of less than one year to civil servants who come and go for border area business.

#### Clause 4

Hours of border passage are as follows:

(1) April~September: Beijing Time 0800~1800 (China Summer Time 0900~1900), Pyongyang Time 0900~1900

October~March: Beijing Time 0800~1700, Pyongyang Time 0900~1800

Necessary Passage guaranteed on Sundays and holidays

as well.

(2) Crossing the border by persons or transportation means during hours other than those stipulated for passage is entirely prohibited.

Persons or transportation means that, due to circumstances of emergency, must pass the border at times other than those stipulated may contact the border after receiving the approval of the other side's border inspection agency.

#### Clause 5

When one side's border guards, border area civil servants or residents (transportation means included) use a road on the other side's border area, the approval of the other side's Border Public Security and Safety Chief Representative must be obtained.

#### Clause 6

The forging of an agreement between the relevant agencies of the two countries, border areas and new border-passage issues shall be negotiated and settled in advance by the Public Security and State Security Ministries of both sides. However, in situations of emergency, the Border Security and Safety representatives of both sides shall negotiate for a solution and afterwards report to each one's Chief Representative.

### ARTICLE 4

Both sides shall mutually cooperate on the work of preventing the illegal border crossing of residents.

Clause 1

In the case of crossing the border without possession of a legal certificate or without passing through screening agencies or the passage places stated on the possessed certificate, [the individual] shall be treated as an illegal border crosser. However, any person of the other side who enters the boundaries of one side due to any kind of calamity or unavoidable factors shall not be considered an illegal border crosser. A person possessing a border-resident pass who comes into a non-border area with the permission of public security and an entry/exit bureau shall not be considered an illegal border crosser.

Clause 2

Regarding individuals who illegally cross the border, depending on the situation a namelist or relevant materials shall be turned over to the other side. However, in case of there being a criminal act after the border is crossed it shall be handled according to the laws of [the individual's] country, and the other side shall be notified of the situation.

## ARTICLE 5

Both sides shall mutually cooperate on the issue of handling criminals.

Clause 1

In the event that there occurs the danger of antirevolutionary elements (spies, terrorists, destructive elements and assassins included) or common criminals escaping into the other side's borders, the other side must necessarily be informed. Regarding criminals possessing dangerous items such as weapons or explosives who have the possibility of escaping into the other side, the



other side must be immediately informed of such detailed items as the criminals, photographs, physical features, weapons or dangerous articles being carried, and place of crossing' there shall be no limits to the time or place of the reciprocal liaison between both sides. The notified side shall necessarily adopt the required procedure to aid the other side in intercepting and arresting the criminals.

In the event that a criminal is investigated and arrested the offender shall necessarily be handed over to the other side. If one side is unable to continue pursuing or to arrest the offender who has escaped into the borders of the other side, the investigation and arrest may be entrusted to the other side, and the entrusted side shall necessarily, in the swiftest time possible, arrest the offender and transfer him together with the relevant materials into the [custody of the concerned] side.

In the case where the arrested criminal had committed a crime within the borders of the other side, it may be handled, after agreement of the other side, based on the laws of the side that made the arrest, and the other side must be informed of the situation.

#### Clause 2

Both sides, in the event of receiving informational materials that harm the safety and social order of the other side's borders, shall reciprocally relay such [materials].

#### Clause 3

Regarding the case at issue, the two countries, after undergoing negotiations, shall take responsibility for its own investigative operations, and with close

liaison reciprocally inform [the other] of the situation.

Clause 4

In the case of transferring to within the other side's borders a person with the possibility of committing a crime, the [relevant] materials shall necessarily be relayed to the other side.

Clause 5

In the event that one side is uncertain of the identity of a person that the other side has transferred to within its own [one side's] borders, investigation may be entrusted to the other side, and the entrusted side must investigate and provide a reply-if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a person from a third country entering into the other side's borders, after passing through its own [one side's] borders, shall harm the other side's security, the other side must be notified of the concerned individual's identity and of materials relevant to the situation.

## ARTICLE 6

Both sides define the border areas of China and North Korea as the cities, prefectures and counties [located] on the frontier areas: should there be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zone of the border areas, the other side must be immediately informed.

## ARTICLE 7

The Minister of Public Securit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Minister of State Securit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all

be the Public Security and Safety Head Representatives of the North Korea-China border areas. Both North Korea and China shall [each] post one Chief Representative and several Deputy Representatives for Border Public Security and Safety.

The Chinese sides Public Security Chief Representative and Deputy Representatives shall be the person in charge of the border provincial Public Security Department and the persons in charge of the Public Security Department's border area affairs [respectively].

The North Korean side's Chief Representative and Deputy Representatives shall be the person in charge of the border province's State Security Department and the persons in charge of border police affairs [respectively]. Both sides shall post suitable personnel [as] Public Security and Safety representatives, and they shall be the persons in charge of the public security and [state] security agencies of the cities, prefectures and counties of the border areas.

The Chief and Deputy Representatives of Border Public Security and Safety shall each be appointed by the Ministers of China's Ministry of Public Security and North Korea's Ministry of State Security. Public Security and Safety representatives shall each be appointed by the Public Security and Safety Chief Representatives. Each side shall by all means reciprocally inform the other of the roster of appointees.

## ARTICLE 8

The duties of each level of North Korea's and China's Border Public Security and Safety representatives shall be as follows.

Clause 1

The duties of North Korea's and China's Border Public Security and Safety Head Representatives shall b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fundamental work of discussing the work of maintaining the safety and social order of the North Korea-China border and of mutually cooperating on the established work.

Clause 2

The duties of North Korea's and China's Border Public Security and Safety Chief Representatives shall be to concretely discuss and establish the enforcement method and procedure for items that have been discussed and decided through the meeting of the Border Public Security and Safety Head Representatives.

Clause 3

The duties of North Korea's and China's Border Public Security and Safety Deputy Representatives shall be to assist the Public Security and Safety Chief Representatives in their work. When a Chief Representative is unable to perform his work, the designated Deputy Representative shall perform his work in his stead.

Clause 4

The duties of North Korea's and China's Border Public Security and Safety representatives shall be to take responsibility for and enforce the items that have been settled by the Chief and Deputy Representatives and the items that have been decided at the Head Representatives Meeting and Chief Representatives, Meeting of each city, prefecture and county.

## ARTICLE 9

The reciprocal contact and negotiation procedure between both sides, Border Public Security and Safety representatives of each level shall be as follows.

### Clause 1

Contact and ordinary work among North Korea's and China's Public Security and Safety Head Representatives and each level's Border Public Security and Safety representatives shall be accomplished directly through such methods as telephone, written correspondence and the agency of persons. Contact shall be made through diplomatic procedures when necessary.

### Clause 2

Each time criminals, illegal border crossers, or any kind of goods or property is to be handed over, both sides shall select through negotiation a convenient place to conduct such.

### Clause 3

The North Korea-China Border Public Security and Safety Head Representatives Meeting shall be held once every three (3) years, and the Border Public Security and Safety Chief Representatives Meeting, every two (2) years. The place of meeting shall alternate between the two sides,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 country where the meeting is to be held shall be in charge of the meeting representative.

When a meeting needs to be convened, the other side must first be informed of the time, place and agenda of the meeting and agreement must be obtained. North Korea-China Border Public Security and Safety Head Representatives

shall be informed and agreement obtained two (2) months in advance: Border Safety and Public Security Chief Representatives, one (1) month in advance; and Deputy Representatives and representatives, four (4) days in advance. Under situations of emergency, Public Security and Safety representatives may hold a meeting on demand with no limit in time period through the negotiations of both sides-When Public Security and Safety chief and Deputy Representatives cross [into] the other side's borders, they must be in possession of a Representative Certificate signed by North Korea's Minister of State Security and by China's Minister of Public Security.

#### ARTICLE 10

This Protocol must be ratified by the governments of both sides and it shall be effective from the day each side informs the other. This Protocol's period of effectivity shall be twenty (20) years and shall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five (5) years as long as the authorities of neither side demands the other in writing six (6) months before expiration that it be terminated.

This Protocol is signed at Dandong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August, 12, 1986 with two copies composed in Korean and Chinese and both possessing equal validity.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State Security Representative

People's Republic of China Ministry of Public Security Representative

## 5. 중화인민공화국 형법(부분 발췌)

(1979년 7월 1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 통과,  
1997년 3월 14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1999년 12월 2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  
2001년 8월 31년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  
2001년 12월 29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  
2002년 12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  
2005년 2월 28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  
2006년 6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  
2009년 2월 28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2011년 2월 25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각 개정)

### 제 1 편 총 칙

#### 제1장 형법의 임무,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제1조[입법목적]** 범죄를 처벌하고, 인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고, 범죄와 투쟁하여 온 우리나라의 구체적 경험과 실정에 따라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임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임무는 형벌을 적용하여 모든 범죄행위와 투쟁함으로써 국가안전을 보위하고, 인민민주전정(人民民主專政) 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국유재산과 근로대중의 집단적 소유재산을 보호하고, 공민의 개인 소유재산, 공민의 인신에 대한 권리, 민중권리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질서, 경제질서를 수호, 사회주의 건설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제3조[죄형법정주의]** 법률이 명문으로 범죄행위로 규정한 경우 법률에 따라 죄를 인정하고, 형벌에 처한다. 법률이 명문으로 범죄행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죄를 인정하여 형벌에 처할 수 없다.

**제4조[법률 앞에서의 평등]** 누구의 범죄에 대하여도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모두 평등하다.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지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죄책과 형벌의 상응]** 형벌의 경중은 범죄자의 범죄행위 및 부담하는 형사책임에 상응해야 한다.

**제6조[속지주의관할권]**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 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본 법을 적용한다.

범죄행위 결과 중 어느 하나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人民民主專政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본다.

**제7조[속인주의관할권]**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서 본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본 법을 적용하고, 다만 본 법이 규정한 최고형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인 경우에는 그 죄를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공무원과 군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서 본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는 본 법을 적용한다.

**제8조[보호주의관할권]**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서 중화인민공화



국의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최저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경우, 본 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범죄지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국제조약관할권]**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부담하는 조약상 의무의 범위 내에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본 법을 적용한다.

**제10조[외국형사판결의 소극적 승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하여 본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저야하는 경우, 비록 외국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두 본 법에 따라 추궁할 수 있다. 다만, 외국에서 이미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11조[외교사절의 형사관할면제]** 외교특권 및 면제특권을 향유하는 외국인의 형사책임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

**제12조[형법의 소급력]**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본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행위를 행위시의 법률이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행위시의 법률이 범죄로 인정하고, 본 법 총칙 제4장 제8절의 규정에 의하여 소추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다만 본 법이 범죄로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형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법 시행 이전에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선고되어 이미 효력이 발생한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

## 제3장 형 벌

### 제1절 형벌의 종류

**제32조[주형과 부가형]** 형벌은 주형과 부가형으로 나눈다.

**제33조[주형의 종류]** 주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관제
- (2) 구역
- (3) 유기징역
- (4) 무기징역
- (5) 사형

**제34조[부가형의 종류]** 부가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벌금
- (2) 정치권리박탈
- (3) 재산몰수

부가형도 독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5조[국외추방]**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외추방을 독립적으로 적용하거나 또는 부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6조[경제손실배상과 민사우선원칙]** 범죄행위에 의해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범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는 이외에 정황에 따라 경제적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민사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범죄자가 동시에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재산으

로전부를 지불하기에 부족하거나 또는 재산물수를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37조[비형벌 처리조치]** 범죄 사안이 경미하여 형벌에 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상황에 따라 훈계하거나,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를 표명하게 하며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거나, 또는 주관부서가 행정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과할 수 있다.

## 제2절 관 제

**제38조[관제기간 및 집행기관]** 관제의 기간은 3개월 이상 2년 이하로 한다. 관제를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公安기관이 집행한다. 관제의 선고는 범죄 정황에 따라 집행기간에 범죄자의 특정 활동, 특정 지역이나 장소의 출입, 특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한다. 관제를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하여는 법에 의하여 사회교정을 실행한다. 제2항 규정의 금지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公安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39조[관제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의무 및 권리]** 관제를 선고받은 범죄자는 그 집행기간 동안 다음에 열거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감독에 복종한다.
- (2) 집행기관의 비준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행진, 시위의 자유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 (3) 집행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활동상황을 보고 하여야한다.
- (4) 집행기관의 면회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 (5) 거주하고 있는 시, 현을 벗어나거나 이주할 경우에는 집행기관에 보고

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관제를 선고받은 범죄자의 노동에 있어서 동일한 노동을 하면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0조[관제기간만료해제]** 관제를 선고받은 범죄자의 관제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집행기관은 즉시 본인과 그의 소속 단위 또는 거주지의 군중에 대하여 관제해제를 선포하여야 한다.

**제41조[관제형기의 기산과 환산]** 관제의 형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기산한다. 판결 집행 이전에 구금된 경우에는 구금 1일을 형기 2일로 산입한다.

### 제3절 구역

**제42조[구역의 기한]** 구역의 기한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한다.

**제43조[구역의 집행]** 구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하여는 공안기관이 인근 지점에서 집행한다.

집행기간동안 구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매일 1일 내지 2일간 귀가할 수 있으며, 노동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정도를 참작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구역형기의 기산과 환산]** 구역의 형기는 판결 집행일로부터 기산한다. 판결 집행 이전에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구금 1일을 형기 1일로 산입한다.

### 제4절 유기징역, 무기징역

**제45조[유기징역의 기한]** 유기징역의 기한은 본 법 제50조, 제69조 규정

외에는 6개월 이상 15년 이하로 한다.

**제46조[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의 집행]** 유기징역·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감옥 혹은 기타 집행장소에서 집행한다. 노동능력이 있는 경우 모두 노동에 참가하여 교육과 개조를 받아야 한다.

**제47조[유기징역형기의 기산과 환산]** 유기징역은 판결 집행일로부터 기산한다. 판결 집행 이전에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구금 1일을 형기 1일로 산입한다.

## 제5절 사 형

**제48조[사형과 집행유예부 사형의 적용대상과 심사비준절차]** 사형은 죄행이 극악한 범죄자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에 대하여 반드시 즉시 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형선고를 함과 동시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할 수 있다.

사형은 법에 의하여 최고인민법원이 판결하는 경우 이외에는 모두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사형집행유예의 경우에는 고급인민법원이 판결 또는 심사비준을 할 수 있다.

**제49조[사형적용대상에 대한 제한]** 범죄시에 만 18세 미만인 자와 재판시에 임신한 부녀의 경우, 사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판시에 만 75세 이상인 자는 사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0조[사형의 변경]** 사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만약

고의범죄가 없으면 2년 만기 후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만약 중대한 공적이 확실히 있으면 2년 만기 후 25년 유기징역으로 감형하고, 만약 고의범죄가 있고,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진 자에 대하여는 최고인민법원이 심사, 비준하여 사형을 집행한다.

사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누범 및 고의살인, 강간, 강도, 납치, 방화, 폭파, 위험물질을 투기 하거나 조직적인 폭력 범죄로 인하여 사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일 경우, 인민법원이 범죄 사안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감형을 결정할 수 있다.

**제51조[사형집행유예기간과 유기징역으로 감형한 형기의 기산]** 사형집행유예 기간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사형집행유예에서 유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의 형기는 집행유예기간 만기일로부터 기산한다.

## 제6절 벌 금

**제52조[벌금액수의 재량]**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는 범죄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결정하여야한다.

**제53조[벌금의 납부]** 벌금은 판결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납부한다. 기간 만료시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강제로 납부하게 한다. 벌금 전부를 납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인민법원이 피집행자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언제라도 즉시 징수한다. 만약 불가항력의 재해로 인하여 납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7절 정치권리박탈

**제54조[정치권리박탈의 정의]** 정치권리박탈은 다음에 열거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 (2)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데모(游行), 시위 등 자유의 권리
- (3) 국가기관의 직무를 담임할 권리
- (4)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및 인민단체를 이끄는 직무를 담임할 권리

**제55조[정치권리박탈 기한]** 정치권리박탈의 기간은 본 법 제57조에 규정한 이외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로 한다.

관제에 부가하여 정치권리박탈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정치권리박탈 기간은 관제의 기간과 같으며 동시에 집행한다.

**제56조[정치권리박탈의 부가와 독립적용]**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한 범죄자에 대하여는 정치권리박탈을 부가하여야 한다. 고의 살인, 강간, 방화, 폭파, 독극물투여, 강도 등 사회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자에 대하여는 정치권리 박탈을 부가할 수 있다.

독립적으로 정치권리박탈을 적용할 경우에는 본 법 분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57조[사형, 무기징역에 처한 범죄자에 대한 정치권리박탈의 적용]** 사형 및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하여는 정치권리를 영구히 박탈하여야 한다.

사형집행유예를 유기징역으로 감형하거나 또는 무기징역을 유기징역으로 감형한 때에는 부가된 정치권리박탈 기간을 3년 이상 10년 이하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8조[정치권리박탈의 형기기간, 효력과 집행]** 부가된 정치권리박탈의 형기는 징역, 구역의 집행완료일 또는 가석방일로부터 기산한다. 정치권리박탈은 주형의 집행기간 중에도 당연히 유효하다. 정치권리박탈을 당한 범죄자에 대하여는 집행기간 중에 법률, 행정법규 및 공무원 공안부서의 감독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에 복종하여야 한다. 본 법 제54조에 규정된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제8절 재산몰수

**제59조[재산몰수의 범위]** 재산몰수라 함은 범죄자 개인 소유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의 전부를 몰수하는 경우, 범죄자 자신 및 그가 부양하는 가족에게 필수적인 생활비용은 남겨두어야 한다. 재산몰수를 선고하는 때에 범죄자의 가족이 소유하거나 또는 소유해야 하는 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

**제60조[몰수한 재산으로의 채무상환]** 재산몰수 이전에 범죄자의 정당한 채무에 대하여 몰수한 재산으로 상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채권자의 청구를 거쳐 이를 상환해야 한다.

## 제 2 편 분 칙

### 제1장 국가안전위해죄

**제102조[국가반역죄]** 외국과 결탁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영토 완정 및 안전에 위해를 가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경 밖의 기구, 조직, 개인과 결탁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103조[국가분열죄]** 국가분열과 국가통일파괴 활동을 조직, 획책, 실시하였을 경우, 수괴 또는 범행이 중대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적극 가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기타 가담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권리 박탈에 처한다.

국가분열과 국가통일파괴를 선동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권리의 박탈에 처한다. 수괴 및 범행이 중대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04조[무장 반란, 소동죄]** 무장반란 또는 무장폭동을 조직, 획책, 실시한 경우, 수괴 또는 범행이 중대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적극 가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기타 가담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정치권리 박탈에 처한다.

국가기관 공무원, 무장부대원, 인민경찰, 민병 등을 책동, 협박, 유인, 매수하여 무장반란 또는 무장폭동을 일으킨 경우,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겁게 처벌한다.

**제105조[국가정권전복죄]** 국가정권,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는 활동을 조직, 획책, 실시한 경우, 수괴 또는 범행이 중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적극 가담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기타 가담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정치권리의 박탈에 처한다.

날조, 비방 또는 기타 방법으로 국가정권 전복 및 사회주의제도 전복을 선동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정치권리의 박탈에 처한다.

수괴 및 범행이 중대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06조[국외결탁처벌규정]** 국경 밖의 기구, 조직, 개인과 결탁하여 본 장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규정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된 죄의 규정에 의하여 무겁게 처벌한다.

**제107조[국가안전침해범죄활동 부조죄]** 국경 내외의 기구, 조직, 개인이 자금을 제공하여 본 장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규정의 죄를 범하게 한 경우, 그 직접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정치권리의 박탈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08조[반역투항죄]** 적에 투항하여 배반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중한 자 또는 무장부대원, 인민경찰, 민병 등을 거느리고 적에 투항하여 배반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109조[반역도주죄]** 국가기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직무를 함부로 이탈하거나 배반하여 국외로 탈주하거나 국외에서 배반 도망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정치권리 박탈에 처한다. 사안이 중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비밀을 다루는 국가공무원이 배반하여 국외로 탈주하거나 국외에서 배반 도망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하게 처벌한다.

**제110조[간첩죄]** 다음에 열거한 간첩행위의 하나에 해당하여 국가안전을 위해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안이 비교

적 가벼운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간첩조직에 가담하거나 간첩조직과 그 대리인으로부터 임무를 받은 경우
- (2) 적에게 폭격 목표를 알려 준 경우

**제111조[경외를 위한 국가 비밀, 정보 절취, 정탐, 수매, 비법제공 죄]** 국경 밖의 기구, 조직, 인원을 위해 국가비밀 또는 정보를 절취, 정탐, 매수, 불법제공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관제 또는 정치권리 박탈에 처한다.

**제112조[이적죄]** 전시에 적에게 무기장비, 군용물자 등을 제공하여 이적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13조[국가안전위해죄 사형적용 및 재산몰수규정]** 본 장에서 상술한 국가 안전을 위해하는 범행 중 제103조 제2항, 제105조, 제107조, 제109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와 인민에 대한 위해가 특별히 엄중하고, 사안이 특별히 나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  
본 장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재산몰수를 병과할 수 있다

### 제3절 국(변)경관리방해죄

**제318조[타인불법월경(변경)조직죄]** 타인을 조직하여 월경(변경)을 불법 월경 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다음에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 (1) 타인을 조직하여 월경(변경)을 불법 월경하게 한 집단의 주모자
- (2) 여러 차례 타인을 조직하여 월경(변경)을 불법 월경하였거나 또는 타인을 조직하여 월경(변경)을 불법 월경하게 한 인원수가 많은 경우
- (3) 피조직인의 중상, 사망을 초래한 경우
- (4) 피조직인의 인신의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한 경우
- (5) 폭력, 협박의 방법으로 검사에 항거한 경우
- (6) 위법소득 액수가 막대한 경우
- (7) 기타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

전 항의 죄를 범하고, 피조직자를 살인, 상해, 강간, 유괴하여 매매하는 등의 범죄행위가 있거나 검사원에 대하여 살인, 상해 등 범죄행위를 한 경우, 수죄의 병합처벌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319조[출국증명서사취죄]** 허위기만의 노무수출, 무역거래 또는 기타 명목으로 여권, 비자 등 출국증명서류를 편취하여 타인이 몰래 월경(변경)을 넘는데 사용하도록 조직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단체(單位)가 전 항의 죄를 범한 경우, 단체에 대해서는 벌금을 선고하고, 또한 그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기타의 직접 책임자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320조[위조, 변조 출입국증명서 제공죄][출입국증명서판매죄]** 타인을 위하여, 위조, 변조한 여권, 비자 등 출입국증명서류를 제공하거나 또는 여권, 비자 등 출입국증명서류를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제321조[타인운송불법일경죄]** 타인을 운송하여 국경(변경)을 불법 월경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다음에 열거한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 (1) 여러 차래 운송행위를 하거나 운송인원이 많은 경우
- (2) 사용한 선박, 차량 등 교통수단이 필요한 안전조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기에 충분한 경우
- (3) 위법소득 액수가 매우 큰 경우
- (4) 기타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

타인을 운송하여 몰래 국(변)경을 넘는 중에 피운송인의 중상, 사망을 초래하거나 폭력, 협박의 방법으로 검사에 항거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전 2항의 죄를 범하고, 피운송인에 대하여 살인, 상해, 강간, 유괴하여 매매하는 등의 범죄행위가 있거나 또는 검사원에 대하여 살인, 상해 등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수죄의 병합처벌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322조[불법월경죄]** 국(변)경관리법규를 위반하여 국(변)경을 몰래 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1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제323조[경계비·경계매말 파괴죄, 영구적측량표지파괴죄]** 국가변경의 경계표, 경계매말 또는 영구적인 측량표지를 고의로 파괴한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 5-1. 中華人民共和國 刑法

1979年7月1日第五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二次會議通過，1997年3月14日第八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五次會議修訂。已先后被《中華人民共和國刑法修正案》(發布日期：1999年12月25日 實施日期：1999年12月25日)、《中華人民共和國刑法修正案(二)》(發布日期：2001年8月31日 實施日期：2001年8月31日)、《中華人民共和國刑法修正案(三)》(發布日期：2001年12月29日 實施日期：2001年12月29日)、《中華人民共和國刑法修正案(四)》(發布日期：2002年12月28日 實施日期：2002年12月28日)、《中華人民共和國刑法修正案(五)》(發布日期：2005年2月28日 實施日期：2005年2月28日)、《中華人民共和國刑法修正案(六)》(發布日期：2006年6月29日 實施日期：2006年6月29日)、《中華人民共和國刑法修正案(七)》(發布日期：2009年2月28日 實施日期：2009年2月28日)、《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修改部分法律的決定》(發布日期：2009年8月27日 實施日期：2009年8月27日)、《中華人民共和國刑法修正案(八)》(發布日期：2011年2月25日 實施日期：2011年5月1日)修正或修改

### 第一編 總則

#### 第一章 刑法的任務、基本原則和適用範圍

**第一條【立法目的】** 爲了懲罰犯罪，保護人民，根據憲法，結合我國同犯罪作鬥爭的具體經驗及實際情況，制定本法。

**第二條【任務】** 中華人民共和國刑法的任務，是用刑罰同一切犯罪行爲作鬥爭，以保衛國家安全，保衛人民民主專政的政權和社會主義制度，保護國有財產和勞動群眾集體所有的財產，保護公民私人所有的財產，保護公民的人身權利、民主權利和其他權利，維護社會秩序、經濟秩序，保障社會主義建設事業的順利進行。

**第三條【罪刑法定】** 法律明文規定爲犯罪行爲的，依照法律定罪處刑；

法律沒有明文規定為犯罪行爲的，不得定罪處刑。

**第四條【法律面前人人平等】** 對任何人犯罪，在适用法律上一律平等。不允許任何人有超越法律的特權。

**第五條【罪責刑相適應】** 刑罰的輕重，應當與犯罪分子所犯罪行和承擔的刑事責任相適應。

**第六條【屬地管轄權】** 凡在中華人民共和國領域內犯罪的，除法律有特別規定的以外，都適用本法。

凡在中華人民共和國船舶或者航空器內犯罪的，也適用本法。

犯罪的行爲或者結果有一項發生在中華人民共和國領域內的，就認為是在中華人民共和國領域內犯罪。

**第七條【屬人管轄權】** 中華人民共和國公民在中華人民共和國領域外犯本法規定之罪的，適用本法，但是按本法規定的最高刑為三年以下有期徒刑的，可以不予追究。

中華人民共和國國家工作人員和軍人在中華人民共和國領域外犯本法規定之罪的，適用本法。

**第八條【保護管轄權】** 外國人在中華人民共和國領域外對中華人民共和國國家或者公民犯罪，而按本法規定的最低刑為三年以上有期徒刑的，可以適用本法，但是按照犯罪地的法律不受處罰的除外。

**第九條【普遍管轄權】** 對於中華人民共和國締結或者參加的國際條約所規定的罪行，中華人民共和國在所承擔條約義務的範圍內行使刑事管轄權

的，适用本法。

**第十條【對外國刑事判決的消极承認】** 凡在中華人民共和國領域外犯罪，依照本法應當負刑事責任的，雖然經過外國審判，仍然可以依照本法追究，但是在外國已經受過刑罰處罰的，可以免除或者減輕處罰。

**第十一條【外交代表刑事管轄豁免】** 享有外交特權和豁免權的外國人的刑事責任，通過外交途徑解決。

**第十二條【溯及力】** 中華人民共和國成立以後本法施行以前的行爲，如果當時的法律不認爲是犯罪的，適用當時的法律；如果當時的法律認爲是犯罪的，依照本法總則第四章第八節的規定應當追訴的，按照當時的法律追究刑事責任，但是如果本法不認爲是犯罪或者處刑較輕的，適用本法。

本法施行以前，依照當時的法律已經作出的生效判決，繼續有效。

### 第三章 刑罰

#### 第一節 刑罰的種類

**第三十二條【主刑和附加刑】** 刑罰分爲主刑和附加刑。

**第三十三條【主刑種類】** 主刑的種類如下：

- (一) 管制；
- (二) 拘役；
- (三) 有期徒刑；
- (四) 無期徒刑；



(五) 死刑。

**第三十四條【附加刑種類】** 附加刑的種類如下：

- (一) 罰金；
- (二) 剝奪政治權利；
- (三) 沒收財產。

附加刑也可以獨立適用。

**第三十五條【驅逐出境】** 對於犯罪的外國人，可以獨立適用或者附加適用驅逐出境。

**第三十六條【賠償經濟損失与民事优先原則】** 由于犯罪行爲而使被害人遭受經濟損失的，對犯罪分子除依法給予刑事處罰外，并應根据情况判處賠償經濟損失。

承担民事賠償責任的犯罪分子，同時被判處罰金，其財產不足以全部支付的，或者被判處沒收財產的，應當先承担對被害人的民事賠償責任。

**第三十七條【非刑罰性處置措施】** 對於犯罪情節輕微不需要判處刑罰的，可以免予刑事處罰，但是可以根据案件的不同情况，予以訓誡或者責令具結悔過、賠禮道歉、賠償損失，或者由主管部門予以行政處罰或者行政處分。

## 第二節 管制

**第三十八條【管制的期限与執行機關】** 管制的期限，爲三個月以上二年以下。

判處管制，可以根據犯罪情況，同時禁止犯罪分子在執行期間從事特定活動，進入特定區域、場所，接觸特定的人。

對判處管制的犯罪分子，依法實行社區矯正。

違反第二款規定的禁止令的，由公安機關依照《中華人民共和國治安管理處罰法》的規定處罰。

**第三十九條【被管制犯罪的義務與權利】**被判處管制的犯罪分子，在執行期間，應當遵守下列規定：

（一）遵守法律、行政法規，服從監督；

（二）未經執行機關批准，不得行使言論、出版、集會、結社、游行、示威自由的權利；

（三）按照執行機關規定報告自己的活動情況；

（四）遵守執行機關關於會客的規定；

（五）離開所居住的市、縣或者遷居，應當報經執行機關批准。

對於被判處管制的犯罪分子，在勞動中應當同工同酬。

**第四十條【管制期滿解除】**被判處管制的犯罪分子，管制期滿，執行機關應即向本人和其所在單位或者居住地的群眾宣布解除管制。

**第四十一條【管制刑期的計算和折抵】**管制的刑期，從判決執行之日起計算；判決執行以前先行羈押的，羈押一日折抵刑期二日。

### 第三節 拘役

**第四十二條【拘役的期限】**拘役的期限，為一個月以上六個月以下。

**第四十三條【拘役的執行】** 被判處拘役的犯罪分子，由公安機關就近執行。

在執行期間，被判處拘役的犯罪分子每月可以回家一天至兩天；參加勞動的，可以酌量發給報酬。

**第四十四條【拘役刑期的計算和折抵】** 拘役的刑期，從判決執行之日起計算；判決執行以前先行羈押的，羈押一日折抵刑期一日。

#### 第四節 有期徒刑、無期徒刑

**第四十五條【有期徒刑的期限】** 有期徒刑的期限，除本法第五十條、第六十九條規定外，為六個月以上十五年以下。

**第四十六條【有期徒刑與無期徒刑的執行】** 被判處有期徒刑、無期徒刑的犯罪分子，在監獄或者其他執行場所執行；凡有勞動能力的，都應當參加勞動，接受教育和改造。

**第四十七條【有期徒刑刑期的計算與折抵】** 有期徒刑的刑期，從判決執行之日起計算；判決執行以前先行羈押的，羈押一日折抵刑期一日。

#### 第五節 死刑

**第四十八條【死刑、死緩的適用對象及核准程序】** 死刑只適用於罪行極其嚴重的犯罪分子。對於應當判處死刑的犯罪分子，如果不是必須立即執行的，可以判處死刑同時宣告緩期二年執行。

死刑除依法由最高人民法院判決的以外，都應當報請最高人民法院核准。死刑緩期執行的，可以由高級人民法院判決或者核准。

**第四十九條【死刑適用對象的限制】** 犯罪的時候不滿十八周歲的人和審判的時候懷孕的婦女，不適用死刑。

審判的時候已滿七十五周歲的人，不適用死刑，但以特別殘忍手段致人死亡的除外。

**第五十條【死緩變更】** 判處死刑緩期執行的，在死刑緩期執行期間，如果沒有故意犯罪，二年期滿以後，減為無期徒刑；如果確有重大立功表現，二年期滿以後，減為二十五年有期徒刑；如果故意犯罪，查證屬實的，由最高人民法院核准，執行死刑。

對被判處死刑緩期執行的累犯以及因故意殺人、強姦、搶劫、綁架、放火、爆炸、投放危險物質或者有組織的暴力性犯罪被判處死刑緩期執行的犯罪分子，人民法院根據犯罪情節等情況可以同時決定對其限制減刑。

**第五十一條【死緩期間及減為有期徒刑的刑期計算】** 死刑緩期執行的期間，從判決確定之日起計算。死刑緩期執行減為有期徒刑的刑期，從死刑緩期執行期滿之日起計算。

## 第六節 罰金

**第五十二條【罰金數額的裁量】** 判處罰金，應當根據犯罪情節決定罰金數額。

**第五十三條【罰金的繳納】** 罰金在判決指定的期限內一次或者分期繳納。期滿不繳納的，強制繳納。對於不能全部繳納罰金的，人民法院在任何時候發現被執行人有可以執行的財產，應當隨時追繳。如果由於遭遇不能抗拒的災禍繳納確實有困難的，可以酌情減少或者免除。

## 第七節 剝奪政治權利

**第五十四條【剝奪政治權利的含義】** 剝奪政治權利是剝奪下列權利：

- (一) 選舉權和被選舉權；
- (二) 言論、出版、集會、結社、游行、示威自由的權利；
- (三) 擔任國家機關職務的權利；
- (四) 擔任國有公司、企業、事業單位和人民團體領導職務的權利。

**第五十五條【剝奪政治權利的期限】** 剝奪政治權利的期限，除本法第五十七條規定外，為一年以上五年以下。

判處管制附加剝奪政治權利的，剝奪政治權利的期限與管制的期限相等，同時執行。

**第五十六條【剝奪政治權利的附加、獨立適用】** 對於危害國家安全的犯罪分子應當附加剝奪政治權利；對於故意殺人、強姦、放火、爆炸、投毒、搶劫等嚴重破壞社會秩序的犯罪分子，可以附加剝奪政治權利。

獨立適用剝奪政治權利的，依照本法分則的規定。

**第五十七條【對死刑、無期徒刑罪犯剝奪政治權利的適應】** 對於被判處死刑、無期徒刑的犯罪分子，應當剝奪政治權利終身。

在死刑緩期執行減為有期徒刑或者無期徒刑減為有期徒刑的時候，應當把附加剝奪政治權利的期限改為三年以上十年以下。

**第五十八條【剝奪政治權利的刑期計算、效力與執行】** 附加剝奪政治權利的刑期，從徒刑、拘役執行完畢之日或者從假釋之日起計算；剝奪政治權利的效力當然施用于主刑執行期間。

被剝奪政治權利的犯罪分子，在執行期間，應當遵守法律、行政法規和國務院公安部門有關監督管理的規定，服從監督；不得行使本法第五十四條規定的各項權利。

## 第八節 沒收財產

**第五十九條【沒收財產的範圍】**沒收財產是沒收犯罪分子個人所有財產的一部或者全部。沒收全部財產的，應當對犯罪分子個人及其扶養的家屬保留必需的生活費用。

在判處沒收財產的時候，不得沒收屬於犯罪分子家屬所有或者應有的財產。

**第六十條【以沒收的財產償還債務】**沒收財產以前犯罪分子所負的正当債務，需要以沒收的財產償還的，經債權人請求，應當償還。

## 第二編 分則

### 第一章 危害國家安全罪

**第一百零二條【背叛國家罪】**勾結外國，危害中華人民共和國的主權、領土完整和安全的，處無期徒刑或者十年以上有期徒刑。

與境外機構、組織、個人相勾結，犯前款罪的，依照前款的規定處罰。

**第一百零三條【分裂國家罪、煽動分裂國家罪】**組織、策劃、實施分裂國家、破壞國家統一的，對首要分子或者罪行重大的，處無期徒刑或者十年以上有期徒刑；對積極參加的，處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對其

他參加的，處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者剝奪政治權利。

煽動分裂國家、破壞國家統一的，處五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者剝奪政治權利；首要分子或者罪行重大的，處五年以上有期徒刑。

**第一百零四條【武裝叛亂、暴亂罪】** 組織、策劃、實施武裝叛亂或者武裝暴亂的，對首要分子或者罪行重大的，處無期徒刑或者十年以上有期徒刑；對積極參加的，處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對其他參加的，處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者剝奪政治權利。

策動、脅迫、勾引、收買國家機關工作人員、武裝部隊人員、人民警察、民兵進行武裝叛亂或者武裝暴亂的，依照前款的規定從重處罰。

**第一百零五條【顛覆國家政權罪、煽動顛覆國家政權罪】** 組織、策劃、實施顛覆國家政權、推翻社會主義制度的，對首要分子或者罪行重大的，處無期徒刑或者十年以上有期徒刑；對積極參加的，處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對其他參加的，處三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者剝奪政治權利。

以造謠、誹謗或者其他方式煽動顛覆國家政權、推翻社會主義制度的，處五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者剝奪政治權利；首要分子或者罪行重大的，處五年以上有期徒刑。

**第一百零六條【與境外勾結的處罰規定】** 與境外機構、組織、個人相勾結，實施本章第一百零三條、第一百零四條、第一百零五條規定之罪的，依照各該條的規定從重處罰。

**第一百零七條【資助危害國家安全犯罪活動罪】** 境內外機構、組織或者個人資助實施本章第一百零二條、第一百零三條、第一百零四條、第一

百零五條規定之罪的，對直接責任人員，處五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者剝奪政治權利；情節嚴重的，處五年以上有期徒刑。

**第一百零八條【投敵叛變罪】** 投敵叛變的，處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情節嚴重或者帶領武裝部隊人員、人民警察、民兵投敵叛變的，處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無期徒刑。

**第一百零九條【叛逃罪】** 國家機關工作人員在履行公務期間，擅離崗位，叛逃境外或者在境外叛逃的，處五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者剝奪政治權利；情節嚴重的，處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掌握國家秘密的國家工作人員叛逃境外或者在境外叛逃的，依照前款的規定從重處罰。

**第一百一十條【間諜罪】** 有下列間諜行為之一，危害國家安全的，處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無期徒刑；情節較輕的，處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

- (一) 參加間諜組織或者接受間諜組織及其代理人的任務的；
- (二) 為敵人指示轟擊目標的。

**第一百一十一條【為境外窃取、刺探、收買、非法提供國家秘密、情報罪】** 為境外的機構、組織、人員窃取、刺探、收買、非法提供國家秘密或者情報的，處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情節特別嚴重的，處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無期徒刑；情節較輕的，處五年以下有期徒刑、拘役、管制或者剝奪政治權利。

**第一百一十二條【資敵罪】** 戰時供給敵人武器裝備、軍用物資資敵的，處十年以上有期徒刑或者無期徒刑；情節較輕的，處三年以上十年以下有



期徒刑。

**第一百一十三條【危害國家安全罪適用死刑、沒收財產的規定】** 本章上述危害國家安全罪行中，除第一百零三條第二款、第一百零五條、第一百零七條、第一百零九條外，對國家和人民危害特別嚴重、情節特別惡劣的，可以判處死刑。

犯本章之罪的，可以并處沒收財產。

### 第三節 妨害國（邊）境管理罪

**第三百一十八條【組織他人偷越國（邊）境罪】** 組織他人偷越國（邊）境的，處二年以上七年以下有期徒刑，并處罰金；有下列情形之一的，處七年以上有期徒刑或者無期徒刑，并處罰金或者沒收財產：

（一）組織他人偷越國（邊）境集團的首要分子；

（二）多次組織他人偷越國（邊）境或者組織他人偷越國（邊）境人數眾多的；

（三）造成被組織人重傷、死亡的；

（四）剝奪或者限制被組織人人身自由的；

（五）以暴力、威脅方法抗拒檢查的；

（六）違法所得數額巨大的；

（七）有其他特別嚴重情節的。

犯前款罪，對被組織人有殺害、傷害、強姦、拐賣等犯罪行為，或者對檢查人員有殺害、傷害等犯罪行為的，依照數罪并罰的規定處罰。

**第三百一十九條【騙取出境證件罪】** 以勞務輸出、經貿往來或者其他名義，弄虛作假，騙取護照、簽證等出境證件，為組織他人偷越國（邊）境

使用的，處三年以下有期徒刑，并處罰金；情節嚴重的，處三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處罰金。

單位犯前款罪的，對單位判處罰金，并對其直接負責的主管人員和其他直接責任人員，依照前款的規定處罰。

### **第三百二十條【提供偽造、變造的出入境證件罪；出售出入境證件罪】**

為他人提供偽造、變造的護照、簽證等出入境證件，或者出售護照、簽證等出入境證件的，處五年以下有期徒刑，并處罰金；情節嚴重的，處五年以上有期徒刑，并處罰金。

### **第三百二十一條【運送他人偷越國（邊）境罪】**

運送他人偷越國（邊）境的，處五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處罰金；有下列情形之一的，處五年以上十年以下有期徒刑，并處罰金：

（一）多次實施運送行為或者運送人數眾多的；

（二）所使用的船只、車輛等交通工具不具備必要的安全條件，足以造成嚴重后果的；

（三）違法所得數額巨大的；

（四）有其他特別嚴重情節的。

在運送他人偷越國（邊）境中造成被運送人重傷、死亡，或者以暴力、威脅方法抗拒檢查的，處七年以上有期徒刑，并處罰金。

犯前兩款罪，對被運送人有殺害、傷害、強姦、拐賣等犯罪行為，或者對檢查人員有殺害、傷害等犯罪行為的，依照數罪并罰的規定處罰。

### **第三百二十二條【偷越國（邊）境罪】**

違反國（邊）境管理法規，偷越國（邊）境，情節嚴重的，處一年以下有期徒刑、拘役或者管制，并處罰金。

第三百二十三條【破坏界碑、界樁罪；破坏永久性測量標志罪】故意破坏國家邊境的界碑、界樁或者永久性測量標志的，處三年以下有期徒刑或者拘役。

## 6.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1985년 11월 22일 제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 통과)  
(1985년 11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31호 공포)  
(1986년 2월 1일부 시행)

###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권과 안전 및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국제교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특별히 본 법을 제정한다.

외국인의 중국 출입국 및 중국에서의 거주·여행에 본 법이 적용된다.

**제2조** 외국인의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및 중국내 거주시 반드시 해당 중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조** 외국인의 중국 출입국 및 통과는 반드시 외국인에게 지정한 항구(공항)로 통행해야 하며 변방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외국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중국역내 출입국 및 통과는 반드시 외국인에게 지정된 항구(공항)로 통행해야 하며 변방검사기관의 검사와 감호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중국정부는 중국역내의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외국인의 인신자유는 불가침이며 공안기관 혹은 국가안전기관은 인민검찰원의 비준·결정 혹은 인민법원의 결정 없이 체포·연행 등의 집행을 할 수 없다.

**제5조** 외국인은 중국역내에서 반드시 중국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안전을 위협해서는 안되며 사회공공이익을 훼손하고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 제2장 입 국

**제6조** 외국인은 입국시 반드시 중국외교부대표기관, 영사기관 혹은 외교부가 권리를 부여한 외국주재기관에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특수 상황에서 외국인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중국정부해당기관이 지정한 항구(공항)의 비자기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정부와 비자관련 협의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입국할 경우 협의서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국민의 출입국에 대해 별도규정이 있는 국가에 한해서 중국정부의 해당기관도 상황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국제선 항공에 탑승하여 중국을 경유하면서 공항에서 24시간 이내 체류할 경우 공항을 벗어나지 않는 외국인은 비자가 면제되며, 공항을 벗어날 경우에는 반드시 변방검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외국인의 비자 신청시 반드시 유효여권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고용되었거나 구직을 위해 중국에 입국하여 근무하는 외국인이 비자 신청시 반드시 고용증명서 혹은 직업응모 증명서류를 소지해야 한다.

**제9조** 중국에 거주하기 위한 외국인의 비자 신청시 반드시 거주 신분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거주신분 확인서는 신청인이 거주지의 공안기관

에서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제10조** 중국정부해당기관은 외국인의 입국신청의 사유에 맞는 비자를 발급한다.

**제11조** 국제선 항공기 혹은 선박이 중국항구나 공항에 도착시 기장·선장 혹은 대리인은 반드시 변방검사기관에 여객명단을 제출해야 하며, 외국적 비행기·선박의 경우 승무원명단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입국 후 중국의 국가안전 및 사회질서를 위해하는 대상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한다.

### 제3장 居留(거류)

**제13조** 외국인의 중국거주는 반드시 중국정부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 혹은 거류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분증 혹은 거류증의 유효기간은 입국사유에 따라 확정된다.

중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규정된 시간 내에 현지 공안기관에 증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중국법률에 근거하여 중국투자 혹은 중국기업·사업기관과 경제·과학기술·문화합작을 하며 또한 기타 중국에서의 장기거주를 필요로 하는 외국인은 중국정부해당기관의 비준을 받고 장기거류 혹은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제15조** 정치적 원인으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은 중국정부해당기관의 비

준을 받고 중국에서 거주할 수 있다.

**제16조** 중국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하여 중국정부해당기관은 중국체류기간을 단축하거나 중국거주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외국인이 중국역내에서 임시 숙박할 경우 규정에 따라 숙박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제18조** 거류증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거류주소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규정에 따라 이전수속을 해야 한다.

**제19조** 거류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과 외국인 유학생은 중국 정부해당기관의 허가 없이 중국에서 취업할 수 없다.

#### **제4장 여행**

**제20조** 외국인은 유효비자와 거류증을 가지고 중국정부가 규정한 외국인에게 개방된 지역에서 여행할 수 있다.

**제21조**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는 지역에서 여행할 경우 반드시 현지공안기관에 여행증을 신청해야 한다.

#### **제5장 출국**

**제22조** 외국인은 본인의 유효여권 혹은 기타 유효증명으로 출국한다.

**제23조** 아래 열거한 조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출국을 금지한다.

- (1)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 혹은 인민법원에서 범 죄용의자로 인정한 경우;
- (2) 인민법원의 통지를 받고 민사사건에 관계되어 귀국할 수 없는 경우;
- (3) 기타 중국법률위반에 대한 판결미결로 해당기관이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24조** 이하 조항에 부합되는 외국인에 대해서 변방검사기관은 출국금지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 (1) 무효된 출국증명을 소유한 자;
- (2) 타인의 출국증명을 소유한 자;
- (3) 위조 또는 개조한 출국증명을 소유한 자.

## 제6장 관리기관

**제25조** 외국에서 외국인의 중국 입국 및 통과신청을 접수하는 중국정부기관은 중국의 외교대표기관·영사기관 또는 외교부가 권리를 부여한 기타 외국 주재중국기관이다.

외국인의 중국입국·통과·거류·여행 신청을 접수하는 중국정부기관은 공안부 또는 공안부가 권리를 부여한 지방공안기관과 외교부 또는 외교부가 권리를 부여한 지방외사부문이다.

**제26조** 외국인의 입국·통과·거류·여행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은 비자·증명의 발급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발급한 비자·증명에 대해서도 몰수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공안부와 외교부는 필요시 권한을 부여한 해당기관의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 현급이상 공안기관은 불법입국 및 불법거류의 외국인에 대해서 구속 심사·거주, 감시 및 강제추방을 실행할 수 있다.

**제28조** 현급이상 공안기관의 외사경찰은 임무수행시 외국인의 여권 및 기타 증명을 검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외국인은 응해야 하며 해당 조직과 개인은 협조할 책임이 있다.

## 제7장 처 벌

**제29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 입국·출국한 자, 중국 경내에서 불법거류 및 체류한 자, 여행증 없이 외국인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여행한 자, 출입국 증명을 위조·개조·양도한 자에 대해서 현급 이상 공안기관은 경고·벌금 또는 10일 이하의 구속 처벌을 할 수 있으며, 상황이 중대하고 범죄에 속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공안기관의 벌금 및 구속처벌을 당한 외국인이 처분에 불복할 경우,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급 공안기관에 소송할 수 있으며 상급공안관이 최종판결을 내린다. 또는 직접 당지(当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 본 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한 상황이 중대한 경우 공안부는 일정기간, 출국 혹은 강제추방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8장 부 칙

**제31조** 본 법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국적법》에 따라 중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제32조** 중국국경과 인접한 국가의 외국인과 국경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임시로 중국국경을 출입국할 때, 양국 간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에 따르며, 협의가 없을 경우 중국정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3조**公安부와 외교부는 본 법에 의거하여 실행세칙을 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시행한다.

**제34조** 중국주재 외국 외교부 대표기관, 영사기관 인원 및 특권과 사면권을 가지고 있는 기타 외국인의 입국 후 관리는 국무원 및 기타 해당기관의 해당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 본 법은 198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1. 中華人民共和國 外國人入境出境管理法

(一九八五年十一月二十二日第六屆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第十三次會議通過  
一九八五年十一月二十二日中華人民共和國主席令  
第三十一號公布一九八六年二月一日起施行)

### 第一章 總 則

**第一條** 爲維護中華人民共和國的主權、安全和社會秩序，有利于發展國際交往，特制定本法。外國人入、出、通過中華人民共和國國境和在中國居留、旅行、適用本法。

**第二條** 外國人入境、過境和在中國境內居留，必須經中國政府主管機關許可。

**第三條** 外國人入境、出境、過境，必須從對外國人開放的或者指定的口岸 通行，接受邊防檢查機關的檢查。外國的交通工具入境、出境、過境，必須從對外國人開放的或者指定的口岸 通行，接受邊防檢查機關的檢查和監護。

**第四條** 中國政府保護在中國境內的外國人的合法權利和利益。外國人的人身自由不受侵犯，非經人民檢察院批准或者決定或者人民法院決定，并由公安機關或者國家安全機關執行，不受逮捕。

**第五條** 外國人在中國境內，必須遵守中國法律，不得危害中國國家安全、損害社會公共利益、破壞社會公共秩序。

## 第二章 入境

**第六條** 外國人入境，應當向中國的外交代表機關、領事機關或者外交部授權的其他駐外機關申請辦理簽證。在特定情況下，依照國務院規定，外國人也可以向中國政府主管機關指定口岸的簽證機關申請辦理簽證。同中國政府訂有簽證協議的國家的人員入境，按照協議執行。外國對中國公民入境、過境有專門規定的，中國政府主管機關可以根據情況採取相應措施。持聯程客票搭乘國際航班直接過境，在中國停留不超過 24 小時不出機場的外國人，免辦簽證。要求臨時離開機場時，需經邊防檢查機關批准。

**第七條** 外國人申請各項簽證，應當提供有效護照，必要時提供有關證明。

**第八條** 應聘或者受雇來中國工作的外國人，申請簽證時，應當持有應聘或者受雇證明。

**第九條** 來中國定居的外國人，申請簽證時，應當持有定居身份確認表。定居身份確認表，由申請人向申請定居地的公安機關申請領取。

**第十條** 中國政府主管機關根據外國人申請入境的事由，發給相應的簽證。

**第十一條** 從事國際航行的航空器或者船舶抵達中國口岸時，機長、船長或者代理人必須向邊防檢查機關提交旅客名單；外國的飛機、船舶還必須提供機組、船員名單。

**第十二條** 被認為入境后可能危害中國的國家安全、社會秩序的外國人，不准入境。

### 第三章 居留

**第十三條** 外國人在中國居留，必須持有中國政府主管機關簽發的身份證件或者居留證件。身份證件或者居留證件的有效期限，根據入境的事由確定。在中國居留的外國人，應當在規定的時間內到當地公安機關繳驗證件。

**第十四條** 依照中國法律在中國投資或者同中國的企業、事業單位進行經濟、科學技術、文化合作以及其他需要在中國長期居留的外國人，經中國政府主管機關批准，可以獲得長期居留或者永久居留資格。

**第十五條** 對因為政治原因要求避難的外國人，經中國政府主管機關批准，准許在中國居留。

**第十六條** 對不遵守中國法律的外國人，中國政府主管機關可以縮短其在中國停留的期限或者取消其在中國居留的資格。

**第十七條** 外國人在中國境內臨時住宿，應當依照規定，辦理住宿登記。

**第十八條** 持居留證件的外國人在中國變更居留地點，必須依照規定辦理遷移手續。

**第十九條** 未取得居留證件的外國人和來中國留學的外國人，未經中國政府主管機關允許，不得在中國就業。

## 第四章 旅行

**第二十條** 外國人持有效的簽證或者居留證件，可以前往中國政府規定的對外國人開放的地區旅行。

**第二十一條** 外國人前往不對外國人開放的地區旅行，必須向當地公安機關申請旅行證件。

## 第五章 出境

**第二十二條** 外國人出境，凭本人有效護照或者其他有效證件。

**第二十三條** 有下列情形之一的外國人，不准出境：

- (一) 刑事案件的被告人和公安機關或者人民檢察院或者人民法院認定的犯罪嫌疑人；
- (二) 人民法院通知有未了結民事案件不能出境的；
- (三) 有其他違反中國法律的行為尚未處理，經有關主管機關認定需要追究的。

**第二十四條** 有下列情形之一的外國人，邊防檢查機關有權阻止出境，并依法處理：

- (一) 持用無效出境證件的；
- (二) 持用他人出境證件的；
- (三) 持用偽造或者涂改的出境證件的。

## 第六章 管理機關

**第二十五條** 中國政府在國外受理外國人入境、過境申請的機關，是中國的外交代表機關領事機關和外交部授權的其他駐外機關。中國政府在國內受理外國人入境、過境、居留、旅行申請的機關，是公安部、公安部授權的地方公安機關和外交部、外交部授權的地方外事部門。

**第二十六條** 受理外國人入境、過境、居留、旅行申請的機關有權拒發簽證、證件；對已經發出的簽證、證件，有權吊銷或者宣布作廢。公安部和外交部在必要時，可以改變各自授權的機關所作出的決定。

**第二十七條** 對非法人境、非法居留的外國人，縣級以上公安機關可以拘留審查、監視居住或者遣送出境。

**第二十八條** 縣級以上公安機關外事民警在執行任務時，有權查驗外國人的護照和其他證件。外事民警查驗時，應當出示自己的工作證件，有關組織或者個人有協助的責任。

## 第七章 處罰

**第二十九條** 對違反本法規定，非法人境、出境的，在中國境內非法居留或者停留的，未持有效旅行證件前往不對外國人開放的地區旅行的，偽造、涂改、冒用、轉讓入境、出境證件的，縣級以上公安機關可以處以警告、罰款或者10日以下的拘留處罰；情節嚴重，構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責任。受公安機關罰款或者拘留處罰的外國人，對處罰不服的，在接到通知之日起15日內，可以向上一級公安機關提出申訴，由上一級公安

機關作出最后的裁決，也可以直接向当地人民法院提起訴訟。

**第三十條** 有本法第二十九條所列行爲情節嚴重的，公安部可以處以限期出境或者驅逐出境處罰。

## 第八章 附 則

**第三十一條** 本法所稱的外國人是指依照《中華人民共和國國籍律》不具有中國國籍的人。

**第三十二條** 同中國毗鄰國家的外國人，居住在兩國邊境接壤地區的，臨時入中國國境、出中國國境，有兩國之間協議的按照協議執行，沒有協議的按照中國政府的規定執行。

**第三十三條** 公安部和外交部根据本法制定實施細則，報國務院批准施行。

**第三十四條** 外國駐中華人民共和國外交代表機關、領事機關成員以及享有特權和豁免的其他外國人入境后的管理，按國務院及其主管機關的有關規定 辦理。

**第三十五條** 本法自1986年2月1日起施行。



## 7. 중화인민공화국 출경입경관리법

(2012년 6월 30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 통과)

### 제1장 총 칙

**제1조** 출입국관리를 규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및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대외교류와 대외개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공민의 출입국, 외국인의 출입국, 외국인의 중국 경내 체류와 거류 관리, 및 교통운송수단의 출입국 국경수비 검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국가는 중국공민의 합법적 출입국 권익을 보장한다.

중국 경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중국 경내 외국인은 중국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국의 국가안전을 해치고 사회공공이익을 손상하고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4조**公安부, 외교부는 각 자의 직책범위에 따라 출입국 관련 사무를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주재 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부의 위임을 받은 기타 외국주재기구(이하, 외국주재 사증발급기관) 경외(境外)의 외국인의 입국사증 발급을 책임지고 처리한다.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출입국 국경수비 검사를 책임지고 실시하며, 현급이상 지방 인민정부公安기관 및 그 출입국관리기구는 외국인의 체류 및 거류 관리를 실시한다.

공안부, 외교부는 각 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외사부서에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거류 신청수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공안부, 외교부는 출입국사무관리 중에서 업무조율을 보장하여야 하며, 아울러 국무원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각자의 직책 분담에 따라 법에 의해 그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진다.

**제5조** 국가는 통일적인 출입국관리 정보플랫폼을 구축하여 유관 관리부서 간의 정보공유를 실현한다.

**제6조** 국가는 대외개방 출입국항에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을 설립한다.

중국국민, 외국인 및 교통운송수단은 대외개방 출입국항을 통하여 출입국 하여야 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의 위임을 받은 부서가 비준한 곳에서 출입국을 할 수 있다. 출입국 인원과 교통운송수단은 마땅히 출입국 변방검사를 받아야 한다.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출입국항 한정지역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국가 안전과 출입국관리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경우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출입국 인원의 휴대물품에 대하여 변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필요 시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출입국 교통운송수단의 적재화물에 대하여 변방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해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공안부, 외교부는 출입국관리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출입국 인원의 지문 등 인체생물 식별정보를 남기는 데 대하여 규정할 수 있다.

외국정부에서 중국국민의 사증발급, 출입국 관리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중국정부는 상황에 비추어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출입국관리 직책을 수행하는 부서와 기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서비스와 관리수준을 끊임없이 제고시키고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며, 효율적이고 편의하고 안전하고 간편한 출입국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3장 외국인의 출입국

#### 제1절 사증

**제15조** 외국인은 입국하기 전에 외국주재 사증발급기관에 사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사증은 외교사증·예우사증·공무사증·일반사증으로 구분한다.

외교, 공무로 인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외교·공무사증을 발급하며, 신분이 특별하여 예우가 필요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예우사증을 발급한다. 외교사증, 예우사증, 공무사증의 발급범위와 발급방법은 외교부에서 규정한다.

업무에 종사하거나 학습, 친지방문, 관광, 비즈니스 활동, 인재유치 등의 비 외교, 공무사유로 인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상응하는 종류의 일반사증을 발급한다. 일반사증의 종류와 발급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7조** 사증 기재항목에는 사증종류, 소지자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입국 횟수, 입국유효기간, 체류기간, 발급일자와 장소,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번호 등이 포함된다.

**제18조** 외국인이 사증을 신청할 시에는 해외주재 사증발급기관에 본인의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그리고 신청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해외주재 사증발급기관의 요구에 따라 해당 수속을 처리하고 면접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외국인이 사증을 신청할 때 중국 경내의 단위나 개인의 초청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외주재 사증발급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초청장 발급단위나 개인은 초청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20조** 인도적 사유로 긴급 입국이 필요한 경우, 긴급 비즈니스로 입국초청을 받거나, 공사 응급수리에 종사하거나, 또는 기타 긴급입국 사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항에서 사증을 신청할 수 있다. 사증 신청에 동의한 유관 주관 부서의 증명서류를 소지한 외국인은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입국사증 업무를 처리하는 출입국항에서 공안부의 위임을 받은 출입국항 사증발급기관(이하, 출입국항 사증발급기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입국관광을 조직하는 여행사는 출입국항 사증발급기관에 단체관광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이 출입국항 사증발급기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출입국항 사증발급기관의 요구에 따라 본인의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신청 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수속을 밟아야 하며, 아울러 신청한 출입국항으로 입국하여야 한다.

출입국항 사증발급기관이 발급한 사증은 1회 입국에 유효하며, 사증에 명기한 체류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외국인이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을 거부한다:

- (1)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국외로 송환되어 아직도 입국금지 기간 내인 경우;

- (2) 엄중한 정신적 장애, 전염성 폐결핵 또는 공공위생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타 전염병이 있는 경우;
  - (3) 중국의 국가안전과 이익을 해치거나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하거나, 또는 기타 불법 범죄활동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4) 사증을 신청할 때 허위를 날조하거나 또는 중국 경내 체류기간의 소요 비용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 (5) 사증발급기관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6) 사증발급기관이 사증발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증발급기관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 외국인이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증을 면제할 수 있다:

- (1) 중국정부와 기타 국가정부 간에 체결한 상호 사증면제협정에 의할 때 사증면제대상에 속하는 경우;
- (2) 유효한 외국인 거류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 (3) 환승 탑승권을 소지하고 국제여행 항공기·선박·기차를 이용하여 중국을 경유해서 제3국으로 가는 경우, 중국 경내에서의 체류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출입국항도 떠나지 아니하거나, 또는 국무원이 비준한 특정 구역 내에서의 체류시간이 규정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 (4) 국무원이 사증면제에 대하여 규정한 기타 상황.

**제23조**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임시 입국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신청하여 임시 입국수속을 밟아야 한다:

- (1) 외국 선원 및 그 수행가족이 항구 소재도시에 상륙하는 경우;

- (2) 본 법 제2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인원이 항구를 떠나야 하는 경우;
  - (3) 불가항력이나 기타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임시 입국이 필요한 경우.
- 임시입국 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시입국 수속을 신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외국인 본인, 그가 입국 시에 이용한 교통운송수단의 책임자 또는 교통운송수단 출입국업무 대행업체에 필요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제2절 출입국

**제24조** 외국인은 입국할 때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본인의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사증 또는 기타 입국허가증명서를 제시하여 검사를 받고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검사에 통과된 이후에 입국할 수 있다.

**제25조** 외국인이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한다:

- (1) 유효한 출입국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변방검사를 거부, 도피하는 경우;
- (2) 본법 제21조 제1항 (1)호부터 (4)호에서 규정한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 (3) 입국후 그가 소지한 사증종류와 어긋나는 활동에 종사할 염려가 있는 경우;
- (4) 법률, 행정법규에서 입국 금지를 규정한 기타 상황.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조** 입국을 거부한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귀환하도록 명령하여야 하며, 귀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강제조치를 취하여 귀환시킨다. 외국인은 귀환 대기기간에 한정구역을 떠날 수 없다.

**제27조** 외국인은 출국할 때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본인의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등 출입국증명서를 제시하여 검사를 받고 규정한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검사에 통과된 경우에만 출국할 수 있다.

**제28조** 외국인이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을 금지한다:

- (1) 형사처분을 받아 아직 집행 중이거나 또는 형사사건의 피고, 범죄 용의자에 속하는 경우. 다만 중국과 외국 간에 체결한 관련 협정에 따라 형사판결을 받은 자를 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2) 미결 민사사건이 있어 인민법원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경우;
- (3) 노동자의 노동보수를 체불하여 국무원 유관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경우;
- (4) 법률, 행정법규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기타 상황.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거류**

### **제1절 체류와 거류**

**제29조** 외국인이 소지한 사증의 체류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사증 소지자는 사증과 그에 기재된 체류기간 내에 중국 경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 사증 체류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에 체류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청하고 요구에 따라 신청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를 거쳐 연장 이유가 충분하고 합리적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며,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출국하여야 한다. 사증 체류기간의 누계 연장기간은 사증에 기재된 기존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 외국인이 지난 사증에 입국 후 거류증명서 수속을 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입국 후 30일 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외국인 거류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거류증명서를 신청할 때에는 본인의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그리고 신청사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지문 등 인체 식별정보를 남겨야 한다.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거류사유에 따라 상응하는 종류와 기간의 외국인 거류증명서를 발급한다.

외국인의 취업 거류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단 90일, 최장 5년이며, 취업 거류증명서가 아닌 경우 유효기간은 최단 180일, 최장 5년이다.

**제31조** 외국인이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거류증명서 발급을 거부한다:

- (1) 소지한 사증종류가 외국인 거류증명서 발급상황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 (2) 신청 중에 거짓사실을 날조한 경우;
- (3)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4) 중국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중국 경내에서 거류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5) 사증발급기관이 외국인의 거류증명서 발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상황.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특수 인재, 투자자 또는 인도적 등의 사유로 인해 체류를 거류로 변경하여야 하는 외국인은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쳐 외국인 거류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 중국 경내에서 거류하는 외국인이 거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류증명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0일 전에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청하고 요구에 따라 신청사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를 거쳐 연장 충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거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며, 거류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에 출국하여야 한다.

**제33조** 외국인 거류증명서의 등기항목에는 소지자의 성명, 성별, 출생일자, 거류사유, 거류기간, 발급일자와 장소,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번호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거류증명서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사증 소지자는 등기사항이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변경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사증면제로 입국한 외국인이 사증면제 기한을 초과하여 중국 경내에서 체류하여야 하는 경우, 외국 선원 및 그 수행가족이 중국 경내에서 체류할 때 항구 소재도시를 떠나야 하거나 또는 외국인 체류증명서 수속이 필요한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외국인 체류증명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외국인 체류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제35조** 외국인이 입국한 후 그가 소지한 일반사증, 체류 또는 거류증명서가 훼손·분실·도난을 당하거나 또는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사유가 있어 교체 또는 보완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체류 또는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의 일반시증 연장, 교체 또는 보완발급 거부, 외국인 체류 또는 거류증명서 발급거부, 거류기간 연장거부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제37조**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체류 또는 거류를 할 때에는 체류 또는 거류 사유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규정한 체류 또는 거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출국하여야 한다.

**제38조** 만 16세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체류 또는 거류할 때에는 본인의 여권 또는 기타 국제여행증명서, 외국인 체류·거류증명서를 휴대하여 공안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경내에서 거류하는 외국인은 규정한 시간 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외국인 거류증명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9조** 외국인이 중국 경내 여관에서 숙박하는 경우 여관은 여관업 치안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숙박등기 수속을 처리하여야 하며, 아울러 소재지 공안기관에 외국인의 숙박등기 정보를 송부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여관 밖의 기타 주소에서 거주하거나 숙박하는 경우에는 입주 후 24시간 내에 본인 또는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가 거주지 공안기관에 가서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40조** 중국 경내에서 출생한 외국영아는 그 부모 또는 대리인이 영아가 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영아의 출생증명서를 소지하고 부모의 체류 또는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서 영아의 체류 또는 거류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사망한 경우 그 가족, 감호인 또는 대리인은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의 사망증명서를 소지하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 신고하고 외국인 체류 또는 거류증명서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41조** 외국인이 중국 경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와 취업 거류비자를 취득하여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취업허가와 취업 거류비자를 취득하지 아니한 외국인을 사용할 수 없다.  
외국인의 중국 경내 취업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42조**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 주관부서, 외국전문가 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경제사회의 발전수요와 인력자원 수급상황에 비추어 외국인의 중국 경내 취업 지도목록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국무원 교육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외국 유학생의 고학 관리 제도를 제정하여 외국 유학생의 고학 일자리범위와 기한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43조** 외국인의 아래와 같은 행위는 불법취업에 속한다:

- (1) 취업허가나 취업거류증서 없이 중국 경내에서 일하는 것;
- (2) 취업허가범위를 벗어나 중국 경내에서 일하는 것;
- (3) 외국유학생이 학생취업관리규정을 위반하여 규정된 범위나 시간 외에 일하는 것.

**제44조** 국가안전, 공공안전 유지의 필요에 따라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은 외국인, 외국기구가 일부지역에 거주 또는 사무실을 설립하는 것을 제한하며, 이미 설립한 경우에는 기한부 철거하게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은 제한구역에 진입할 수 없다.

**제45조** 외국인 직원이나 외국유학생을 고용하는 기관은 규정에 따라 현지 공안기관에 유관 소식을 보고해야 한다.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은 외국인의 불법입국, 불법거주, 불법취업을 발견하였을 시 즉각 현지 공안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46조** 난민의 지위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난민의 지위를 확인하는 기간에 공안기관이 발급한 임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중국 경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공안기관에서 발급한 난민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중국 경내에서 체류·거류할 수 있다.

## 제2절 영주거류

**제47조** 중국의 경제사회발전에 뚜렷한 공헌을 하거나 기타 중국 경내 영주거류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본인이 신청하고 공안부의 비준을 받아 영주거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외국인의 중국 경내 영주거류 심사비준 관리방법은 공안부, 외교부에서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규정한다.

**제48조** 영주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영주 거류증명서를 지참하고 중국 경내에서 거류하고 취업하며, 본인의 여권과 영주 거류증명서를 소지하고 출입국을 할 수 있다.

**제49조** 외국인이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안부는 그 중국 경내의 영주거류 자격을 취소한다:

- (1) 중국의 국가안전과 이익을 해치는 경우;
- (2) 강제퇴거를 당한 경우;
- (3) 허위로 날조하여 중국 경내에서 영주거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4) 중국 경내에서의 거류시간이 규정한 기한에 미달한 경우;
- (5) 중국 경내에서의 영주거류가 부적합한 기타 상황.

## 제6장 조사 및 송환

**제58조** 본 장에서 규정한 즉석심문, 지속심문, 구류심사, 활동범위제한, 출국 송환조치 등은 현급이상의 인민정부 공안기관 혹은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서 실시한다.

**제59조** 출입국관리 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에 대해 즉석심문을 할 수 있으며, 즉석심문을 통해 아래 같은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에 따라 지속심문을 할 수 있다.

- (1) 불법 출입국 혐의가 있을 경우
- (2) 타인을 도와 불법 출입국을 한 혐의가 있을 경우
- (3) 외국인이 불법거주, 불법취업 혐의가 있을 경우
- (4) 국가안전과 이익을 위해하거나 사회공공질서를 파괴하거나 혹은 기타 위법범죄활동에 종사한 혐의가 있을 경우. 즉석심문과 지속심문은 응당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경찰법’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공안기관 혹은 출입국변방검사기관에서 출입국관리 위반 혐의가 있는 사람을 소환할 시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0조** 외국인이 본 법규의 제59조 조항 규정 중 어느 한 사항에 부합되어

즉석심문 혹은 지속심문 후에도 혐의를 벗지 못하였을 경우 추가 조사를 위해 구류심사를 할 수 있다.

구류심사를 할 경우 응당 구류심사결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4시간 내에 심사해야 한다. 구류심사 대상이 아닐 경우 응당 즉시 구류심사를 해지해야 한다.

구류심사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안건이 복잡할 경우 상급지방인 민정부공안기관 혹은 상급출입국변방검사기관의 동의를 거쳐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적, 신분 불투명한 외국인에 대한 구류심사기간은 당사자의 국적, 신분이 확인된 후부터 계산한다.

**제61조**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에 대해 구류심사를 할 수 없고 활동범위를 제한 할 수 있다:

- (1) 엄중한 질병에 걸린 경우;
- (2) 임신 혹은 자신의 만1세 미만의 유아를 키우는 경우;
- (3) 만16세 미만 혹은 만70세 이상일 경우;
- (4) 구류심사가 부적절한 기타 경우.

활동범위가 제한된 외국인은 요구에 따라 조사를 받아야 하며, 공안기관의 동의 없이 제한된 구역을 독단적으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활동범위 제한 기간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적, 신분이 불투명한 외국인에 대한 활동범위 제한기간은 당사자의 국적, 신분이 확인된 때부터 계산된다.

**제62조**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송환 출국시킬 수 있다:

- (1) 제한된 기한에 출국처분을 받았으나 규정된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 (2) 입국불허 상황인 경우;
- (3) 불법거주, 불법취업한 경우;

(4) 본 법규 기타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송환 출국시킬 경우.  
기타 국외인원이 위의 어느 한 사항에 부합될 경우 법에 따라 송환 출국시킬 수 있다. 송환 출국된 인원은 출국한 그날부터 1-5년 내 재입국을 불허한다.

**제63조** 구류심사를 받거나 혹은 송환결정을 내렸으나 즉시 집행할 수 없는 인원은 응당 유치장이나 송환 장소에 구치하여야 한다.

**제64조** 본 법규에 따라 진행되는 지속심문, 구류심문, 활동범위제한, 송환출국조치에 불복하는 외국인은 법에 따라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재심의 결정을 최종결정으로 한다.

**제65조** 법에 따라 출국 또는 입국을 금지하는 인원에 대하여, 결정기관은 지체 없이 규정에 따라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출국, 입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결정기관은 지체 없이 출국, 입국 금지결정을 취소하고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6조** 국가안전과 출입국 관리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우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출입국 인원에 대한 인신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신검사는 검사대상과 같은 성별의 2명 변방 검사요원이 진행하여야 한다.

**제67조** 사증, 외국인 체류 또는 거류증명서 등 출입국 증명서가 훼손, 분실, 도난당하거나 또는 발급 후 증명서 소지자가 발급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상황이 있는 경우 증명서 발급기관은 당해 출입국 증명서를 폐지시킬 수 있다.

위조, 변조, 사취하거나 또는 증명서 발급기관이 폐지를 선고한 출입국증

명서는 무효다.

공안기관은 전 항에서 규정하였거나 또는 타인이 도용한 출입국증명서를 말소하거나 몰수한다.

**제68조** 공안기관은 타인의 불법 출입국 조직, 운송, 협조에 사용된 교통운송 수단, 사건의 심의 증거로 되는 물품을 압류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사출한 금지물품, 국가기밀과 관련되는 문건, 자료, 그리고 출입국 관리 위반활동에 사용한 수단 등을 압류하고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9조** 출입국증명서의 진위는 증명서 발급기관, 출입국 변방검사기관 또는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서 한다.

## 제7장 법적 책임

**제70조** 본 장에서 규정한 행정처벌은 본 장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 이외에 현금이상 지방인민정부공안기관 혹은 출입국변방검사기관에서 결정한다. 경고 혹은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은 현금이상 지방인민정부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에서 결정한다.

**제71조**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1천 위안 이상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엄중할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 구류에 처하며 동시에 2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 (1) 위조, 변조하거나 사취한 출입국증으로 출입국 하였을 경우;
- (2) 타인의 출입국증으로 출입국 하였을 경우;
- (3) 출입국변방검사를 도피하였을 경우;



(4) 기타 방법으로 불법 출입국하였을 경우.

**제72조** 타인을 도와 불법 출입국하였을 경우 2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엄중할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 구류에 처하는 동시에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 벌금을 안기며 불법행위로 발생한 소득은 몰수한다.

회사가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행위로 발생한 소득은 몰수하는 동시에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 직접적인 직원은 앞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3조** 허위로 날조하여 사증, 거주증서 등 출입국증서를 사취하였을 경우 2천 위안 이상 5천 위안 이하 벌금을 안기며, 경위가 엄중할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 구류를 하는 동시에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 벌금을 안긴다.

회사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 벌금을 안기며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 직접적인 직원에게 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4조** 본 법규를 위반하고 외국인을 위해 초청장이나 기타 신청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 5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 벌금을 안기며 불법행위로 발생한 소득은 몰수하는 동시에 초청 외국인의 출국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회사가 위 행위를 하였을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 벌금을 안기며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은 몰수하는 동시에 초청 외국인의 출국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 직접적인 직원에 대해 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75조** 중국공민이 출국 후 불법으로 기타 국가나 지역에 진입하여 송환된 경우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그 출입국증명서를 몰수하여야 하며, 출입국 증명서 발급기관은 그가 송환된 날로부터 6개월 내지 3년 이내에 출입국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76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를 주며, 동시에 2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외국인이 공안기관의 출입국증명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2) 외국인이 거류증명서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3) 규정에 따라 외국인의 출생등기, 사망신고 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 (4) 외국인 거류증명서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 (5) 중국 경내의 외국인이 타인의 출입국증명서를 도용한 경우
- (6) 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여관이 규정에 따라 외국인의 숙박등기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외국인 숙박등기 정보를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를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천 위안 이상,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77조**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외국인의 진입을 금지하는 구역에 진입한 경우 지체 없이 떠나도록 명령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외국인이 불법으로 취득한 문자기록, 시청자료, 전자데이터 및 기타 물품은 몰수하거나 소각하며, 그에 사용한 수단은 몰수한다.

외국인, 외국기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의 기한부 철거결정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경고를 주고 강제 철거시키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해당 책임직원에게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제78조** 불법거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경고를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불법거류일에 따라 매일 5백 위안, 총액이 1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감호인 또는 기타 감호책임이 있는 자가 감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만16세 미만 외국인의 불법거류를 초래한 경우 감호인 또는 기타 감호책임은 지는 자에게 경고를 주며, 동시에 1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9조** 불법입국, 불법거주 외국인을 수용, 은닉하거나 불법입국, 불법거주 외국인을 도와 검사를 도피하거나 혹은 불법거주 외국인에게 불법으로 출입국증서를 제공하는 자에게 2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엄중할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 구류에 처하는 동시에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행위로 발생한 소득은 몰수한다.

회사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행위로 발생한 소득은 몰수하는 동시에 직접적인 책임자와 기타 직접적인 직원은 위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80조**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에 대해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경위가 엄중할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 구류하는 동시에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외국인 불법취업을 소개한 개인에게는 불법소개 1인당 5천 위안 씩 최고 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회사에게는 불법소개 1인당 5천 위안 씩 최고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행위로 발생한 소득은 몰수한다.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했을 경우 불법고용 1인당 1만 위안씩 최고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행위로 발생한 소득은 몰수한다.

**제81조** 외국인이 체류, 거주 사유에 부합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혹은 중국 법률, 법규규정 등을 위반하여 중국 경내의 계속 체류, 거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한된 기한 내의 출국을 명할 수 있다.

외국인이 본 법률 규정을 엄격히 위반하였으나 아직 범죄가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 공안부는 그를 추방할 수 있다. 공안부의 처벌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추방된 외국인은 추방된 날부터 10년 내에 재입국할 수 없다.

**제82조**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를 주고 동시에 2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출입국항 한정구역 관리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 (2) 외국선원 및 그 수행가족이 임시 입국수속을 하지 않고 상륙한 경우;
  - (3) 등선증명서를 취득하지 않고 외국선박을 승선하거나 하선한 경우.
- 전 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동시에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제83조** 교통운송수단이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책임자에게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검사허가를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출입국을 하거나 또는 비준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출입국항을 변경한 경우;
- (2) 규정에 따라 직원, 여객, 화물 또는 물품 등의 정보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또는 출입국 변방검사 협조를 거부한 경우;
- (3) 출입국 변방검사 규정을 어기고 승무원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거나 화물 또는 물품을 적재한 경우.

출입국 교통운송수단에 출입국이 금지된 자를 태우고 출입국을 한 경우 그 탑승 인원수에 따라 일인당 5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교통운송수단 책임자가 이미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84조** 교통운송수단이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책임자에게 2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1) 중국 또는 외국선박이 허가 없이 자의적으로 외국선박에 댄 경우;
- (2) 외국선박, 항공기가 중국 경내에서 규정한 노선, 항로에 따라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출입국 선박, 항공기가 규정을 위반하고 대외개방 출입국항 그 밖의 지역에 진입한 경우.

**제85조** 출입국 관리직책을 수행하는 업무직원이 아래 사항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을 한다:

- (1)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규정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외국인에게 사증, 외국인의 체류 또는 거류증명서 등의 출입국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 (2)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규정한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자나 교통운송수단을 심사하지 않고 그 출입국을 통과시킨 경우;
- (3) 출입국 관리업무 중 얻은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 (4) 규정에 따라 의법 수취한 비용, 몰수한 벌금 및 몰수한 불법소득, 불법재물을 국고에 상납하지 아니한 경우;
- (5) 벌금이나 몰수, 압류한 벌금이나 수취한 비용을 착복, 점용, 유용한 경우;
- (6) 직권남용, 직무태만, 부정한 행위로서 법에 따라 법정 직책을 수행하지

아니한 기타 행위.

**제86조** 출입국관리 위반행위에 대하여 5백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은 즉석에서 처벌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87조** 출입국 관리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 처벌대상자는 처벌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처벌대상자가 소재지에 고정주소가 없고 즉석에서 벌금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사후에 집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출입국항에서 지정은행에 벌금을 납부하기 명확히 어려운 경우에는 즉석에서 수취할 수 있다.

**제88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한다.

## 제8장 부 칙

**제89조** 본 법 용어의 함의는 아래와 같다.

출국이란 중국 내륙에서 기타 국가나 지역으로 가거나, 중국 내륙에서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로 가거나 중국 대륙에서 대만지역으로 가는 것을 가리킨다.

입국이란 기타 국가나 지역에서 중국 내륙에 진입하거나,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중국 내륙에 진입하거나 또는 대만지역에서 중국 대륙에 진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외국인이란 중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가리킨다.

**제90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인근 국가와 접양한 성, 자치구는 중국이 유관

국가와 체결한 변경관리협정에 따라 지방성 법규, 지방정부 규장(規章)을 제정하여 양국 변경 인접지역 거주민의 왕래를 규정할 수 있다.

**제91조** 외국의 중국주재 외교대표기구, 영사기구 구성원 및 특권과 면허를 향유하는 기타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나 거류 관리에 대하여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제92조** 외국인이 사증 또는 외국인의 체류나 거류증명서 등 출입국 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또는 증명서 연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사증, 증명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3조**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외국인출경입경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공민출입국관리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 7-1. 中華人民共和國 出境入境管理法

(2012年6月30日 第十一屆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二十七次會議通過)

### 第一章 總 則

**第一條** 爲了規範出境入境管理，維護中華人民共和國的主權、安全 and 社會秩序，促進對外交往和對外開放，制定本法。

**第二條** 中國公民出境入境、外國人入境出境、外國人在中國境內停留居留的管理，以及交通運輸工具出境入境的邊防檢查，適用本法。

**第三條** 國家保護中國公民出境入境合法權益。

在中國境內的外國人的合法權益受法律保護。在中國境內的外國人應當遵守中國法律，不得危害中國國家安全、損害社會公共利益、破壞社會公共秩序。

**第四條** 公安部、外交部按照各自職責負責有關出境入境事務的管理。

中華人民共和國駐外使館、領館或者外交部委托的其他駐外机构（以下稱駐外簽證機關）負責在境外簽發外國人入境簽證。出入境邊防檢查機關負責實施出境入境邊防檢查。縣級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機關及其出入境管理机构負責外國人停留居留管理。

公安部、外交部可以在各自職責範圍內委托縣級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機關出入境管理机构、縣級以上地方人民政府外事部門受理外國人入境、停留居留申請。



公安部、外交部在出境入境事務管理中，應當加強溝通配合，並與國務院有關部門密切合作，按照各自職責分工，依法行使職權，承擔責任。

**第五條** 國家建立統一的出境入境管理信息平台，實現有關管理部門信息共享。

**第六條** 國家在對外開放的口岸設立出入境邊防檢查機關。

中國公民、外國人以及交通運輸工具應當從對外開放的口岸出境入境，特殊情況下，可以從國務院或者國務院授權的部門批准的地点出境入境。出境入境人員和交通運輸工具應當接受出境入境邊防檢查。

出入境邊防檢查機關負責對口岸限定區域實施管理。根據維護國家安全和出境入境管理秩序的需要，出入境邊防檢查機關可以對出境入境人員攜帶的物品實施邊防檢查。必要時，出入境邊防檢查機關可以對出境入境交通運輸工具載運的貨物實施邊防檢查，但是應當通知海關。

**第七條** 經國務院批准，公安部、外交部根據出境入境管理的需要，可以對留存出境入境人員的指紋等人體生物識別信息作出規定。

外國政府對中國公民簽發簽證、出境入境管理有特別規定的，中國政府可以根據情況採取相應的對等措施。

**第八條** 履行出境入境管理職責的部門和機構應當切實採取措施，不斷提升服務和管理水平，公正執法，便民高效，維護安全、便捷的出境入境秩序。

### 第三章 外國人入境出境

#### 第一節 簽證

**第十五條** 外國人入境，應當向駐外簽證機關申請辦理簽證，但是本法另有規定的除外。

**第十六條** 簽證分爲外交簽證、禮遇簽證、公務簽證、普通簽證。

對因外交、公務事由入境的外國人，簽發外交、公務簽證；對因身份特殊需要給予禮遇的外國人，簽發禮遇簽證。外交簽證、禮遇簽證、公務簽證的簽發範圍和簽發辦法由外交部規定。

對因工作、學習、探親、旅游、商務活動、人才引進等非外交、公務事由入境的外國人，簽發相應類別的普通簽證。普通簽證的類別和簽發辦法由國務院規定。

**第十七條** 簽證的登記項目包括：簽證種類，持有人姓名、性別、出生日期、入境次數、入境有效期、停留期限，簽發日期、地點，護照或者其他國際旅行證件號碼等。

**第十八條** 外國人申請辦理簽證，應當向駐外簽證機關提交本人的護照或者其他國際旅行證件，以及申請事由的相關材料，按照駐外簽證機關的要求辦理相關手續、接受面談。

**第十九條** 外國人申請辦理簽證需要提供中國境內的單位或者個人出具的邀請函件的，申請人應當按照駐外簽證機關的要求提供。出具邀請函件的單位或者個人應當對邀請內容的真實性負責。

**第二十條** 出于人道原因需要緊急入境，應邀入境從事緊急商務、工程搶修或者其他緊急入境需要并持有有關主管部門同意在口岸申辦簽證的證明材料的外國人，可以在國務院批准辦理口岸簽證業務的口岸，向公安部委托的口岸簽證機關（以下簡稱口岸簽證機關）申請辦理口岸簽證。

旅行社按照國家有關規定組織入境旅游的，可以向口岸簽證機關申請辦理團體旅游簽證。

外國人向口岸簽證機關申請辦理簽證，應當提交本人的護照或者其他國際旅行證件，以及申請事由的相關材料，按照口岸簽證機關的要求辦理相關手續，并從申請簽證的口岸入境。

口岸簽證機關簽發的簽證一次入境有效，簽證注明的停留期限不得超過三十日。

**第二十一條** 外國人有下列情形之一的，不予簽發簽證：

- （一）被處驅逐出境或者被決定遣送出境，未滿不准入境規定年限的；
  - （二）患有嚴重精神障礙、傳染性肺結核病或者有可能對公共衛生造成重大危害的其他傳染病的；
  - （三）可能危害中國國家安全和利益、破壞社會公共秩序或者從事其他違法犯罪活動的；
  - （四）在申請簽證過程中弄虛作假或者不能保障在中國境內期間所需費用的；
  - （五）不能提交簽證機關要求提交的相關材料的；
  - （六）簽證機關認為不宜簽發簽證的其他情形。
- 對不予簽發簽證的，簽證機關可以不說明理由。

**第二十二條** 外國人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免辦簽證：

- （一）根據中國政府與其他國家政府簽訂的互免簽證協議，屬於免辦簽

証人員的；

(二) 持有效的外國人居留証件的；

(三) 持聯程客票搭乘國際航行的航空器、船舶、列車從中國過境前往第三國或者地區，在中國境內停留不超過二十四小時且不離開口岸，或者在國務院批准的特定區域內停留不超過規定時限的；

(四) 國務院規定的可以免辦簽證的其他情形。

**第二十三條** 有下列情形之一的外國人需要臨時入境的，應當向出入境邊防檢查機關申請辦理臨時入境手續：

(一) 外國船員及其隨行家屬登陸港口所在城市的；

(二) 本法第二十二條第三項規定的人員需要離開口岸的；

(三) 因不可抗力或者其他緊急原因需要臨時入境的。

臨時入境的期限不得超過十五日。

對申請辦理臨時入境手續的外國人，出入境邊防檢查機關可以要求外國人本人、載運其入境的交通運輸工具的負責人或者交通運輸工具出境入境業務代理單位提供必要的保證措施。

## 第二節 入境出境

**第二十四條** 外國人入境，應當向出入境邊防檢查機關交驗本人的護照或者其他國際旅行證件、簽證或者其他入境許可證明，履行規定的手續，經查驗准許，方可入境。

**第二十五條** 外國人有下列情形之一的，不准入境：

(一) 未持有效出境入境證件或者拒絕、逃避接受邊防檢查的；

(二) 具有本法第二十一條第一款第一項至第四項規定情形的；

(三) 入境后可能從事与簽證種類不符的活動的；

(四) 法律、行政法規規定不准入境的其他情形。

對不准入境的，出入境邊防檢查機關可以不說明理由。

**第二十六條** 對未被准許入境的外國人，出入境邊防檢查機關應當責令其返回；對拒不返回的，強制其返回。外國人等待返回期間，不得離開限定的區域。

**第二十七條** 外國人出境，應當向出入境邊防檢查機關交驗本人的護照或者其他國際旅行證件等出境入境證件，履行規定的手續，經查驗准許，方可出境。

**第二十八條** 外國人有下列情形之一的，不准出境：

(一) 被判處刑罰尚未執行完畢或者屬於刑事案件被告人、犯罪嫌疑人的，但是按照中國與外國簽訂的有關協議，移管被判刑人的除外；

(二) 有未了結的民事案件，人民法院決定不准出境的；

(三) 拖欠勞動者的勞動報酬，經國務院有關部門或者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決定不准出境的；

(四) 法律、行政法規規定不准出境的其他情形。

## 第四章 外國人停留居留

### 第一節 停留居留

**第二十九條** 外國人所持簽證注明的停留期限不超過一百八十日的，持證人凭簽證并按照簽證注明的停留期限在中國境內停留。

需要延長簽證停留期限的，應當在簽證注明的停留期限屆滿七日前向停留地縣級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機關出入境管理机构申請，按照要求提交申請事由的相關材料。經審查，延期理由合理、充分的，准予延長停留期限；不予延長停留期限的，應當按期離境。

延長簽證停留期限，累計不得超過簽證原注明的停留期限。

**第三十條** 外國人所持簽證注明入境后需要辦理居留証件的，應當自入境之日起三十日內，向擬居留地縣級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機關出入境管理机构申請辦理外國人居留証件。

申請辦理外國人居留証件，應當提交本人的護照或者其他國際旅行証件，以及申請事由的相關材料，並留存指紋等人体生物識別信息。公安機關出入境管理机构應當自收到申請材料之日起十五日內進行審查並作出審查決定，根據居留事由簽發相應類別和期限的外國人居留証件。

外國人工作類居留証件的有效期最短為九十日，最長為五年；非工作類居留証件的有效期最短為一百八十日，最長為五年。

**第三十一條** 外國人有下列情形之一的，不予簽發外國人居留証件：

- (一) 所持簽證類別屬於不應辦理外國人居留証件的；
- (二) 在申請過程中弄虛作假的；
- (三) 不能按照規定提供相關證明材料的；
- (四) 違反中國有關法律、行政法規，不適合在中國境內居留的；
- (五) 簽發機關認為不宜簽發外國人居留証件的其他情形。

符合國家規定的專門人才、投資者或者出于人道等原因確需由停留變更為居留的外國人，經設區的市級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機關出入境管理机构批准可以辦理外國人居留証件。

**第三十二條** 在中國境內居留的外國人申請延長居留期限的，應當在居留證件有效期限屆滿三十日前向居留地縣級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機關出入境管理机构提出申請，按照要求提交申請事由的相關材料。經審查，延期理由合理、充分的，准予延長居留期限；不予延長居留期限的，應當按期離境。

**第三十三條** 外國人居留證件的登記項目包括：持有人姓名、性別、出生日期、居留事由、居留期限，簽發日期、地點，護照或者其他國際旅行證件號碼等。

外國人居留證件登記事項發生變更的，持證件人應當自登記事項發生變更之日起十日內向居留地縣級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機關出入境管理机构申請辦理變更。

**第三十四條** 免辦簽證入境的外國人需要超過免簽期限在中國境內停留的，外國船員及其隨行家屬在中國境內停留需要離開港口所在城市，或者具有需要辦理外國人停留證件其他情形的，應當按照規定辦理外國人停留證件。

外國人停留證件的有效期限最長為一百八十日。

**第三十五條** 外國人入境后，所持的普通簽證、停留居留證件損毀、遺失、被盜搶或者有符合國家規定的事由需要換發、補發的，應當按照規定向停留居留地縣級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機關出入境管理机构提出申請。

**第三十六條** 公安機關出入境管理机构作出的不予辦理普通簽證延期、換發、補發，不予辦理外國人停留居留證件、不予延長居留期限的決定為最終決定。

**第三十七條** 外國人在中國境內停留居留，不得從事與停留居留事由不相符的活動，並應當在規定的停留居留期限屆滿前出境。

**第三十八條** 年滿十六周歲的外國人在中國境內停留居留，應當隨身攜帶本人的護照或者其他國際旅行證件，或者外國人停留居留證件，接受公安機關的查驗。

在中國境內居留的外國人，應當在規定的時間內到居留地縣級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機關交驗外國人居留證件。

**第三十九條** 外國人在中國境內旅館住宿的，旅館應當按照旅館業治安管理的有關規定為其辦理住宿登記，并向所在地公安機關報送外國人住宿登記信息。

外國人在旅館以外的其他住所居住或者住宿的，應當在入住后二十四小時內由本人或者留宿人，向居住地的公安機關辦理登記。

**第四十條** 在中國境內出生的外國嬰兒，其父母或者代理人應當在嬰兒出生六十日內，持該嬰兒的出生證明到父母停留居留地縣級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機關出入境管理机构為其辦理停留或者居留登記。

外國人在中國境內死亡的，其家屬、監護人或者代理人，應當按照規定，持該外國人的死亡證明向縣級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機關出入境管理机构申報，注銷外國人停留居留證件。

**第四十一條** 外國人在中國境內工作，應當按照規定取得工作許可和工作類居留證件。任何單位和个人不得聘用未取得工作許可和工作類居留證件的外國人。

外國人在中國境內工作管理辦法由國務院規定。



**第四十二條** 國務院人力資源社會保障主管部門、外國專家主管部門會同國務院有關部門根據經濟社會發展需要和人力資源供求狀況制定並定期調整外國人在中國境內工作指導目錄。

國務院教育主管部門會同國務院有關部門建立外國留學生勤工助學管理制度，對外國留學生勤工助學的崗位範圍和時限作出規定。

**第四十三條** 外國人有下列行爲之一的，屬於非法就業：

- (一) 未按照規定取得工作許可和工作類居留證件在中國境內工作的；
- (二) 超出工作許可限定範圍在中國境內工作的；
- (三) 外國留學生違反勤工助學管理規定，超出規定的崗位範圍或者時限在中國境內工作的。

**第四十四條** 根據維護國家安全、公共安全的需要，公安機關、國家安全機關可以限制外國人、外國機構在某些地區設立居住或者辦公場所；對已經設立的，可以限期遷離。

未經批准，外國人不得進入限制外國人進入的區域。

**第四十五條** 聘用外國人工作或者招收外國留學生的單位，應當按照規定向所在地公安機關報告有關信息。

公民、法人或者其他組織發現外國人有非法入境、非法居留、非法就業情形的，應當及時向所在地公安機關報告。

**第四十六條** 申請難民地位的外國人，在難民地位甄別期間，可以凭公安機關簽發的臨時身份證明在中國境內停留；被認定為難民的外國人，可以凭公安機關簽發的難民身份證件在中國境內停留居留。

## 第二節 永久居留

**第四十七條** 對中國經濟社會發展作出突出貢獻或者符合其他在中國境內永久居留條件的外國人，經本人申請和公安部批准，取得永久居留資格。

外國人在中國境內永久居留的審批管理辦法由公安部、外交部會同國務院有關部門規定。

**第四十八條** 取得永久居留資格的外國人，凭永久居留證件在中國境內居留和工作，凭本人的護照和永久居留證件出境入境。

**第四十九條** 外國人有下列情形之一的，由公安部決定取消其在中國境內永久居留資格：

- (一) 對中國國家安全和利益造成危害的；
- (二) 被處驅逐出境的；
- (三) 弄虛作假騙取在中國境內永久居留資格的；
- (四) 在中國境內居留未達到規定時限的；
- (五) 不适宜在中國境內永久居留的其他情形。

## 第六章 調查和遣返

**第五十八條** 本章規定的當場盤問、繼續盤問、拘留審查、限制活動範圍、遣送出境措施，由縣級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機關或者出入境邊防檢查機關實施。

**第五十九條** 對涉嫌違反出境入境管理的人員，可以當場盤問；經當場盤問，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依法繼續盤問：

- (一) 有非法出境入境嫌疑的；
- (二) 有協助他人非法出境入境嫌疑的；
- (三) 外國人有非法居留、非法就業嫌疑的；
- (四) 有危害國家安全和利益，破壞社會公共秩序或者從事其他違法犯罪活動嫌疑的。

當場盤問和繼續盤問應當依據《中華人民共和國人民警察法》規定的程序進行。

縣級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機關或者出入境邊防檢查機關需要傳喚涉嫌違反出境入境管理的人員的，依照《中華人民共和國治安管理處罰法》的有關規定執行。

**第六十條** 外國人有本法第五十九條第一款規定情形之一的，經當場盤問或者繼續盤問後仍不能排除嫌疑，需要作進一步調查的，可以拘留審查。

實施拘留審查，應當出示拘留審查決定書，並在二十四小時內進行詢問。發現不應當拘留審查的，應當立即解除拘留審查。

拘留審查的期限不得超過三十日；案情複雜的，經上一級地方人民政府公安機關或者出入境邊防檢查機關批准可以延長至六十日。對國籍、身份不明的外國人，拘留審查期限自查清其國籍、身份之日起計算。

**第六十一條** 外國人有下列情形之一的，不適用拘留審查，可以限制其活動範圍：

- (一) 患有嚴重疾病的；
- (二) 懷孕或者哺乳自己不滿一周歲嬰兒的；
- (三) 未滿十六周歲或者已滿七十周歲的；
- (四) 不宜適用拘留審查的其他情形。

被限制活動範圍的外國人，應當按照要求接受審查，未經公安機關批

准，不得離開限定的區域。限制活動範圍的期限不得超過六十日。對國籍、身份不明的外國人，限制活動範圍期限自查清其國籍、身份之日起計算。

**第六十二條** 外國人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遣送出境：

- (一) 被處限期出境，未在規定期限內出境的；
- (二) 有不准入境情形的；
- (三) 非法居留，非法就業的；
- (四) 違反本法或者其他法律、行政法規需要遣送出境的。

其他境外人員有前款所列情形之一的，可以依法遣送出境。

被遣送出境的人員，自被遣送出境之日起一至五年內不准入境。

**第六十三條** 被拘留審查或者被決定遣送出境但不能立即執行的人員，應當羈押在拘留所或者遣返場所。

**第六十四條** 外國人對依照本法規定對其實施的繼續盤問、拘留審查、限制活動範圍、遣送出境措施不服的，可以依法申請行政復議，該行政復議決定為最終決定。

其他境外人員對依照本法規定對其實施的遣送出境措施不服，申請行政復議的，適用前款規定。

**第六十五條** 對依法決定不准出境或者不准入境的人員，決定機關應當按照規定及時通知出入境邊防檢查機關；不准出境、入境情形消失的，決定機關應當及時撤銷不准出境、入境決定，並通知出入境邊防檢查機關。

**第六十六條** 根據維護國家安全和出境入境管理秩序的需要，必要時，出入境邊防檢查機關可以對出境入境的人員進行人身檢查。人身檢查應當由

兩名與受檢查人同性別的邊防檢查人員進行。

**第六十七條** 簽證、外國人停留居留證件等出境入境證件發生損毀、遺失、被盜搶或者簽發后發現持證人不符簽發條件等情形的，由簽發機關宣布該出境入境證件作廢。

偽造、變造、騙取或者被證件簽發機關宣布作廢的出境入境證件無效。

公安機關可以對前款規定的或被他人冒用的出境入境證件予以注銷或者收繳。

**第六十八條** 對用于組織、運送、協助他人非法出境入境的交通運輸工具，以及需要作為辦案證據的物品，公安機關可以扣押。

對查獲的違禁物品，涉及國家秘密的文件、資料以及用于實施違反出境入境管理活動的工具等，公安機關應當予以扣押，并依照相關法律、行政法規規定處理。

**第六十九條** 出境入境證件的真偽由簽發機關、出入境邊防檢查機關或者公安機關出入境管理机构認定。

## 第七章 法律責任

**第七十條** 本章規定的行政處罰，除本章另有規定外，由縣級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機關或者出入境邊防檢查機關決定；其中警告或者五千元以下罰款，可以由縣級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機關出入境管理机构決定。

**第七十一條** 有下列行爲之一的，處一千元以上五千元以下罰款；情節嚴重的，處五日以上十日以下拘留，可以并處二千元以上一萬元以下罰款：

- (一) 持用偽造、變造、騙取的出境入境證件出境入境的；
- (二) 冒用他人出境入境證件出境入境的；
- (三) 逃避出境入境邊防檢查的；
- (四) 以其他方式非法出境入境的。

**第七十二條** 協助他人非法出境入境的，處二千元以上一萬元以下罰款；情節嚴重的，處十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並處五千元以上二萬元以下罰款，有違法所得的，沒收違法所得。

單位有前款行爲的，處一萬元以上五萬元以下罰款，有違法所得的，沒收違法所得，並對其直接負責的主管人員和其他直接責任人員依照前款規定予以處罰。

**第七十三條** 弄虛作假騙取簽證、停留居留證件等出境入境證件的，處二千元以上五千元以下罰款；情節嚴重的，處十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並處五千元以上二萬元以下罰款。

單位有前款行爲的，處一萬元以上五萬元以下罰款，並對其直接負責的主管人員和其他直接責任人員依照前款規定予以處罰。

**第七十四條** 違反本法規定，爲外國人出具邀請函件或者其他申請材料的，處五千元以上一萬元以下罰款，有違法所得的，沒收違法所得，並責令其承擔所邀請外國人的出境費用。

單位有前款行爲的，處一萬元以上五萬元以下罰款，有違法所得的，沒收違法所得，並責令其承擔所邀請外國人的出境費用，對其直接負責的主管人員和其他直接責任人員依照前款規定予以處罰。

**第七十五條** 中國公民出境后非法前往其他國家或者地區被遣返的，出入

境邊防檢查機關應當收繳其出境入境證件，出境入境證件簽發機關自其被遣返之日起六個月至三年以內不予簽發出境入境證件。

**第七十六條** 有下列情形之一的，給予警告，可以并處二千元以下罰款：

- (一) 外國人拒不接受公安機關查驗其出境入境證件的；
- (二) 外國人拒不交驗居留證件的；
- (三) 未按照規定辦理外國人出生登記，死亡申報的；
- (四) 外國人居留證件登記事項發生變更，未按照規定辦理變更的；
- (五) 在中國境內的外國人冒用他人出境入境證件的；
- (六) 未按照本法第三十九條第二款規定辦理登記的。

旅館未按照規定辦理外國人住宿登記的，依照《中華人民共和國治安管理處罰法》的有關規定予以處罰；未按照規定向公安機關報送外國人住宿登記信息的，給予警告；情節嚴重的，處一千元以上五千元以下罰款。

**第七十七條** 外國人未經批准，擅自進入限制外國人進入的區域，責令立即離開；情節嚴重的，處五日以上十日以下拘留。對外國人非法獲取的文字記錄、音像資料、電子數據和其他物品，予以收繳或者銷毀，所用工具予以收繳。

外國人、外國機構違反本法規定，拒不執行公安機關、國家安全機關限期遷離決定的，給予警告并強制遷離；情節嚴重的，對有關責任人員處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

**第七十八條** 外國人非法居留的，給予警告；情節嚴重的，處每非法居留一日五百元，總額不超過一萬元的罰款或者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

因監護人或者其他負有監護責任的人未盡到監護義務，致使未滿十六周歲的外國人非法居留的，對監護人或者其他負有監護責任的人給予警

告，可以并處一千元以下罰款。

**第七十九條** 容留、藏匿非法入境、非法居留的外國人，協助非法入境、非法居留的外國人逃避檢查，或者為非法居留的外國人違法提供出境入境証件的，處二千元以上一萬元以下罰款；情節嚴重的，處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并處五千元以上二萬元以下罰款，有違法所得的，沒收違法所得。

單位有前款行為的，處一萬元以上五萬元以下罰款，有違法所得的，沒收違法所得，并對其直接負責的主管人員和其他直接責任人員依照前款規定予以處罰。

**第八十條** 外國人非法就業的，處五千元以上二萬元以下罰款；情節嚴重的，處五日以上十五日以下拘留，并處五千元以上二萬元以下罰款。

介紹外國人非法就業的，對個人處每非法介紹一人五千元，總額不超過五萬元的罰款；對單位處每非法介紹一人五千元，總額不超過十萬元的罰款；有違法所得的，沒收違法所得。

非法聘用外國人的，處每非法聘用一人一萬元，總額不超過十萬元的罰款；有違法所得的，沒收違法所得。

**第八十一條** 外國人從事與停留居留事由不相符的活動，或者有其他違反中國法律、法規規定，不适宜在中國境內繼續停留居留情形的，可以處限期出境。

外國人違反本法規定，情節嚴重，尚不構成犯罪的，公安部可以處驅逐出境。公安部的處罰決定為最終決定。

被驅逐出境的外國人，自被驅逐出境之日起十年內不准入境。

**第八十二條** 有下列情形之一的，給予警告，可以并處二千元以下罰款：



- (一) 擾亂口岸限定區域管理秩序的；
- (二) 外國船員及其隨行家屬未辦理臨時入境手續登陸的；
- (三) 未辦理登輪證件上下外國船舶的。

違反前款第一項規定，情節嚴重的，可以并處五日以上十日以下拘留。

**第八十三條** 交通運輸工具有下列情形之一的，對其負責人處五千元以上五萬元以下罰款：

- (一) 未經查驗准許擅自出境入境或者未經批准擅自改變出境入境口岸的；
- (二) 未按照規定如實申報員工、旅客、貨物或者物品等信息，或者拒絕協助出境入境邊防檢查的；
- (三) 違反出境入境邊防檢查規定上下人員、裝卸貨物或者物品的。

出境入境交通運輸工具載運不准出境入境人員出境入境的，處每載運一人五千元以上一萬元以下罰款。交通運輸工具負責人證明其已經採取合理預防措施的，可以減輕或者免予處罰。

**第八十四條** 交通運輸工具有下列情形之一的，對其負責人處二千元以上二萬元以下罰款：

- (一) 中國或者外國船舶未經批准擅自搭靠外國船舶的；
- (二) 外國船舶、航空器在中國境內未按照規定的路線、航線行駛的；
- (三) 出境入境的船舶、航空器違反規定駛入對外開放口岸以外地區的。

**第八十五條** 履行出境入境管理職責的工作人員，有下列行爲之一的，依法給予處分：

- (一) 違反法律、行政法規，為不符合規定條件的外國人簽發簽證、

外國人停留居留證件等出境入境證件的；

(二) 違反法律、行政法規，審核驗放不符合規定條件的人員或者交通運輸工具出境入境的；

(三) 洩露在出境入境管理工作中知悉的個人信息，侵害當事人合法權益的；

(四) 不按照規定將依法收取的費用、收繳的罰款及沒收的違法所得、非法財物上繳國庫的；

(五) 私分、侵占、挪用罰沒、扣押的款物或者收取的費用的；

(六) 濫用職權、玩忽職守、徇私舞弊，不依法履行法定職責的其他行爲。

**第八十六條** 對違反出境入境管理行爲處五百元以下罰款的，出入境邊防檢查機關可以當場作出處罰決定。

**第八十七條** 對違反出境入境管理行爲處罰款的，被處罰人應當自收到處罰決定書之日起十五日內，到指定的銀行繳納罰款。被處罰人在所在地沒有固定住所，不當場收繳罰款事後難以執行或者在口岸向指定銀行繳納罰款確有困難的，可以當場收繳。

**第八十八條** 違反本法規定，構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責任。

## 第八章 附 則

**第八十九條** 本法下列用語的含義：

出境，是指由中國內地前往其他國家或者地區，由中國內地前往香港特別行政區、澳門特別行政區，由中國大陸前往台灣地區。

入境，是指由其他國家或者地區進入中國內地，由香港特別行政區、澳門特別行政區進入中國內地，由台灣地區進入中國大陸。

外國人，是指不具有中國國籍的人。

**第九十條** 經國務院批准，同毗鄰國家接壤的省、自治區可以根据中國与有關國家簽訂的邊界管理協定制地方性法規、地方政府規章，對兩國邊境接壤地區的居民往來作出規定。

**第九十一條** 外國駐中國的外交代表机构、領事机构成員以及享有特權和豁免的其他外國人，其入境出境及停留居留管理，其他法律另有規定的，依照其規定。

**第九十二條** 外國人申請辦理簽證、外國人停留居留證件等出境入境證件或者申請辦理證件延期、變更的，應當按照規定繳納簽證費、證件費。

**第九十三條** 本法自2013年7月1日起施行。《中華人民共和國外國人入境出境管理法》和《中華人民共和國公民出境入境管理法》同時廢止。

##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부분 발췌)

주체39(1950)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5차 회의에서 채택  
주체63(1974)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수정보충  
주체76(1987)년 2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호로 채택  
주체79(1990)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호로 수정보충  
주체84(1995)년 3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4호로 수정보충  
주체88(1999)년 8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53호로 수정  
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2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4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84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25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4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3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10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35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6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80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10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03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4월 이후 미상 시기

### 제1장 헌법의 기본

**제1조 (헌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형벌제도를 바로 세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범죄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범죄자의 처리에서 노동계급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

**제3조 (범죄의 미연방지원칙)** 국가는 모든 공민들이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며 범죄와의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

**제4조 (조국과 민족반역행위를 누우친 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조국과 민족을 반역한 행위를 한 자라 하더라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 (자수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수한 자에 대하여서는 관대히 용서하도록 한다.

**제6조 (형법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원칙)** 국가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제7조 (형벌적용의 원칙)** 국가는 범죄와 범죄자의 위험성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8조 (형법의 대인적 및 공간적 효력원칙)** 이 법은 범죄를 저지른 공화국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공화국 공민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외교특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한 형사책임은 그때마다 외교적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다른 나라에서 공화국을 반대하였거나 공화국 공민을 침해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9조 (시간적효력에서 불소급 및 소급원칙)**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그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형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 형법에서 범죄로 보던 행위를 이 법에서 범죄로 보지 않았거나 형벌을 낮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제2장 일반규정

### 제2절 형 벌

**제27조 (형벌의 종류)**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무기로동교화형
3. 유기로동교화형
4. 로동단련형
5. 선거권박탈형
6. 재산몰수형
7. 자격박탈형
8. 자격정지형

**제28조 (기본형벌과 부가형벌)**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은 기본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은 부가형벌이다.

**제29조 (사형)**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 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 수 없으며 임신녀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수 없다.

**제30조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집행기간에는 국민의 권리의 일부가 정지된다.

유기노동교화형기간은 1년부터 15년까지로 한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형기를 합산할 경우에도 유기노동교화형기간은 15년을 넘을수 없다.

범죄자가 구속되어있는 기간 1일은 유기노동교화형기간 1일로 계산한다.

**제31조 (노동단련형)** 노동단련형은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로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한다.

노동단련형 집행기간에는 국민의 권리가 보장된다.

노동단련형 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로 한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합산할 경우에도 노동단련형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1일을 노동단련형 기간 2일로 계산한다.

###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 제1절 반국가범죄

**제59조 (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적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자는 5년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0조 (테로죄)** 반국가 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인, 랍치하였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5년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1조 (반국가선전, 선동죄)** 반국가 목적으로 선전, 선동행위를 한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2조 (조국반역죄)**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3조 (간첩죄)** 공화국공민이 아닌자가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 수집,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4조 (파괴암해죄)** 반국가 목적으로 파괴, 암해행위를 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5조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사촉죄)**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집단을 추겼거나 자금을 대주어 공화국에 대한 무장간섭을 하게 하였거나 외교관계를 끊어버리게 하였거나 공화국과 체결한 조약을 파기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6조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공화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공화국에 체류하는 다른 나라 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한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2절 반민족범죄

**제67조 (민족반역죄)**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밑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 게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를 한자는 10년이상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8조 (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 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9조 (조선민족적대죄)**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조선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였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3절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

**제70조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1조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불신고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나 범죄자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않은 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2조 (반국가범죄에 대한 방임죄)** 반국가범죄를 저지르고있다는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1절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232조 (령공, 령해침입죄)** 다른 나라 사람이 비행기 또는 배를 몰고 허가없이 공화국령공, 령해에 들어왔거나 령공, 령해밖으로 나갔거나 지정된 항로, 비행고도를 어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3조 (비법국경출입죄)**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든 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4조 (국경출입협조죄)** 국경관리부문 일군이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를 도와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돈 또는 물건을 받고 한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5조 (항해, 어로구역 리탈죄)** 허가없이 지정된 항해구역 또는 어로구역을 리탈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45조 (대외적 권위를 훼손시킨 죄)** 공민이 다른 나라에서 공화국의 대외적권위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

1996년 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68호로 채택  
1999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2호로 수정보충

### 제1장 출입국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은 출입국제도를 강화하며 출국, 입국하는 공화국공민과 입국, 출국, 체류, 거주, 여행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출입국하는 공민과 외국인은 여권, 해외공민증, 선원증, 사증 같은 해당 출입국증명서를 가져야 한다.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미성인은 보호자의 출입국증명서에 올리고 출입국할 수 있다.

**제3조** 출입국은 정해진 출입국지점으로 한다. 국가는 대외관계발전의 요구에 맞게 출입국지점을 정하도록 한다.

**제4조** 외국인의 입출국, 체류, 거주, 여행과 관련한 수속은 본인이 한다. 공무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수속은 초청기관 또는 공화국에 주재하는 해당 나라 대표기관이 할 수 있다. 미성인의 수속은 보호자가 한다.

**제5조** 국가는 해당 공민과 외국인에게 출입국과 관련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물린다. 수수료는 중앙재정지도기관이 정한다.

**제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출입국과 관련한 사업은 외무성과 출입

국 사업기관이 한다. 공화국 영역 밖에서는 해당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 외교, 영사 대표기관이 한다.

**제7조** 국가는 호상성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 출입국분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수경제지대의 출입질서와 남조선동포, 재일 조선공민이 공화국에 오가는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 제2장 공민의 출입국

**제9조** 공민은 공무, 사사용무로 출입국할 수 있다. 출입국하려는 공민은 외무성 또는 출입국사업기관, 해당 기관을 통하여 출입국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제10조** 공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려권, 사증 발급신청은 그를 파견하는 기관이 외무성에 한다. 사사용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려권, 사증 발급신청은 본인이 거주지의 출입국사업기관에 한다.

**제11조** 공민은 출입국사업기관이 발급한 국경지역려행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나라의 국경지역으로 려행할 수 있다. 국경지역려행증명서는 정해진 국경지역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제12조** 공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국경지역려행증명서 발급신청은 그를 파견 하는 기관이, 사사용무로 출입국하려는 공민의 국경지역려행증명서 발급신청은 당사자가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한다.

**제13조** 공민은 해당 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에 출입국하여야 한다. 출입국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14조** 중앙해사감독기관이 발급한 선원증을 가진 무역선, 국제려객선 선원은 항으로 출입국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외무성을 통하여 려권, 사증수속을 하고 비행기, 열차 같은 운수수단으로 출입국할 수 있다.

**제15조** 공민은 해당 출입국증명서에 확인을 받고 출입국하여야 한다. 출입국 확인은 해당 출입국지점에서 통행검사기관이 한다.

**제16조**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공민은 공화국 외교, 령사대표기관에서 려권, 사증을 발급받거나 해외공민증에 사증수속을 하고 공화국에 오가거나 다른 나라로 려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출입국증명서를 오손시켰거나 분실한 공민은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18조** 오손되었거나 위조한 출입국증명서를 가진 자, 법기관이 출입국할 수 없다고 인정한 자는 출입국할 수 없다.

### 제3장 외국인입출국

**제19조** 외국인은 공화국 외무성, 출입국사업기관이 발급하는 사증을 받고 입출국하여야 한다. 공화국과 사증없이 다니기로 합의한 나라 공민, 공무원로 국경지역려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초청기관의 동의를 받으면 사증없이 입출국할 수 있다.

**제20조**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해당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 외교, 령사 대표기관에 사증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 공화국의 해당 초청기관에 사증발급신청을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 입국하는 외국인은 해당한 수속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입출국지점에서는 해당 출입국증명서에 통행검사기관의 확인을 받는다.

**제22조** 선원증을 가진 외국인은 사증없이 정해진 항으로 입국할 수 있다. 무역선, 국제려객선 선장은 배가 항에 도착하면 선원, 려객명단을 통행 검사기관에 내야 한다.

**제23조** 국경지역여행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은 정해진 국경지역에 입국하여야 한다. 국경지역에 입국하였다가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가려 할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관광증 발급은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 관광대표기관 또는 외교, 령사 대표기관에서 한다.

**제25조**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입국할 수 없다.

1.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한자
2. 해당 기관이 공화국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한 자
3. 전염병환자

**제26조**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증명서의 유효기간에 입출국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27조** 체류, 거주하던 외국인은 귀국할 경우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서 체류, 거주 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체류, 거주하던 외국인은 상주 외국인체류증, 외국인증을 바쳐야 한다.

**제28조** 장기체류, 거주하는 외국인은 공화국령밖으로 여행하려 할 경우 상주 외국인체류증, 외국인증을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맡겨야 한다. 출입국사업기관에 맡긴 상주외국인체류증, 외국인증은 여행이 끝나면 돌려 준다.

**제29조** 선원증을 가진 외국인은 정해진 항에서 배로 출국하여야 한다. 외무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을 통하여 시증수속을 하고 비행기, 열차 같은 운수수단으로 출국할 수 있다.

**제30조** 오손된 출입국증명서, 위조한 출입국증명서를 가졌거나 공화국의 해당 기관이 출국시킬 수 없다고 인정한 외국인은 출국시키지 않는다.

#### **제4장 외국인의 체류, 거주, 여행**

**제31조**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따라 공화국령역에서 체류, 거주, 여행할 수 있다. 외국인은 체류, 거주, 여행과 관련한 등록, 수속을 제때에 하여야 한다.

**제32조** 외국인의 체류는 단기체류와 장기체류로 나눈다. 단기체류는 입국한 날부터 6개월까지, 장기체류는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33조** 공화국령역에 입국한 외국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체류 등록을 하고 려권 또는 따로 받은 시증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증을

받지 못하고 입국한 외국인은 사증을 받은 다음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4조** 공무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등록은 해당 도(직할시)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경우에 따라 해당 국경지역 시(구역), 군 출입국사업기관도 할 수 있다. 사사용무로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등록은 해당 시(구역), 군 출입국사업기관이 한다.

**제35조**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체류목적에 따라 상주외국인체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36조**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체류등록을 하지 않는다.

1. 국회, 정부 대표단 같은 고위급대표단성원
2. 공화국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 대표기관성원과 그 가족
3. 국경지역에 입국하여 숙박하지 않고 그날로 출국하는 외국인
4. 항에 들어온 다른 나라 선원
5. 해당 기관이 정하는 외국인

**제37조**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지를 옮기려 할 경우 체류지이동승인을 받은 날부터 7일안에 이동수속을 하고 새로 체류할 지역의 출입국사업기관에 체류등록을 하여야 한다. 단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지를 옮겨도 수속을 하지 않는다.

**제38조** 외국인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화국령역에 거주할 수 있다. 거주승인을 받은 외국인은 거주할 지역의 출입국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거주등록을 한 외국인에게는 외국인증을 발급한다.



**제39조** 거주지를 옮기려는 외국인은 퇴거등록을 한 날부터 25일안에 새로 거주할 지역의 출입국사업기관에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0조** 외국인은 상주외국인체류증, 외국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0일전에 유효기간연장신청문건을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에 내야 한다. 상주외국인 체류증, 외국인증의 유효기간은 중앙출입국사업기관이 정한다.

**제41조** 외국인은 출생, 사망, 결혼, 리혼, 직업변동 같은 신분등록을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4일안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분등록신청문건과 신분등록 사유를 확인하는 문건을 해당출입국사업기관에 내야 한다.

**제42조** 공화국령역에서 려행하려는 외국인은 해당 출입국 사업기관에 신청 하여 려행증을 발급받고 려행하여야 한다. 공화국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 대표기관성원, 공화국의 초청기관일군과 동행하는 외국인은 려행증을 발급받지 않고 려행할 수 있다. 려행증발급신청은 려행을 떠나기 5일전에, 려행을 제한하는 지역으로 가려 할 경우에는 10일전에 한다.

**제43조** 외국인은 려행증에 해당 출입국사업기관의 도착, 출발 확인을 받으며 숙박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무로 려행하는 외국인의 숙박등록은 해당 숙소에, 사사용무로 려행하는 외국인의 숙박등록은 해당 기관에 한다.

**제44조** 새로 입국한 외국인은 자연재해, 질병 같은 사유로 목적지가 아닌 지역에 48시간이상 머무르는 경우 그 지역의 출입국사업기관에 도중 체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5장 제재

**제45조** 국민이 이 법을 어긴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출국, 입국을 금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46조** 외국인이 이 법을 어긴 경우에는 벌금을 물리거나 입국, 출국을 금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공화국령역 밖으로 추방하거나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47조** 제재와 관련한 신고는 외무성 또는 해당 출입국 사업기관, 법기관에 한다.



## 제 2 장

### 무국적 탈북아동 관련 조약 및 일반논평과 법령

---



#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전 문(前 文)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에게는 공동체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또는국제적양육위탁과입양을별도로규정하는아동의보호와복지에관한사회적및

법적원칙에관한선언”의 제규정, “소년법운영을위한 국제연합최소표준규칙”(베이징규칙) 및 “비상시및무력충돌시부녀자와아동의보호에관한선언”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 제 1 부

### 제 1 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

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 제 2 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3 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자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 4 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



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5 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 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 7 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 제 8 조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

하여야 한다.

### 제 9 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 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 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제 10 조

1.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그밖의 권리에 부합되는 제한에 의하여만 구속된다.

### 제 11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 협정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 제 12 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 제 13 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 제 14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 제 15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제 16 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

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17 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나. 다양한 문화적·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환 및 보급하는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다. 아동도서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라.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 18 조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19 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 제 20 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 제 21 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나.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다.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라.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마.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안에서 아동의 타국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22 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그밖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추적하는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 제 23 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 가능한 재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받을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당해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심리적·기능적 처치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다.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 제 25 조

당사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그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 제 26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능력과 주변사정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그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 제 27 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여건과 재정의 범위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제 28 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 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율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 제 29 조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  
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 30 조

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 제 31 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 제 32 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협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밖의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나.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다.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 제 33 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34 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제 35 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36 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라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 제 37 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 38 조

1.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보호 및 배려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39 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40 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 (1)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
- (2)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 (3)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 (6)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 (7)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 나.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밖의 대체방안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 제 41 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가. 당사국의 법
- 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 제 2 부

### 제 42 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 제 43 조

1. 이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

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일부터 6월이내에 실시 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월이전에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월이내에 후보자 지명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명한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알파벳순으로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선거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밖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협약 당사국 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 제 44 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가.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나. 그 후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협약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 나호에 의하여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45 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기 위하여

- 가.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밖의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밖의 권한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밖의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그밖의 권한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 다.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 라.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 제 3 부

#### 제 46 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 제 47 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 제 48 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 제 49 조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 제 50 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이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부터 4월이내에 당사국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 제 51 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발효한다.

### 제 52 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 제 53 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 제 54 조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 1-1.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PREAMBLE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Consider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Bearing in mind that the peoples of the United Nations have, in the Charter, reaffirmed their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and have determined to promote social progress and better standards of life in larger freedom,

Recognizing that the United Nations has,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proclaimed and agreed that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therei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Recalling that,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United Nations has proclaimed that childhood is entitled to special care and assistance, Convinced that the family, as the fundamental group of society and the natural environment for the growth and well-being of all its members and particularly children, should be afforded the necessary protection and assistance so that it can fully assume its responsibilities within the community,

Recognizing that the child, for the full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his or her personality, should grow up in a family environment, in an atmosphere of happiness, love and understanding,

Considering that the child should be fully prepared to live an individual life in society, and brought up in the spirit of the ideal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in particular in the spirit of peace, dignity, tolerance, freedom, equality and solidarity,

Bearing in mind that the need to extend particular care to the child has been stated in the Geneva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of 1924 and in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0 November 1959 and recogniz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particular in articles 23 and 24),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particular in article 10) and in the statutes and relevant instruments of specialized agenc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ncerned with the welfare of children,

Bearing in mind that, as indicated in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the child, by reason of his physical and mental immaturity, needs special safeguards and care, including appropriate legal protection, before as well as after birth”,

Recalling the provisions of the Declaration on Social and Legal Principles relating to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Children, with Special Reference to Foster Placement and Adoption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The Beijing Rules) ; and the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Emergency and Armed Conflict,



Recognizing that, in all countries in the world, there are children living in exceptionally difficult conditions, and that such children need special consideration,

Taking due account of the importance of the traditions and cultural values of each people for the protection and harmonious development of the chil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improving the living conditions of children in every country, in particular in the developing countries,

Have agreed as follows:

## **PART I**

### **Article 1**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Convention, a child means every human being below the age of eighteen years unless under the law applicable to the child, majority is attained earlier.

### **Article 2**

1.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and ensure the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to each child within their jurisdiction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irrespective of the child's or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ethnic or social origin, property, disability, birth or other status.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child is protected agains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or punishment on the basis of the status, activities, expressed opinions, or beliefs of the child's parents,

legal guardians, or family members.

### **Article 3**

1. In all actions concerning children, whether undertaken by public or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courts of law, administrative authorities or legislative bodies,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

2. States Parties undertake to ensure the child such protection and care as is necessary for his or her well-being, taking into account the rights and duties of his or her parents, legal guardians, or other individuals legally responsible for him or her, and, to this end, shall 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3.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the institutions, services and facilities responsible for the care or protection of children shall conform with the standards established by competent authorities,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safety, health, in the number and suitability of their staff, as well as competent supervision.

### **Article 4**

States Parties shall under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other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With regard to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tates Parties shall undertake such measures to the maximum extent of their available resources and, where needed, within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 **Article 5**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esponsibilities, rights and duties of parents or, where applicable, the members of the extended family or community as provided for by local custom, legal guardians or other persons legally responsible for the child, to provide,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evolving capacities of the child, appropriate direction and guidance in the exercise by the child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 **Article 6**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at every child has the inherent right to life.
2.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the survival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 **Article 7**

1. 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and, as far as possible,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his or her parents.
2.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se rights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 and their obligations under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in this field, in particular where the child would otherwise be stateless.

### **Article 8**

1. States Parties undertake to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to preserve his or her identity, including nationality, name and family relations as recognized by law without unlawful interference.

2. Where a child is illegally deprived of some or all of the elements of his or her identity, States Parties shall provide appropriate assistance and protection, with a view to re-establishing speedily his or her identity.

### **Article 9**

1.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a child shall not be separated from his or her parents against their will, except when competent authorities subject to judicial review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procedures, that such separation is necessary for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uch determination may be necessary in a particular case such as one involving abuse or neglect of the child by the parents, or one where the parents are living separately and a decision must be made as to the child's place of residence.

2. In any proceedings pursuant to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all interested parties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proceedings and make their views known.

3.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who is separated from one or both parents to maintain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 with both parents on a regular basis, except if it is contrary to the child's best interests.

4. Where such separation results from any action initiated by a State Party, such as the detention, imprisonment, exile, deportation or death (including death arising from any cause while the person is in the custody of the State) of one or both parents or of the child, that State Party shall, upon request, provide the parents, the child or, if appropriate, another member of the family with the essenti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whereabouts of the absent

member(s) of the family unless the provision of the information would be detrimental to the well-being of the child. States Parties shall further ensure that the submission of such a request shall of itself entail no adverse consequences for the person(s) concerned.

### **Article 10**

1.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 of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paragraph 1, applications by a child or his or her parents to enter or leave a State Party for the purpose of family reunification shall be dealt with by States Parties in a positive, humane and expeditious manner. States Parties shall further ensure that the submission of such a request shall entail no adverse consequences for the applicants and for the members of their family.

2. A child whose parents reside in different States shall have the right to maintain on a regular basis, sav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personal relations and direct contacts with both parents. Towards that end and in accordance with the obligation of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9, paragraph 1,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and his or her parents to leave any country, including their own, and to enter their own country. The right to leave any country shall be subject only to such restriction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which are necessary to protect the national security, public order (ordre public),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and are consistent with the other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nvention.

### **Article 11**

1. States Parties shall take measures to combat the illicit transfer and non-return of children abroad.

2. To this end,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the conclusion of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s or accession to existing agreements.

### **Article 12**

1. States Parties shall assure to the child who is capable of forming his or her own views the right to express those views freely in all matters affecting the child, the views of the child being given due weight in accordance with the age and maturity of the child.

2. For this purpose, the child shall in particular be provided the opportunity to be heard in any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roceedings affecting the child, either directly, or through a representative or an appropriate body,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ocedural rules of national law.

### **Article 13**

1. The child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right shall includ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f all kinds, regardless of frontiers, either orally, in writing or in print, in the form of art, or through any other media of the child's choice.

2. The exercise of this right may be subject to certain restrictions, but these shall only be such as are provided by law and are necessary:

- (a) For respect of the rights or reputations of others; or
- (b)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or of public order (ordre public), or of public health or morals.

### **Article 14**

1.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 of the child to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2.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parents and, when applicable, legal guardians, to provide direction to the child in the exercise of his or her right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evolving capacities of the child.

3. Freedom to manifest one's religion or beliefs may be subject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prescribed by law and are necessary to protect public safety, order, health or morals, or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 **Article 15**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s of the child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2. No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exercise of these rights other than those imposed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public order (*ordre public*),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or morals 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 **Article 16**

1. No child shall be subjected to arbitrary or unlawful interference with his or her privacy, family, home or correspondence, nor to unlawful attacks on his or her honour and reputation.

2. The child has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the law against such interference or attacks.

### Article 17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t function performed by the mass media and shall ensure that the child has access to information and material from a diversity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ources, especially those aimed at the promotion of his or her social, spiritual and moral well-being and physical and mental health. To this end, States Parties shall:

- (a) Encourage the mass media to disseminate information and material of social and cultural benefit to the child and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article 29;
- (b)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roduction, exchange and dissemination of such information and material from a diversity of cultur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sources;
- (c) Encourage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children's books;
- (d) Encourage the mass media to have particular regard to the linguistic needs of the child who belongs to a minority group or who is indigenous;
- (e)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appropriate guidelines for the protection of the child from information and material injurious to his or her well-being, bearing in mind the provisions of articles 13 and 18.

### Article 18

1. States Parties shall use their best efforts to ensure recognition of the principle that both parents have common responsibilities for the upbringing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Parents or, as the case may be, legal guardians,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upbringing and development of the child.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will be their basic concern.

2.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and promoting the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States Parties shall render appropriate assistance to parents and legal guardians in the performance of their child-rearing responsibilities and shall ensure the development of institutions, facilities and services for the care of children.

3.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children of working parents have the right to benefit from child-care services and facilities for which they are eligible.

### **Article 19**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social and educational measures to protect the child from all forms of physical or mental violence, injury or abuse, neglect or negligent treatment, maltreatment or exploitation, including sexual abuse, while in the care of parent(s), legal guardian(s) or any other person who has the care of the child.

2. Such protective measures should, as appropriate, include effective proced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social programmes to provide necessary support for the child and for those who have the care of the child, as well as for other forms of prevention and for identification, reporting, referral, investigation, treatment and follow-up of instances of child maltreatment described heretofore, and, as appropriate, for judicial involvement.

### **Article 20**

1. A child temporarily or permanently deprived of his or her family environment, or in whose own best interests cannot be allowed to remain in that environment, shall be entitled to special protection and assistance provided by the State.

2. States Parties shall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s ensure alternative care for such a child.

3. Such care could include, inter alia, foster placement, kafalah of Islamic law, adoption or if necessary placement in suitable institutions for the care of children. When considering solutions, due regard shall be paid to the desirability of continuity in a child's upbringing and to the child's ethnic, religious, cultural and linguistic background.

### Article 21

States Parties that recognize and/or permit the system of adoption shall ensure tha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the paramount consideration and they shall:

- (a) Ensure that the adoption of a child is authorized only by competent authorities who determin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and procedures and on the basis of all pertinent and reliable information, that the adoption is permissible in view of the child's status concerning parents, relatives and legal guardians and that, if required, the persons concerned have given their informed consent to the adoption on the basis of such counselling as may be necessary;
- (b) Recognize that inter-country adoption may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means of child's care, if the child cannot be placed in a foster or an adoptive family or cannot in any suitable manner be cared for in the child's country of origin;
- (c) Ensure that the child concerned by inter-country adoption enjoys safeguards and standards equivalent to those existing in the case of national adoption;

- (d)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in inter-country adoption, the placement does not result in improper financial gain for those involved in it;
- (e) Promote, where appropriate, the objectives of the present article by concluding bilateral or multilateral arrangements or agreements, and endeavour, within this framework, to ensure that the placement of the child in another country is carried out by competent authorities or organs.

## Article 22

1. States Partie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a child who is seeking refugee status or who is considered a refuge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international or domestic law and procedures shall, whether unaccompanied or accompanied by his or her parents or by any other person, receive appropriate protec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in the enjoyment of applicable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and in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 humanitarian instruments to which the said States are Parties.

2. For this purpose, States Parties shall provide, as they consider appropriate, co-operation in any efforts by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competent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o-operating with the United Nations to protect and assist such a child and to trace the parents or other members of the family of any refugee child in order to obtain information necessary for reunification with his or her family. In cases where no parents or other members of the family can be found, the child shall be accorded the same protection as any other child permanently or temporarily

deprived of his or her family environment for any reason, as set forth in the present Convention.

### Article 23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at a mentally or physically disabled child should enjoy a full and decent life, in conditions which ensure dignity, promote self-reliance and facilitate the child'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community.

2.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disabled child to special care and shall encourage and ensure the extension, subject to available resources, to the eligible child and those responsible for his or her care, of assistance for which application is made and which is appropriate to the child's condition and to the circumstances of the parents or others caring for the child.

3. Recognizing the special needs of a disabled child, assistance extend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whenever possible, taking into account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parents or others caring for the child, and shall be designed to ensure that the disabled child has effective access to and receives education, training, health care services, rehabilitation services, preparation for employment and recreation opportunities in a manner conducive to the child's achieving the fullest possible social integration and individual development, including his or her cultural and spiritual development

4.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in the spirit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exchange of appropriate information in the field of preventive health care and of medical, psychological and functional treatment of disabled children, including dissemination of and access to information concerning methods of rehabilitation, education and vocational services, with the aim of enabling States

Parties to improve their capabilities and skills and to widen their experience in these areas. In this regard, particular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 Article 24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child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health and to facilities for the treatment of illness and rehabilitation of health. States Parties shall strive to ensure that no child is deprived of his or her right of access to such health care services.

2. States Parties shall pursue full implementation of this right and, in particular,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 (a) To diminish infant and child mortality;
- (b) To ensure the provision of necessary medical assistance and health care to all children with emphasis on the development of primary health care;
- (c) To combat disease and malnutrition, including within the framework of primary health care, through, inter alia, the application of readily available technology and through the provision of adequate nutritious foods and clean drinking-water,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dangers and risks of environmental pollution;
- (d) To ensure appropriate pre-natal and post-natal health care for mothers;
- (e) To ensure that all segments of society, in particular parents and children, are informed, have access to education and are supported in the use of basic knowledge of child health and nutrition, the advantages of breastfeeding, hygiene and environmental sanitation and the prevention of accidents;
- (f) To develop preventive health care, guidance for parents and family

planning education and services.

3.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sures with a view to abolishing traditional practices prejudicial to the health of children.
4. States Parties undertake to promote and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a view to achieving progressively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 recognized in the present article. In this regard, particular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 **Article 25**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a child who has been plac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for the purposes of care, protection or treatment of his or her physical or mental health, to a periodic review of the treatment provided to the child and all other circumstances relevant to his or her placement.

#### **Article 26**

1. States Parties shall recognize for every child the right to benefit from social security, including social insurance, and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to achieve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right in accordance with their national law.
2. The benefits should, where appropriate, be granted, taking into account the resources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child and persons having responsibility for the maintenance of the child, as well as any other consideration relevant to an application for benefits made by or on behalf of the child.

#### **Article 27**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every child to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child's physical, mental, spiritual, moral and social development.

2. The parent(s) or others responsible for the child have the primary responsibility to secure, within their abilities and financial capacities, the conditions of living necessary for the child's development.

3. States Parties, in accordance with national conditions and within their means, shall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assist parents and others responsible for the child to implement this right and shall in case of need provide material assistance and support programmes, particularly with regard to nutrition, clothing and housing.

4.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secure the recovery of maintenance for the child from the parents or other persons having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child, both within the State Party and from abroad. In particular, where the person having financial responsibility for the child lives in a Sta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child,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the accession to international agreements or the conclusion of such agreements, as well as the making of other appropriate arrangements.

### **Article 28**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child to education, and with a view to achieving this right progressively and on the basis of equal opportunity, they shall, in particular:

- (a) Make primary education compulsory and available free to all;
- (b)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different forms of secondary education, including general and vocational education, make them available and accessible to every child,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free education and offering financial assistance in case of need;

- (c) Make higher education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capacity by every appropriate means;
  - (d) Make educational and vocational information and guidance available and accessible to all children;
  - (e) Take measures to encourage regular attendance at schools and the reduction of drop-out rates.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school discipline is administer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child's human dignity and in conformity with the present Convention.
3. States Parties shall promote and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matters relating to education, in particular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elimination of ignorance and illiteracy throughout the world and facilitating access to scientific and technical knowledge and modern teaching methods. In this regard, particular account shall be taken of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 **Article 29**

1. States Parties agree that the education of the child shall be directed to:
- (a) The development of the child's personality, talents and mental and physical abilities to their fullest potential;
  - (b) The development of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for the principles enshrin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c) The development of respect for the child's parents, his or her own cultural identity, language and values, for the national value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child is living, the country from which he or she may originate, and for civilizations different from his or her own;

(d) The preparation of the child for responsible life in a free society, in the spirit of understanding, peace, tolerance, equality of sexes, and friendship among all peoples, ethnic, national and religious groups and persons of indigenous origin;

(e) The development of respect for the natural environment.

2. No part of the present article or article 28 shall be construed so as to interfere with the liberty of individuals and bodies to establish and direct educational institutions, subject always to the observance of the principle set forth in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and to the requirements that the education given in such institutions shall conform to such minimum standards as may be laid down by the State.

### **Article 30**

In those States in which ethnic, religious or linguistic minorities or persons of indigenous origin exist, a child belonging to such a minority or who is indigenous shall not be denied the right, in community with other members of his or her group, to enjoy his or her own culture, to profess and practise his or her own religion, or to use his or her own language.

### **Article 31**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and leisure, to engage in play and recreational activities appropriate to the age of the child and to participate freely in cultural life and the arts.

2. States Parties shall respect and promote the right of the child to participate

fully in cultural and artistic life and shall encourage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and equal opportunities for cultural, artistic, recreational and leisure activity.

### **Article 32**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the child to be protected from economic exploitation and from performing any work that is likely to be hazardous or to interfere with the child's education, or to be harmful to the child's health or physical, mental, spiritual, moral or social development.

2. States Parties shall take legislative, administrative, social and educational measure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article. To this end, and having regard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States Parties shall in particular:

- (a) Provide for a minimum age or minimum ages for admission to employment;
- (b) Provide for appropriate regulation of the hour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 (c) Provide for appropriate penalties or other sanctions to ensure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present article.

### **Article 33**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including legislative, administrative, social and educational measures, to protect children from the illicit use of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as defined 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treaties, and to prevent the use of children in the illicit production and trafficking of such substances.

#### **Article 34**

States Parties undertake to protect the child from all forms of sexual exploitation and sexual abuse. For these purposes, States Parties shall in particular take all appropriate nation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measures to prevent:

- (a) The inducement or coercion of a child to engage in any unlawful sexual activity;
- (b) The exploitative use of children in prostitution or other unlawful sexual practices;
- (c) The exploitative use of children in pornographic performances and materials.

#### **Article 35**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national, bilateral and multilateral measures to prevent the abduction of, the sale of or traffic in children for any purpose or in any form.

#### **Article 36**

States Parties shall protect the child against all other forms of exploitation prejudicial to any aspects of the child's welfare.

#### **Article 37**

States Parties shall ensure that:

- (a) No child shall be subjected to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Neither capital punishment nor life imprisonment without possibility of release shall be imposed for offences committed by persons below eighteen years of age;
- (b) No child shall be deprived of his or her liberty unlawfully or arbitrarily.

The arrest, detention or imprisonment of a child shall be in conformity with the law and shall be used only as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for the shortest appropriate period of time;

- (c) Every child deprived of liberty shall be treated with humanity and respect for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and in a manner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needs of persons of his or her age. In particular, every child deprived of liberty shall be separated from adults unless it is considered in the child's best interest not to do so and shall have the right to maintain contact with his or her family through correspondence and visits, sav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 (d) Every child deprived of his or her liberty shall have the right to prompt access to legal and other appropriate assistance, as well as the right to challenge the legality of the deprivation of his or her liberty before a court or other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and to a prompt decision on any such action.

### **Article 38**

1. States Parties undertake to respect and to ensure respect for ru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pplicable to them in armed conflicts which are relevant to the child.
2.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feasible measures to ensure that persons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fifteen years do not take a direct part in hostilities.
3. States Parties shall refrain from recruiting any person who has not attained the age of fifteen years into their armed forces. In recruiting among those persons who have attained the age of fifteen years but who have not attained the age of eighteen years, States Parties shall endeavour to give priority to

those who are oldest.

4. In accordance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protect the civilian population in armed conflicts,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feasible measures to ensure protection and care of children who are affected by an armed conflict.

### **Article 39**

States Parties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promote physical and psychological recovery and social reintegration of a child victim of: any form of neglect, exploitation, or abuse; torture or any other form of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or armed conflicts. Such recovery and reintegration shall take place in an environment which fosters the health, self-respect and dignity of the child.

### **Article 40**

1. States Parties recognize the right of every child alleged as, accused of, or recognized as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to be trea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promotion of the child's sense of dignity and worth, which reinforces the child's respect for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others and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child's age and the desirability of promoting the child's reintegration and the child's assuming a constructive role in society.

2. To this end, and having regard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States Parties shall, in particular, ensure that:

- (a) No child shall be alleged as, be accused of, or recognized as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by reason of acts or omissions that were not

prohibited by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they were committed;

- (b) Every child alleged as or accused of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has at least the following guarantees:
- (i)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according to law;
  - (ii) To be informed promptly and directly of the charges against him or her, and, if appropriate, through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and to have legal or other appropriate assistance in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his or her defence;
  - (iii) To have the matter determined without delay by a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or judicial body in a fair hearing according to law, in the presence of legal or other appropriate assistance and, unless it is considered not to b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in particular, taking into account his or her age or situation,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 (iv) Not to be compelled to give testimony or to confess guilt; to examine or have examined adverse witnesses and to obtain the participation and examination of witnesses on his or her behalf under conditions of equality;
  - (v) If considered to have infringed the penal law, to have this decision and any measures imposed in consequence thereof reviewed by a higher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or judicial body according to law;
  - (vi) To have the free assistance of an interpreter if the child cannot understand or speak the language used;
  - (vii) To have his or her privacy fully respected at all stages of the

proceedings.

3. States Parties shall seek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laws, procedures,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specifically applicable to children alleged as, accused of, or recognized as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and, in particular:

- (a) The establishment of a minimum age below which children shall be presumed not to have the capacity to infringe the penal law;
- (b) Whenever appropriate and desirable, measures for dealing with such children without resorting to judicial proceedings, providing that human rights and legal safeguards are fully respected.

4. A variety of dispositions, such as care, guidance and supervision orders; counselling; probation; foster care;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programmes and other alternatives to institutional care shall be available to ensure that children are dealt with in a manner appropriate to their well-being and proportionate both to their circumstances and the offence.

#### **Article 41**

Nothing in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affect any provisions which are more conducive to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and which may be contained in:

- (a) The law of a State party; or
- (b) International law in force for that State.

## **PART II**

#### **Article 42**

States Parties undertake to make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widely known, by appropriate and active means, to adults and children alike.

### Article 43

1.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progress made by States Parties in achieving the realization of the obligations undertaken in the present Convention, there shall be established a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shall carry out the functions hereinafter provided.
2.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ten experts of high moral standing and recognized competence in the field covered by this Convention.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tates Parties from among their nationals and shall serve in their personal capacity, consideration being given to equitable geographical distribution, as well as to the principal legal systems.
3.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by secret ballot from a list of persons nominated by States Parties. Each State Party may nominate one person from among its own nationals.
4. The initial election to the Committee shall be held no later than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thereafter every second year. At least four months before the date of each election,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address a letter to States Parties inviting them to submit their nominations within two months. The Secretary-General shall subsequently prepare a list in alphabetical order of all persons thus nominated, indicating States Parties which have nominated them, and shall submit it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5. The elections shall be held at meetings of States Parties convened by the Secretary-General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At those meetings, for which



two thirds of States Parties shall constitute a quorum, the persons elected to the Committee shall be those who obtain the largest number of votes and an absolute majority of the votes of the representatives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6.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hall be elected for a term of four years. They shall be eligible for re-election if renominated. The term of five of the members elected at the first election shall expire at the end of two years; immediately after the first election, the names of these five members shall be chosen by lot by the Chairman of the meeting.

7. If a member of the Committee dies or resigns or declares that for any other cause he or she can no longer perform the duties of the Committee, the State Party which nominated the member shall appoint another expert from among its nationals to serve for the remainder of the term,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Committee.

8. The Committee shall establish its own rules of procedure.

9. The Committee shall elect its officers for a period of two years.

10.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normally be held at United Nations Headquarters or at any other convenient place as determined by the Committee. The Committee shall normally meet annually. The duration of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be determined, and reviewed, if necessary, by a meeting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nvention,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1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provide the necessary staff and facilities for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12. With the approval of the General Assembly,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established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receive emoluments from United Nations resources 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the Assembly may decide.

#### Article 44

1. States Parties undertake to submit to the Committee,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reports on the measures they have adopted which give effect to the rights recognized herein and on the progress made on the enjoyment of those rights:

(a) Within two years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the State Party concerned;

(b) Thereafter every five years.

2. Reports made under the present article shall indicate factors and difficulties, if any, affecting the degree of fulfillment of the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nvention. Reports shall also contain sufficient information to provide the Committee with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the country concerned.

3. A State Party which has submitted a comprehensive initial report to the Committee need not, in its subsequent reports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b) of the present article, repeat basic information previously provided.

4. The Committee may request from States Parties further information relevan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5. The Committee shall submit to the General Assembly, through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very two years, reports on its activities.

6. States Parties shall make their reports widely available to the public in their

own countries.

#### Article 45

In order to foste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and to encourag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covered by the Convention:

- (a) The specialized agencies,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other United Nations organs shall be entitled to be represented at the considera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such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s f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mandate. The Committee may invite the specialized agencies,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other competent bodies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 to provide expert advice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area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mandates. The Committee may invite the specialized agencies,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other United Nations organs to submit report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 areas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activities;
- (b) The Committee shall transmit, as it may consider appropriate, to the specialized agencies,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other competent bodies, any reports from States Parties that contain a request, or indicate a need, for technical advice or assistance, along with the Committee's observations and suggestions, if any, on these requests or indications;
- (c) The Committee may recommend to the General Assembly to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to undertake on its behalf studies on specific issues relating to the rights of the child;
- (d) The Committee may make sugges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based on information received pursuant to articles 44 and 45 of the present Convention. Such suggestions and general recommendations shall be transmitted to any State Party concerned and reported to the General Assembly, together with comments, if any, from States Parties.

### **PART III**

#### **Article 46**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by all States.

#### **Article 47**

The present Convention is subject to ratificatio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 **Article 48**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remain open for accession by any State. The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 **Article 49**

1.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following the date of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twen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or acceding to the Convention after the deposit of the twentie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eposit by such State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 **Article 50**

1. Any State Party may propose an amendment and file 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shall thereupon communicate the proposed amendment to States Parties, with a request that they indicate whether they favour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voting upon the proposals. In the event that, within four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communication, at least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favour such a conference,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the confere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y amendment adopted by a majority of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t the conference shall b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for approval.

2. An amendment adop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e present article shall enter into force when it has been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nd acce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States Parties.

3. When an amendment enters into force, it shall be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which have accepted it, other States Parties still being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nvention and any earlier amendments which they have accepted.

### **Article 51**

1.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receive and circulate to all States the text of reservations made by States at the time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A reservation incompatible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not be permitted.

3. Reservations may be withdrawn at any time by notification to that effect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hen inform all States. Such notification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n which it is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 **Article 52**

A State Party may denounce the present Convention by written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Denunciation becomes effective one year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 **Article 53**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s designated as the depositary of the present Convention.

#### **Article 54**

The original of the present Convention, of which the Arabic,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In witness t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e present Convention.

## 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 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 조문들에 합의한다.

### 제 1 부

#### 제 1 조

1. 모든 사람은 자결권을 가진다.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
2. 모든 사람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

의 천연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비자치지역 및 신탁통치지역의 행정책임은 맡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에 따라 자결권의 실현을 촉진하고 동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 2 부

### 제 2 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특히 입법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자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3. 개발도상국은, 인권과 국가 경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 규약에서 인정된 경제적 권리를 어느 정도까지 자국의 국민이 아닌 자에게 보장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 3 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 규정된 모든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에게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 제 4 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가가 이 규약에 따라 부여하는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그러한 권리의 본질과 양립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또한 오직 민주 사회에서의 공공복리증진의 목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제한에 의해서만, 그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 제 5 조

1.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이 규약의 어떠한 당사국에서 법률, 협정, 규칙 또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또는 현존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에 대하여는, 이 규약이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인정의 범위가 보다 협소하다는 것을 구실로 동 권리를 제한 하거나 또는 훼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 3 부

#### 제 6 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락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포함하는 근로의 권리를 인정하며, 동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근로권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제반 조치에는 개인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하에서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과 생산적인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의 지도, 훈련계획, 정책 및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 7 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a)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 (i)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특히 여성에게 대하여는 동등한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와 함께 남성이 향유하는 것보다 열등하지 아니한 근로 조건의 보장
  - (ii) 이 규약의 규정에 따른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
- (b)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
- (c) 연공서열 및 능력이외의 다른 고려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직장에서 적절한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 (d) 휴식, 여가 및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 공휴일에 대한 보수와 정기적인 유급휴일

## 제 8 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 (a) 모든 사람은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할 수 없다.
  - (b)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연합 또는 총연합을 설립하는 권리 및 총연합이 국제노동조합조직을 결성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권리
  - (c) 노동조합은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공공질서를 위하

거나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활동할 권리

- (d) 특정국가의 법률에 따라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
2. 이 조는 군인, 경찰 구성원 또는 행정관리가 전기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적인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1948년의 국제노동기구협약의 당사국이 동 협약에 규정된 보장을 저해하려는 입법조치를 취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를 저해하려는 방법으로 법률을 적용할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제 9 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 제 10 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1.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에 대하여는, 특히 가정의 성립을 위하여 그리고 가정이 부양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광범위한 보호와 지원이 부여된다. 혼인은 혼인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로운 동의하에 성립된다.
2. 임신부에게는 분만 전후의 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보호가 부여된다. 동 기간 중의 근로 임신부에게는 유급휴가 또는 적당한 사회보장의 혜택이 있는 휴가가 부여된다.
3. 가문 또는 기타 조건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어린이와 연소자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원조의 조치가 취하여 진다. 어린이와 연소자는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 보호된다. 어린이와 연소자를 도덕 또는 건강에 유해하게

나 또는 생명에 위협하거나 또는 정상적 발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노동에 고용하는 것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당사국은 또한 연령제한을 정하여 그 연령에 달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고용이 법률로 금지되고 처벌될 수 있도록 한다.

### 제 11 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그러한 취지에서 자유로운 동의에 입각한 국제적 협력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 권리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기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a) 과학·기술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고, 영양에 관한 원칙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천연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발전시키거나 개혁함으로써 식량의 생산, 보존 및 분배의 방법을 개선할 것.

(b) 식량수입국 및 식량수출국 쌍방의 문제를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세계 식량공급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것.

### 제 12 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2. 이 규약당사국이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는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 (a) 사산율과 유아사망율의 감소 및 어린이의 건강한 발육
- (b) 환경 및 산업위생의 모든 부문의 개선
- (c)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 (d) 질병 발생시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간호를 확보할 여건의 조성

### 제 13 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 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동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한다.

- (a) 초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무상 의무교육으로 실시된다.
- (b)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중등 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
- (c) 고등교육은, 모든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의하여,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된다.
- (d)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초등교육의 전기간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가능한 한 장려되고 강화된다.
- (e) 모든 단계에 있어서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적당한 연구·장학제도가 수립되며, 교직원의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법정후견인이 그들 자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이외의 학교로서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도의 교육수준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자유 및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부분도 항상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원칙을 준수하고, 그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국가가 결정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일치한다는 요건하에서, 개인과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간섭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 14 조

이 규약의 당사국이 되는 때 그 본토나 자국 관할 내에 있는 기타 영토에서 무상으로 초등의무교육을 확보할 수 없는 각 당사국은 계획상에 정해질 합리적인 연한이내에 모든 사람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원칙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2년 이내에 입안, 채택할 것을 약속한다.

#### 제 15 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의 다음 권리를 인정한다.

- (a)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 (b)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
- (c) 자기가 저작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창작품으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의 보호로부터 이익을 받을 권리

2. 이 규약의 당사국이 그러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에는 과학과 문화의 보존, 발전 및 보급에 필요한 제반조치가 포함된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자유를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4.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적 접촉의 장려와 발전 및 과학과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이 초래됨을 인정한다.

## 제 4 부

### 제 16 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준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와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이 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할 것을 약속한다.
2. (a) 모든 보고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된다. 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보고서 사본을 동 이사회에 송부한다  
(b)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연합전문기구의 회원국인 국가가 제출한 보고서 또는 보고서 내용의 일부가 전문기구의 창설규정에 따라 동 전문기구의 책임에 속하는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경우, 동보고서 사본 또는 그 내용중의 관련 부분의 사본을 동 전문기구에 송부한다.

### 제 17 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경제사회이사회가 규약당사국 및 관련 전문기구와 협의한 후, 이 규약의 발효 후 1년 이내에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자국의 보고서를 각 단계별로 제출한다.
2. 동 보고서는 이 규약상의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장애를 지적할 수 있다.
3. 이 규약의 당사국이 이미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에 관련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일한 정보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동 정보에 대한 정확한 언급으로서 족하다.

## 제 18 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분야에서의 국제연합헌장상의 책임에 따라, 전문기구가 동 기구의 활동영역에 속하는 이 규약 규정의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성취된 진전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해 전문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한 보고서에는 전문기구의 권한있는 기관이 채택한 규정의 이행에 관한 결정 및 권고의 상세를 포함할 수 있다.

## 제 19 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각국이 제출하는 인권에 관한 보고서 및 제18조에 따라 전문기구가 제출하는 인권에 관한 보고서 중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의 검토, 일반적 권고, 또는 정보를 위하여 적당한 보고서를 인권위원회에 송부할 수 있다.

## 제 20 조

이 규약의 당사국과 관련 전문기구는 제19조에 의한 일반적 권고에 대한 의견 또는 국제연합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또는 보고서에서 언급된 어떠한 문서에서도 그와 같은 일반적 권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의견을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 21 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일반적 성격의 권고를 포함하는 보고서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일반적 준수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성취된 진전사항에 관하여 이 규약의 당사국 및 전문기구로부터 입수한 정보의 개요를 수시로 총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 22 조

경제사회이사회는 이 규약의 제4부에서 언급된 보고서에서 생기는 문제로서,



국제연합의 타기관, 그 보조기관 및 기술원조의 제공에 관여하는 전문기구가 각기 그 권한내에서 이 규약의 효과적, 점진적 실시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제적 조치의 타당성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 제 23 조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국제적 조치에는 협약의 체결, 권고의 채택, 기술원조의 제공 및 관계정부와 협력하여 조직된 협의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별 회의 및 기술적 회의의 개최와 같은 방안이 포함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 제 24 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이 규약에서 취급되는 문제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여러 기관과 전문기구의 책임을 각각 명시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 및 전문기구헌장의 규정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 25 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사람이 그들의 천연적 부와 자원을 충분히, 자유로이 향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 5 부

### 제 26 조

1. 이 규약은 국제연합의 모든 회원국, 전문기구의 모든 회원국,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모든 당사국 또한 국제연합총회가 이 규약에 가입하도록 초청한

기타 모든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규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3. 이 규약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가입은 가입서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이루어진다.
5.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규약에 서명 또는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게 각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을 통보한다.

### 제 27 조

1. 이 규약은 35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2. 35번째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에 이 규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이 규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발효한다.

### 제 28 조

이 규약의 규정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없이 연방국가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 제 29 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개정안을 접수하는 대로, 각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사무총장에게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이 규약의 각 당사국에게 송부한다. 당사국 중 최소 3분의1이 당사국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총회에 제출된다.

2. 개정안은 국제연합총회의 승인을 얻고, 각기 자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이 규약당사국의 3분의 2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시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여타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규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의하여 구속된다.

### 제 30 조

제26조 제5항에 의한 통보에 관계없이, 국제연합사무총장은 동조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에 다음을 통보한다.

- (a) 제26조에 의한 서명, 비준 및 가입
- (b) 제27조에 의한 이 규약의 발효일자 및 제29조에 의한 모든 개정의 발효일자

### 제 31 조

1. 이 규약은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이며, 국제연합 문서보존소에 기탁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26조에서 언급된 모든 국가들에게 이 규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들은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일천구백육십육년 십이월 십구일 뉴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이 규약에 서명하였다.

## 2-1.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Consider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proclaimed i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recognition of the inherent dignity and of the equal and inalienable rights of all members of the human family is the foundation of freedom, justice and peace in the world,  
Recognizing that these rights derive from the inherent dignity of the human person,  
Recognizing that, in accordance with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deal of free human beings enjoying freedom from fear and want can only be achieved if conditions are created whereby everyone may enjoy hi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s well as his civil and political rights,  
Considering the obligation of States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o promote universal respect for, and observance of, human rights and freedoms,  
Realizing that the individual, having duties to other individuals and to the community to which he belongs, is under a responsibility to strive for the promotion and observance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Agree upon the following articles:

### **PART I**

#### **Article 1**

1. All peoples have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By virtue of that right they

freely determine their political status and freely pursue thei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2. All peoples may, for their own ends, freely dispose of their natural wealth and resources without prejudice to any obligations arising out of international economic co-operation, based upon the principle of mutual benefit, and international law. In no case may a people be deprived of its own means of subsistence.

3.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including those having responsibility for the administration of Non-Self-Governing and Trust Territories, shall promot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shall respect that right,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 **PART II**

### **Article 2**

1.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s to take steps, individually and through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especially economic and technical, to the maximum of its available resources, with a view to achieving progressively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by all appropriate means, including particularly the adoption of legislative measures.

2.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guarantee that the rights enunciated in the present Covenant will be exercised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as to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3. Developing countries, with due regard to human rights and their national economy, may determine to what extent they would guarantee the economic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to non-nationals.

### **Article 3**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ensure the equal right of men and women to the enjoyment of al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et forth in the present Covenant.

### **Article 4**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at, in the enjoyment of those rights provided by the State in conformity with the present Covenant, the State may subject such rights only to such limitations as are determined by law only in so far as this may be compatible with the nature of these rights and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general welfare in a democratic society.

### **Article 5**

1. Nothing in the present Covenant may be interpreted as implying for any State, group or person any right to engage in any activity or to perform any act aimed at the destruction of any of the rights or freedoms recognized herein, or at their limitation to a greater extent than is provided for in the present Covenant.

2. No restriction upon or derogation from any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recognized or existing in any country in virtue of law, conventions, regulations

or custom shall be admitted on the pretext that the present Covenant does not recognize such rights or that it recognizes them to a lesser extent.

### **PART III**

#### **Article 6**

1.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right to work, which includes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opportunity to gain his living by work which he freely chooses or accepts, and will take appropriate steps to safeguard this right.
2. The steps to be taken by a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to achieve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right shall include technical and vocational guidance and training programmes, policies and techniques to achieve stead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and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under conditions safeguarding fundamental political and economic freedoms to the individual.

#### **Article 7**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just and favourable conditions of work which ensure, in particular:

- (a) Remuneration which provides all workers, as a minimum, with:
  - (i) Fair wages and equal remuneration for work of equal value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in particular women being guaranteed conditions of work not inferior to those enjoyed by men, with equal pay for equal work;

- (ii) A decent living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 (b) Safe and healthy working conditions;
- (c) Equal opportunity for everyone to be promoted in his employment to an appropriate higher level, subject to no considerations other than those of seniority and competence;
- (d) Rest, leisure and reasonable limitation of working hours and periodic holidays with pay, as well as remuneration for public holidays

### **Article 8**

1.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ensure:
  - (a) The right of everyone to form trade unions and join the trade union of his choice, subject only to the rules of the organization concerned,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is economic and social interests. No restrictions may be placed on the exercise of this right other than those prescribed by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order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 (b) The right of trade unions to establish national federations or confederations and the right of the latter to form or join international trade-union organizations;
  - (c) The right of trade unions to function freely subject to no limitation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by law and which are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order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freedoms of others;
  - (d) The right to strike, provided that it is exercised in conformity with the



laws of the particular country.

2. This article shall not prevent the imposition of lawful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these rights by members of the armed forces or of the police or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State.

3. 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authorize States Parties to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Convention of 1948 c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ze to take legislative measures which would prejudice, or apply the law in such a manner as would prejudice, the guarantees provided for in that Convention.

#### **Article 9**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right of everyone to social security, including social insurance.

#### **Article 10**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at:

1. The widest possible protection and assistance should be accorded to the family, which is the natural and fundamental group unit of society, particularly for its establishment and while it is responsible for the care and education of dependent children. Marriage must be entered into with the free consent of the intending spouses.

2. Special protection should be accorded to mothers during a reasonable period before and after childbirth. During such period working mothers should be accorded paid leave or leave with adequate social security benefits.

3. Special measures of protection and assistance should be taken on behalf of all children and young persons without any discrimination for reasons of

parentage or other conditions. Children and young persons should be protected from economic and social exploitation. Their employment in work harmful to their morals or health or dangerous to life or likely to hamper their normal development should be punishable by law. States should also set age limits below which the paid employment of child labour should be prohibited and punishable by law.

### Article 11

1.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right of everyone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for himself and his family, including adequate food, clothing and housing, and to the continuous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The States Parties will take appropriate steps to ensure the realization of this right, recognizing to this effect the essential importance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ased on free consent.
2.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ing the fundamental right of everyone to be free from hunger, shall take, individually an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measures, including specific programmes, which are needed:
  - (a) To improve methods of production, conservation and distribution of food by making full use of technical and scientific knowledge, by disseminating knowledge of the principles of nutrition and by developing or reforming agrarian systems in such a way as to achieve the most efficient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 (b) Taking into account the problems of both food-importing and food-exporting countries, to ensure an equitable distribution of world food supplies in relation to need.

## Article 12

1.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2. The steps to be taken by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to achieve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right shall include those necessary for:
  - (a) The provision for the reduction of the stillbirth-rate and of infant mortality and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the child;
  - (b) The improvement of all aspects of environmental and industrial hygiene;
  - (c) The prevention, treatment and control of epidemic, endemic, occupational and other diseases;
  - (d) The creation of conditions which would assure to all medical service and medical attention in the event of sickness.

## Article 13

1.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right of everyone to education. They agree that education shall be directed to the full development of the human personality and the sense of its dignity, and shall strengthen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They further agree that education shall enable all persons to participate effectively in a free society, promote understanding, tolerance and friendship among all nations and all racial, ethnic or religious groups, and further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maintenance of peace.
2.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at, with a view to achieving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right:
  - (a) Primary education shall be compulsory and available free to all;

- (b) Secondary education in its different forms, including technical and vocational secondary education, shall be made generally available and accessible to all by every appropriate means, and in particular by the progressive introduction of free education;
- (c) Higher education shall be made equally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capacity, by every appropriate means, and in particular by the progressive introduction of free education;
- (d) Fundamental education shall be encouraged or intensified as far as possible for those persons who have not received or completed the whole period of their primary education;
- (e) The development of a system of schools at all levels shall be actively pursued, an adequate fellowship system shall be established, and the material conditions of teaching staff shall be continuously improved.

3.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have respect for the liberty of parents and, when applicable, legal guardians to choose for their children schools, other than those established by the public authorities, which conform to such minimum educational standards as may be laid down or approved by the State and to ensure the religious and moral education of their children in conformity with their own convictions.

4. No part of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so as to interfere with the liberty of individuals and bodies to establish and direct educational institutions, subject always to the observance of the principles set forth in paragraph I of this article and to the requirement that the education given in such institutions shall conform to such minimum standards as may be laid down by the State.

#### Article 14

Each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which, at the time of becoming a Party, has not been able to secure in its metropolitan territory or other territories under its jurisdiction compulsory primary education, free of charge, undertakes, within two years, to work out and adopt a detailed plan of action for the progressive implementation, within a reasonable number of years, to be fixed in the plan, of the principle of compulsory education free of charge for all.

#### Article 15

1.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right of everyone:
  - (a) To take part in cultural life;
  - (b) To enjoy the benefit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ts applications;
  - (c) To benefit from the protection of the moral and material interests resulting from any scientific, literary or artistic production of which he is the author.
2. The steps to be taken by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to achieve the full realization of this right shall include those necessary for the conservation, the development and the diffusion of science and culture.
3.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respect the freedom indispensable for scientific research and creative activity.
4.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recognize the benefits to be derived from the encouragement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ontacts and co-operation in the scientific and cultural fields.

## **PART IV**

### **Article 16**

1.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undertake to submit in conformity with this part of the Covenant reports on the measures which they have adopted and the progress made in achieving the observance of the rights recognized herein.

2. (a) All reports shall be submitt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who shall transmit copies to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for consid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b)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also transmit to the specialized agencies copies of the reports, or any relevant parts therefrom, from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which are also members of these specialized agencies in so far as these reports, or parts therefrom, relate to any matters which fall withi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aid agencies in accordance with their constitutional instruments.

### **Article 17**

1.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shall furnish their reports in stages, in accordance with a programme to be established by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within one year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venant after consultation with the States Parties and the specialized agencies concerned.

2. Reports may indicate factors and difficulties affecting the degree of fulfilment of obligations under the present Covenant.

3. Where relevant information has previously been furnished to the United

Nations or to any specialized agency by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it will not be necessary to reproduce that information, but a precise reference to the information so furnished will suffice.

### **Article 18**

Pursuant to its responsibilities under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y make arrangements with the specialized agencies in respect of their reporting to it on the progress made in achieving the observance of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heir activities. These reports may include particulars of decisions and recommendations on such implementation adopted by their competent organs.

### **Article 19**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y transmit to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for study and general recommendation or, as appropriate, for information the reports concerning human rights submitted by States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6 and 17, and those concerning human rights submitted by the specialized agenc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 **Article 20**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and the specialized agencies concerned may submit comments to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on any general recommendation under article 19 or reference to such general recommendation in any report of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or any documentation referred to therein.

### **Article 21**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y submit from time to time to the General Assembly reports with recommendations of a general nature and a summary of the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and the specialized agencies on the measures taken and the progress made in achieving general observance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 **Article 22**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ay bring to the attention of other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their subsidiary organs and specialized agencies concerned with furnishing technical assistance any matters arising out of the reports referred to in this part of the present Covenant which may assist such bodies in deciding, each within its field of competence, on the advisability of international measures likely to contribute to the effective progressive implementation of the present Covenant.

### **Article 23**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agree that international action for the achievement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present Covenant includes such methods as the conclusion of conventions, the adoption of recommendations, the furnishing of technical assistance and the holding of regional meetings and technical meetings for the purpose of consultation and study organized in conjunction with the Governments concerned.



#### **Article 24**

Nothing in the present Covenant shall be interpreted as impairing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the constitutions of the specialized agencies which define the respective responsibilities of the various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and of the specialized agencies in regard to the matters dealt with in the present Covenant.

#### **Article 25**

Nothing in the present Covenant shall be interpreted as impairing the inherent right of all peoples to enjoy and utilize fully and freely their natural wealth and resources.

### **PART V**

#### **Article 26**

1. The present Covenant is open for signature by any State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or member of any of its specialized agencies, by any State Party to th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by any other State which has been invi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to become a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2. The present Covenant is subject to ratificatio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3. The present Covenant shall be open to accession by any Stat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5.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States which have signed the present Covenant or acceded to it of the deposit of eac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 **Article 27**

1. The present Covenan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e thirty-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the present Covenant or acceding to it after the deposit of the thirty-fif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the present Covenant shall enter into force three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deposit of its own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instrument of accession.

#### **Article 28**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shall extend to all parts of federal States without any limitations or exceptions.

#### **Article 29**

1. Any State Party to the present Covenant may propose an amendment and file it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shall thereupon communicate any proposed amendments to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with a request that they notify him whether they favour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for the purpose of considering and voting upon the proposals. In the event that at least one third of the States Parties favours such a conference, the Secretary-General shall convene the conference under the auspices of the United Nations. Any amendment adopted by a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present and voting at the conference shall be submitted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for approval.

2. Amendments shall come into force when they have been approv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and accepted by a two-thirds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present Covenant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3. When amendments come into force they shall be binding on those States Parties which have accepted them, other States Parties still being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ovenant and any earlier amendment which they have accepted.

### **Article 30**

Irrespective of the notifications made under article 26, paragraph 5,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Stat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of the following particulars:

- (a) Signatures,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under article 26;
- (b)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present Covenant under article 27 and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any amendments under article 29.

### **Article 31**

1. The present Covenant, of which the Chinese, English, French, Russian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2.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transmit certified copies of the present Covenant to all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26.

IN FAITH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e present Covenant, opened for signature at New York, on the nineteenth day of Decembe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sixty-six.

### 3.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13\*

#### 제21차 회기 (1999)

#### 일반논평 13: 교육에 대한 권리 (제13조)

1. 교육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인권이며 다른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다. 권한부여적(empowerment) 권리로서 교육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소외된 성인과 아동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그들의 공동체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획득하게 하는 주요 수단이다. 교육은 여성에게 힘을 주고, 착취적이고 위험한 노동과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인구 증가를 통제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교육은 점차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상의 투자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중요성은 단순히 실용적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잘 교육되고 계몽된, 자유롭고 폭넓게 부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성은 인간 존재의 기쁨과 보람 중 하나이다.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은 교육에 대한 권리에 두 개의 조항, 제13조와 제14조를 할애하였다. 동 규약에서 가장 긴 규정인 제13조는 국제인권법에서 교육에 대한 권리를 다룬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조항이다. 본 위원회는 제14조에 대해 이미 일반논평 11(초등교육을 위한 행동 계획)을 채택하였다. 일반논평 11과 본 일반논평은 상호보완적이며 따라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본 위원회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 교육에 대한 권리 향유는 여전히 요원한 목표로 남아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많은 경우 이 목표가 갈수록 더 요원해지고 있다. 본 위원회는 많은 당사국에서 제13조의 완전한 이행을 방해하는 가공할 구조적 장애 및 기타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3. 당사국의 규약 이행과 보고서 제출 의무의 충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일반논평은 제13조의 규범적 내용(1장, 4-42항), 이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몇 가지(2장, 43-57항), 그리고 위반의 실례(2장, 58-59항)에 초점을 맞춘다. 3장은 당사국 이외의 행위자의 의

\* 출처: 박기갑 외 7인 번역 및 감수/국가인권위원회(편), 『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1: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6), pp. 95~115.

무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 본 일반논평은 위원회가 수년간 당사국의 보고서를 검토 하며 얻은 경험에 기초한 것이다.

## 1. 제13조의 규범적 내용

### 제13조 1항: 교육의 목적과 목표

4. 당사국은 공교육인지 사교육인지, 정규교육인지 비정규교육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교육이 제13조 1항에 밝힌 목적과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교육 목표가 유엔헌장 제1조 및 제2조에 담긴 유엔의 기본 목적 및 원칙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주목한다. 이 목표의 대부분은 세계인권선언 제26조 2항에서도 발견되는데 제13조 1항은 세 가지 측면에서 동 선언의 내용을 보강하고 있다. 즉, 교육은 인격의 “존엄성 의식”을 지향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모든 “종족” 집단 그리고 국가, 인종 및 종교 집단 사이에 이해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2항과 규약 제13조 1항에 공통되는 교육 목표 중 아마도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개발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5. 본 위원회는 1966년 총회가 규약을 채택한 이래 다른 국제 문서들도 교육이 지향하여야 할 목표를 추가로 규정하였음을 주목한다. 따라서 본 위원회는 당사국이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선언”(1990년 태국 줌티엔)(제1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9조 1항),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1장 33항 및 2장 80항) 및 “유엔 인권교육 10개년을 위한 행동계획”(2항)에 해석된 바와 같이 제13조 1항에 규정된 목적과 목표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이 요구된다는 견해이다. 이 문서들은 규약 제13조 1항에 충실히 부합하지만 양성 평등과 환경 중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등 제13조 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요소는 제13조 1항의 현대적인 해석에 내포되어 있으며 또한 이를 반영하고 있다. 본 위원회는 앞서 언급된 문서가 세계 모든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승인되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

은 견해를 확인받고 있다.<sup>1</sup>

### 제13조 2항: 교육을 받을 권리 - 몇 가지 일반적인 사항

6. 용어의 정확하고 적합한 적용은 특정 당사국의 우세적인 조건에 달려 있지만 교육은 그 모든 형태 및 모든 단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상호 연관된 필수적인 요소를 가져야 한다.<sup>2</sup>

(a) *가용성*. 당사국의 관할권 내에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이 충분한 양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하며 제대로 기능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이 기능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이들이 운영되는 개발상의 배경 등 다양한 요소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모든 기관과 프로그램은 건물 또는 자연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기타 형태의 시설, 남녀 모두를 위한 위생시설, 안전한 식수,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보수를 받는 훈련된 교사, 교육자료 등을 필요로 한다. 어떤 기관과 프로그램은 도서관, 컴퓨터 시설 및 정보기술 같은 설비도 필요로 할 수 있다.

(b) *접근성*.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은 당사국 관할권 내의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접근가능하여야 한다. 접근성은 세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부분적으로 겹치는 내용이 있다.

*비차별* - 교육은 모든 이에게, 특히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어떠한 금지된 근거에 의한 차별 없이 법률상·사실상 접근가능하여야 한다(비차별에 관한 제31-37항 참조).

*물리적 접근성* - 교육은 어떤 합리적으로 편리한 지리적 장소로의 등교(예, 동네 학교)에 의해, 혹은 현대적 기술(예, “원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안전한 물리적 거리 내에 있어야 한다.

*경제적 접근성* - 교육은 누구나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접근성이란 측면에 대해

서 제13조 2항은 초등, 중등 및 고등 교육에 대해 서로 다른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등교육은 “모든 이에게 무상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한다고 한 반면 중등 및 고등 교육에 대해서는 당사국이 무상의 교육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 **수용성** 교과과정 및 교수법 등 교육의 형태와 내용은 학생이, 그리고 적절한 경우 학부모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예, 적절하고,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양질이어야 한다.) 이는 제13조 1항에 의해 요구되는 교육의 목적과 당사국이 승인하는 최소한의 교육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제13조 3항 및 4항 참조).

(d) **적응성** 교육은 변화하는 사회와 공동체의 필요에 부응하고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여야 한다.

7. 이러한 “상호 연관된 필수적 요소”의 적절한 적용을 고려함에 있어 학생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 제13조 2항 (a): 초등교육에 대한 권리

8. 초등교육은 모든 형태 및 모든 단계의 교육에 공통된 요소인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및 적응성을 포함한다.<sup>3</sup>

9. 본 위원회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선언”으로부터 “초등교육”이라는 용어의 적절한 해석에 대한 지침을 얻는다. 동 선언은 “가정 밖에서의 아동의 기초교육의 주된 전달 체계는 초등학교 교육이다. 초등교육은 보편적이어야 하며, 모든 아동의 기초적 학습 필요가 충족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공동체의 문화, 필요 및 기회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인 학습 필요”는 이 세계선언 제1조에 정의되어 있다.<sup>4</sup> 초등교육이 기초교육과 동의어는 아니지만 양자 간에는 밀접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위원회는 “초등교육은 기초교육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다”라는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입장을 승인한다.<sup>5</sup>



10. 제13조 2항 (a)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초등교육은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이에게 무상으로 이용가능”하다. 이 두 용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규약 제14조에 대한 일반논평 11의 제6항 및 제7항에서 볼 수 있다.

### 제13조 2항 (b): 중등교육에 대한 권리

11. 중등교육은 모든 형태 및 모든 단계의 교육에 공통된 요소인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및 적응성을 포함한다.<sup>6</sup>

12. 중등교육의 내용은 당사국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기본 교육의 완성 및 평생교육과 인간개발을 위한 토대의 확립을 포함한다. 중등교육은 직업 및 고등 교육 기회를 위해 학생들을 대비시킨다.<sup>7</sup> 제13조 2항 (b)는 “다양한 형태의” 중등교육에 적용된다. 이는 중등교육이 서로 다른 사회적·문화적 환경에 있는 학생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유연한 교과과정과 다양한 전달 체계를 요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본 위원회는 정규 중등학교 제도에 상응하는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을 장려한다.

13. 제13조 2항 (b)에 따르면, 중등교육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그리고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을 통하여 모든 이에게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고 접근가능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다”는 구문은 첫째, 중등교육이 학생의 외견상 역량과 능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둘째, 중등교육이 모든 이에게 대등하게 이용가능한 방식으로 국가 전역에 공급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접근가능하다”에 대한 본 위원회의 해석은 위의 제6항을 참조하면 된다.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라는 구문은 당사국이 상이한 사회적·문화적 조건에서의 중등교육의 보급을 위하여 다양하고 혁신적인 접근법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14. “무상 교육의 점진적 도입”이 의미하는 것은 국가가 초등교육의 무상 제공을 우선 시하여야 하는 동시에 무상의 중등 및 고등교육 달성을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의

무가 있다는 것이다. “무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일반적 의견은 제 14조에 대한 일반논평 11의 제7항을 참조하시오.

## 기술 및 직업 교육

15. 기술 및 직업 교육(TVE)은 교육에 대한 권리 및 근로권(제6조 2항) 모두의 일부분을 구성한다. 제13조 2항 (b)는 TVE를 중등교육의 일부로 제시하여 TVE가 중등교육에서 차지하는 각별한 중요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제6조 2항은 TVE를 교육의 특정 단계와 연관시켜 언급하지 않고 있다. 동 조항은 TVE가 “착실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개발, 그리고 생산적인 완전 고용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는 등 보다 광범위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은 “기술 및 직업 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6조 1항) 따라서 본 위원회는 TVE가 모든 단계의 교육의 필수적 요소를 구성하고 있다는 견해이다.<sup>8</sup>

16. 기술과 노동의 세계에 대한 입문은 특정 TVE 프로그램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일반적 교육의 구성요소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기술 및 직업 교육에 관한 협약(1989)”에 따르면 TVE는 “일반적인 지식뿐 아니라 과학 기술 및 관련 과학의 교육,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생활의 다양한 부문에서의 직업에 관련된 실무기술, 노하우, 태도 및 이해의 습득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 및 단계의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진다(제1조 (a)). 이러한 견해는 특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반영되어 있다.<sup>9</sup> 이러한 방식의 이해에 따르면, TVE에 대한 권리는 다음의 측면을 포함한다.

- (a) TVE는 학생이 개인적 발전, 자립 및 취업 가능성에 보탬이 되고, 그의 가족과 공동체의 생산성 및 당사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강화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 (b) TVE는 해당 국민의 교육적, 문화적 및 사회적 배경; 다양한 경제 부문에서 필요한 기술, 지식 및 자격 수준; 그리고 직장에서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고려한다.

- (c) TVE는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이 기술, 경제, 고용, 사회 및 기타의 변화로 인하여 시대에 뒤쳐지게 된 성인을 위한 재교육을 제공한다.
- (d) 기술의 적절한 이전 및 적응을 위하여 학생, 특히 개발도상국 학생들에게 다른 국가에서 TVE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 (e) 규약의 비차별 및 평등 규정에 따라 여성, 소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년, 실업 청년, 이주노동자의 자녀, 난민, 장애인 및 기타 혜택 받지 못한 사람을 위한 TVE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 제13조 2항 (c):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

17. 고등교육은 모든 형태 및 모든 단계의 교육에 공통된 요소인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및 적응성을 포함한다.<sup>10</sup>

18. 제13조 2항 (c)는 제13조 2항 (b)와 같은 맥락에서 작성되었지만 두 규정 사이에는 세 가지 차이가 있다. 제13조 2항 (c)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나 TVE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이 두 가지 사항의 생략은 제13조 2항 (b)와 (c) 간 강조점의 차이를 나타낼 뿐이다. 고등교육은 상이한 사회적·문화적 환경에 있는 학생들의 필요에 부응하려면 유연한 교과과정, 그리고 원격교육 같은 다양한 전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있어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제13조 2항 (c)에서의 기술 및 직업 교육에 대한 언급 부재에 대해서는, 규약 제6조 2항 및 세계인권선언 제26조 1항으로 보아, TVE는 고등교육을 포함한 모든 단계의 교육의 필수적 구성요소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19. 제13조 2항 (b)와 (c)의 세 번째 차이점이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중등교육은 “모든 이에게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고 접근가능하여야 하는” 반면 고등교육은 “능력에 기초하여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접근가능하여야 한다(개방된다)”는 것이다. 제13조

2항 (c)에 따르면 고등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한 것이 아니라 “능력에 기초하여” 이용가능할 뿐이다. 개인의 “능력”은 모든 관련 있는 전문지식 및 경험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20. 제13조 2항 (b) 및 (c)의 동일한 표현(예, “무상 교육의 점진적 도입)에 대해서는 제13조 2항 (b)에 대한 상기 논평을 참조하십시오.

### 제13조 2항 (d): 기본 교육(fundamental education)에 대한 권리

21. 기본 교육은 모든 형태 및 모든 단계의 교육에 공통된 요소인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및 적응성을 포함한다.<sup>12</sup>

22. 일반적으로 기본 교육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선언”에 규정된 기초교육에 상응한다.<sup>13</sup> 제13조 2항 (d)에 의하여, “초등교육의 전 기간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마치지 못한” 개인은 기본 교육 또는 “모든 이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선언”에 규정된 기초교육(basic education)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3. 모든 사람은 위의 세계선언에서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은 “기초적인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권리를 가지므로 기본 교육에 대한 권리는 “초등교육의 전 기간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마치지 못한” 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 교육에 대한 권리는 “기초적인 학습 욕구”를 아직 충족시키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24. 기본 교육에 대한 권리의 향유는 연령이나 성별에 의하여 제한받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 권리는 아동, 청소년 및 노인을 포함하는 성인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기본 교육은 성인 교육 및 평생 교육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기본 교육은 모든 연령 집단의 권리이므로 모든 연령의 학생에게 적합한 교과과정과 전달 체계가 고안되어야 한다.

### 제13조 2항 (e): 학교 제도, 적절한 장학 제도, 교사진의 물질적 조건

25. “모든 단계의 학교 제도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당사국이 자국의 학교 제도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갖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은 모든 단계의 학교 제도를 포괄하여야 하나, 규약은 당사국이 초등교육을 우선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51항 참조).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종합적인 전략이 일정 정도로 정부의 우선순위를 차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강력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26. “적절한 장학 제도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규약의 비차별 및 평등 규정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 장학 제도는 혜택 받지 못한 집단의 개인을 위하여 교육 접근성의 평등을 증진하여야 한다.

27. 규약은 “교직원을 위한 물질적 처우는 계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최근 몇 년간 많은 당사국에서 교직원의 일반적인 근무 조건은 악화되어 왔으며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제13조 2항 (e)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학생의 교육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에 대한 중대한 장애물이다. 또한 본 위원회는 교사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포함하는 규약 제13조 2항 (e), 제2조 2항, 제3조와 제6조 내지 제8조 사이의 관계를 주목한다. 본 위원회는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와 국제노동기구(ILO) 합동의 교사의 지위에 관한 권고(1996) 및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고등교육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1997)에 대해 당사국의 주의를 얻고자 한다. 본 위원회는 모든 교직원이 그들의 역할에 걸맞는 조건과 지위를 누리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보고하도록 당사국에 촉구한다.

### 제13조 3항 및 4항: 교육의 자유에 대한 권리

28. 제13조 3항은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당사국이 학부모와 후견인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

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이다.<sup>14</sup> 본 위원회는 제13조 3항의 이 요소가 종교 및 윤리학의 일반적인 역사 같은 과목에 대한 공립학교의 수업이 의견, 양심 및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편견 없는 객관적인 방식으로 수행된다면 그러한 수업을 허용한다는 견해이다. 본 위원회는 특정 종교나 신념에 대한 수업을 포함하는 공교육은 학부모 및 후견인의 희망사항을 수용하는 비차별적 면제나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제13조 3항에 어긋난다고 본다.

29. 제13조 3항의 두 번째 요소는 학교가 “국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최소한의 교육 기준”에 부합하는 한, 학부모 및 후견인이 자녀를 위하여 공립학교 이외의 학교를 선택할 자유이다. 이는 그 교육기관이 제13조 1항에 규정된 교육목표 및 일정한 최소기준에 일치한다는 요건 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개인과 단체의 자유를 확인하는 제13조 4항의 보충적 규정과 함께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은 입학, 교과과정 및 수료증명서의 인정 같은 사항에 관계된 것일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제13조 1항에 규정된 교육목표와 일치하여야 한다.

30. 제13조 4항에 따라 타국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자유를 가진다. 이 자유는 “단체”, 즉 법인이나 실체에도 적용된다. 이는 보육원, 대학, 성인교육 기관 등 모든 종류의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권리를 포함한다. 모든 이를 위한 비차별, 기회 평등 및 사회에의 효과적인 참여의 원칙에 따라 당사국은 제13조 4항에 규정된 자유가 사회 일부 집단에 대한 교육기회의 극심한 불균형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 제13조: 널리 적용되는 특별 주제

#### 비차별 및 평등 대우

31. 규약 제2조 2항에 규정된 차별의 금지는 점진적 실현이나 자원의 가용성에 의해 제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교육의 모든 측면에 완전하고 즉각적으로 적용되며 국제적으로 금지된 모든 차별의 근거를 포괄한다. 본 위원회는 제2조 2항 및 제3조를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의 철폐에 관한 협약”의 관련 규정,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의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국제노동기구(ILO)의 1989년 “토착민 및 부족민에 관한 협약”(협약 제169호)에 비추어 해석하며, 다음 사안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한다.

32. 남성과 여성, 그리고 혜택 받지 못한 집단을 위한 사실상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잠정적 특별 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그러한 조치가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해 불평등하거나 분리된 기준을 유지하는 결과를 낳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조치를 취하게 된 목적이 달성된 후에도 지속되지 않는다면 교육에 관한 비차별권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33. 어떤 상황에서는, 제2조 2항의 구분에 의해 정의된 집단에 대한 분리된 교육제도 또는 교육기관은 규약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위원회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에 관한 협약 (1960)” 제2조를 지지한다.<sup>15</sup>

34. 본 위원회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및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에 관한 협약” 제3조 (e)를 주목하고, 비차별 원칙은 타국민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취학 연령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법적 지위에 상관없이 적용됨을 확인한다.

35. 서로 다른 지리적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 상이한 교육의 질을 야기하는 지출 정책의 심각한 불균형은 규약상 차별을 구성할 수 있다.

36. 본 위원회는 교육에 대한 권리의 측면에서 장애인의 문제를 다루는 일반논평 5의 제35항, 그리고 규약 제13조 내지 제15조와 관련하여 노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일반논평 6의 제36-42항을 확인한다.

37. 당사국은 사실상의 차별을 파악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 정책, 기관, 프로그램, 지출 형태 및 기타 관행을 포함하여 교육을 면밀하게 감독하여야 한다. 교육적 자료는 규약에서 금지된 차별의 사유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 학문적 자유 및 기관의 자율성<sup>16</sup>

38. 다수의 당사국 보고서에 대한 검토에 비추어 본 위원회는 교육에 대한 권리가 교수진과 학생의 학문적 자유를 수반할 때에만 향유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비록 이 문제가 제13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 위원회가 학문적 자유에 대해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하다. 다음 의견은 고등교육 기관에 대해 특히 주의를 기울인 것인데, 이는 본 위원회의 경험상 고등교육의 교원과 학생이 학문적 자유를 저해하는 정치적 압력 및 기타 압력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교육 부문 전반의 교원과 학생이 학문적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는 사실과 다음 의견 중 상당수는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39. 학문공동체의 구성원은 개인으로 또는 집단으로 연구, 교수, 학습, 토론, 문서 작성, 생산, 창작 또는 집필을 통하여 지식과 사상을 자유롭게 추구하고 개발하고 알릴 수 있다. 학문적 자유는 자신이 일하는 기관 또는 제도에 대한 견해를 자유로이 표현하고, 차별이나 국가 또는 기타 행위자에 의한 억압의 염려 없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고, 전문적인 또는 대표적인 학문기구에 참가하고, 같은 관할권 내에 있는 다른 개인에게 적용되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모든 인권을 누릴 자유를 포함한다. 학문적 자유의 향유는 타인의 학문적 자유를 존중할 의무, 반대 의견에 대해 공정한 토론을 보장할 의무, 어떠한 근거로도 차별 없이 모든 이를 대할 의무 등 여러 의무를 수반한다.

40. 학문적 자유의 향유는 고등교육 기관의 자율성을 요한다. 자율성은 학문적 업무, 기준, 관리 및 기타 관련 활동에 대한 고등교육 기관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자치를 말한다. 그러나 자치는 공적 회계책임의 제도, 특히 국가가 제공한 자금에 관해서는 그러한 제도에 책임성에 부합하여야 한다. 고등교육에 지원되는 상당한 액수의 공적 투자를 감안하면 기관의 자율성과 회계책임 간에 적절한 균형을 찾아



야 한다. 단일한 모델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기관의 제도는 공정하고 정당하고 공평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투명하고 참여적이어야 한다.

### 학교에서의 규율<sup>17</sup>

41. 본 위원회의 견해에서는, 체벌은 세계인권선언의 전문 및 양 규약의 전문에 규정된 국제인권법의 기본 원칙, 즉 개인의 존엄성에 위배된다.<sup>18</sup> 학교 규율의 다른 측면, 예를 들어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는 것 역시 인간 존엄성에 위배될 수 있다. 어떠한 형태의 징계도 식량권 등 규약에 규정된 다른 권리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당사국은 규약에 위배되는 징계가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떠한 공립 또는 사립 교육기관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 본 위원회는 학교로 하여금 학교 규율에 대해 “궁극적”이고 비폭력적인 접근법을 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몇몇 당사국의 조치를 환영한다.

### 제13조에 대한 제한

42. 본 위원회는 규약의 제한조항인 제4조가 국가에 의한 제한의 부과를 허용하기 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유지와 같은 이유로 대학 또는 기타 교육기관을 폐쇄하는 당사국은 제4조에 규정된 각 요소와 관련하여 그러한 중대한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할 의무를 진다.

## 2. 당사국의 의무와 위반

### 일반적 법적 의무

43. 규약은 점진적인 실현을 규정하고 가용한 자원의 한계로 인한 제약을 인정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당사국에게 즉각적인 효력의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도 하다.<sup>19</sup> 당사국은 권리가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행사”되도록 하는 “보장”(제2조 2항) 및

제13조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조치를 취할” 의무(제2조 1항) 등 교육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의무를 지닌다.<sup>20</sup> 이러한 조치는 교육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목표로 하며, 신중하고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44. 교육에 대한 권리를 시간을 두고, 즉 “점진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을 당사국의 의무에서 유의미한 내용을 모두 제거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점진적인 실현이란 당사국이 제13조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하여야 할”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의무를 지는 것을 의미한다.<sup>21</sup>

45. 규약에 선언된 다른 권리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취해지는 역행적인 조치의 허용불가능성이 강하게 추정된다. 의도적으로 역행적인 조치가 취해진 경우, 당사국은 이러한 조치가 모든 대안조치에 대해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한 후 도입된 것이며, 규약에 규정된 권리 전체를 비추어 보고, 가용자원의 최대치의 완전한 이용이라는 맥락에서 그러한 조치가 온당히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sup>22</sup>

46. 모든 인권과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권리도 당사국에 세 가지 유형 또는 단계의 의무, 즉 존중할 의무, 보호할 의무 및 실현할 의무를 부과한다. 실현할 의무는 촉진할 의무와 제공할 의무를 포함한다.

47. 존중할 의무는 당사국이 교육에 대한 권리의 향유를 방해하거나 막는 조치를 피할 것을 요구한다. 보호할 의무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제3자가 교육에 대한 권리의 향유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실현(촉진)할 의무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개인과 공동체가 교육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권리를 실현(제공)할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국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통제 밖의 사유로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 규약의 구체적인 권리를 실현(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의 범위는 항상 규약의 규정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48. 이 점에 있어, 제13조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13조는 당사국이 대부분의 경우 교육을 직접 제공할 주요한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면, 당사국은 “모든 단계의 학교 제도의 발전이 적극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다.(제13조 2항 (e)) 둘째, 제13조 2항이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기본 교육에 대해서 서로 다른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사국의 실현(제공)할 의무의 정도는 모든 교육 단계에 동일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규약에 따라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증대된 실현(제공)의 의무를 갖지만 이 의무의 범위는 모든 교육 단계에 있어 동일하지 않다. 본 위원회는 제13조와 관련하여 실현(제공)할 의무에 대해 내린 이러한 해석이 다수의 당사국의 법률 및 관행과 일치한다고 본다.

### 구체적인 법적 의무

49. 당사국은 모든 교육 제도의 단계에 있어서 교과과정이 제13조 1항에 명시된 목표를 지향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sup>23</sup> 당사국은 또한 교육이 실제로 제13조 1항에 규정된 교육목표를 지향하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50. 제13조 2항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교육에 대한 권리의 “본질적인 요소”(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적응성)를 모두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할 의무가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예시이다. 당사국은 사립학교를 폐교하지 않으므로써 교육의 이용가능성을 존중하여야 하고, 당사국은 학부모와 사용자를 포함한 제3자가 소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접근성을 보호하여야 한다. 국가는 교육이 소수자와 토착민에게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모든 사람에게 양질로 제공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교육의 수용성을 실현(촉진)하여야 하며, 당사국은 변화하는 세계에서 학생들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교과과정을 위하여 자원을 계획하고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적응성을 실현(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사국은 교실을 건립하고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수업 자료를 제공하고 교사를 훈련시키고 이들에게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보수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교 제도를 발전시킴으로

써 교육의 이용가능성을 실현(제공)하여야 한다.

5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국의 의무는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기본 교육에 있어 동일하지 않다. 제13조 2항의 표현에 따라, 당사국은 무상의 의무 초등교육 도입에 우선순위를 둘 의무가 있다.<sup>24</sup> 제13조 2항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초등교육에 우선순위를 둔 제14조에 의해 다시 강화된다. 모든 이에 대하여 초등교육을 제공할 의무는 모든 당사국의 즉각적인 의무이다.

52. 제13조 2항 (b) 내지 (d)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자국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기본 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조치를 취할”(제2조 1항) 즉각적인 의무가 있다. 최소한 당사국은 규약에 따른 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기본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는 국가 교육 전략을 채택하고 시행하도록 요구된다. 이 전략은 교육권에 대한 지표 및 기준 등 진전사항을 면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포함하여야 한다.

53. 제13조 2항 (e)에 따라 당사국은 혜택 받지 못한 집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적 장학 제도가 마련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sup>25</sup> “모든 단계의 학교 제도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의무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권리의 직접적인 제공을 확보해야 할 국가의 주요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sup>26</sup>

54. 당사국은 제13조 3항 및 4항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교육 기준”을 확립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기준을 감독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인 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제13조 3항 및 4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 자금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국가가 사립 교육기관에 재정적 기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어떠한 근거에 의한 차별 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55. 당사국은 공동체와 가정이 아동노동에 의존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본 위원회는 아동노동의 근절에 있어서의 교육의 중요성과 1999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협약 제182호)<sup>27</sup> 제7조 2항에 규정된 의무를 특별히 확인한다. 또한 제2조 2항에 따라 당사국은 소녀, 여성 및 기타 혜택 받지 못한 집단의 교육 접근

권을 방해하는 성고정관념 및 기타 고정관념을 근절할 의무가 있다.

56. 본 위원회는 일반논평 3에서 교육에 대한 권리 등 규약에 승인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한 특히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 지원과 국제협력을 통하여” 조치를 취할 모든 당사국의 의무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였다.<sup>28</sup> 규약 제2조 1항 및 제23조, 유엔헌장 제56조, “모든 이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선언” 제10조, 그리고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제1장 34항은 모두 교육에 대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국제적 지원 및 협력의 제공에 관한 당사국의 의무를 강화한다. 국제 협정의 협상 및 비준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이러한 협정이 교육에 대한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당사국은 국제 금융 기관 등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서의 활동에 있어, 교육에 대한 권리를 적절히 고려할 의무가 있다.

57. 본 위원회는 일반논평 3에서 당사국이 “가장 기초적인 교육 형태”를 포함하여 규약에 선언된 모든 권리가 “적어도 최소한의 필수적인 수준으로 충족되도록 보장할 최소 핵심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13조의 문맥에서 보면 이 핵심 의무는 다음의 의무를 포함한다. 공립 교육기관 및 공공 프로그램에의 비차별적인 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 교육이 제13조 1항에 규정된 목표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의무, 제13조 2항(a)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해 초등교육을 제공할 의무, 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기본 교육을 위한 계획을 포함하는 국가 교육 전략을 채택하고 시행할 의무, 그리고 “최소한의 교육 기준”(제13조 3항 및 4항)이 준수되는 것을 조건으로 국가 또는 제3자의 간섭 없이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보장할 의무가 그것이다.

## 위반

58. 제13조의 규범적 내용(1장)이 당사국의 일반적인, 그리고 특정의 법적 의무(2장)에 적용되는 경우, 교육에 대한 권리의 위반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는 역동적 과정이 개시된다. 제13조의 위반은 당사국의 직접적인 행위(작위)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고, 규약에 요구하고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불이행(부작위)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59. 예로써, 제13조의 위반은 다음을 포함한다. 교육의 분야에서 금지된 근거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법률을 도입하거나 이를 폐지하지 않는 것, 사실상의 교육상 차별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제13조 1항에 규정된 교육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교과과정의 이용, 제13조 1항의 준수 여부를 감시할 투명하고 효과적인 제도를 유지하지 않는 것, 최우선으로 의무 무상 초등교육을 도입하지 않는 것, 제13조 2항 (b) 내지 (d)에 따른 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기본 교육의 점진적인 실현을 위하여 이를 “목표로 하며,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사립 교육기관의 금지, 사립 교육기관이 제13조 3항 및 4항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 기준”에 따르도록 보장하지 않는 것, 교원 및 학생의 학문적 자유에 대한 부정, 그리고 제4조를 준수하지 아니한, 정치적 긴장 시기의 교육기관의 폐쇄를 들 수 있다.

### 3. 당사국 이외의 행위자의 의무

60. 규약 제22조에 따라, 유엔개발원조체제(UNDAF)를 통한 국가 차원의 기관을 포함하는 유엔 기구의 역할은 제13조의 실현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는 모든 행위자 사이에 긴밀함과 상호작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육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위한 조정된 노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유엔개발계획,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노동기구(ILO), 세계은행, 지역 개발 은행, 국제통화기금 및 유엔 체제 내의 다른 관련 기구는 각자의 개별적인 임무를 존중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국가 차원에서의 교육에 대한 권리의 이행을 위해 협력을 증진하여야 한다. 특히,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금융 기관은 대출 정책, 신용 협정, 구조조정 프로그램 및 부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조치에 있어 교육에 대한 권리의 보호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sup>29</sup> 본 위원회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검토함에 있어 당사국 이외의 모든 행위자가 제공한 조력이 제13조의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 당사국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이다. 유엔 전문기관, 프로그램 및 기구에 의한 인권적 접근법의 채택은 교육에 대한 권리의 이행을 상당히 촉진할 것이다.

주(註)

- <sup>1</sup> “모든 이를 위한 교육에 관한 세계선언”은 155개국 정부대표단에 의해 채택되었다.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은 171개국 정부대표단에 의해 채택되었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191개 당사국이 비준하거나 가입하였으며, “유엔 인권교육 10개년을 위한 행동계획”은 유엔총회 결의(49/184)에 의해 합의로 채택되었다.
- <sup>2</sup> 이러한 접근법은 본 위원회가 적절한 주거 및 식량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채택한 분석틀 및 교육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보고에 상응하는 것이다. 본 위원회는 일반논평 4에서 적절한 주거에 관한 요소로서 “이용가능성”, “경제적 부담가능성”, “접근성” 및 “문화적 적합성” 등 다수의 요소를 확인하였다. 일반논평 12에서, 본 위원회는 “이용가능성”, “수용성” 및 “접근성” 등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의 요소를 확인하였다. 교육에 대한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은 인권위원회에 대한 예비 보고서에서 “초등학교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필수적인 요소, 즉 이용가능성, 접근성, 수용성 및 적응성”을 제시하였다(E/CN.4/1999/49, 제50항).
- <sup>3</sup> 제6항 참조.
- <sup>4</sup> 동 선언은 “기초적인 학습 필요”를 “인간이 생존하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개발하고, 인간답게 일하고 살며, 사회 발전에 충분히 참여하고,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학습을 계속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학습 도구(읽고 쓰는 능력, 구두표현능력, 수리적 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및 기본적인 학습 내용(지식, 기술, 가치, 태도 등)으로 정의한다(제1조).
- <sup>5</sup> Advocacy Kit, 기초 교육, 1999(유엔아동기금), 1절 1쪽.
- <sup>6</sup> 제6항 참조.
- <sup>7</sup> 국제표준교육분류, 1997,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52항.
- <sup>8</sup> 이 견해는 국제노동기구의 1975년 “인적자원개발협약”(협약 제142호) 및 1962년 “사회정책(기본 목적 및 기준)에 관한 협약”(협약 제117호)에도 반영되어 있다.
- <sup>9</sup> 위 각주 8 참조.
- <sup>10</sup> 제6항 참조.
- <sup>11</sup> 제15항 참조.
- <sup>12</sup> 제6항 참조.

<sup>13</sup> 9항 참조.

<sup>14</sup> 이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8조 4항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며, 동 규약 제18조 1항에 규정된 종교 또는 신념을 가르칠 자유와도 관련된다(동 규약 제18조에 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22(제 48차 회기, 1993) 참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는 동 규약 제18조의 근본적인 성격은 이 규정이 동 규약 제4조 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공 비상사태의 경우에도 유예될 수 없다는 사실에 반영되어 있다.

<sup>15</sup> 제2조에 따르면,

“당사국 내에서 허용되는 경우, 다음의 상황은 본 규약 제1조의 의미 내에서 차별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a)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동일한 기준의 자격을 가진 교사진, 그리고 동일한 질의 학교 건물과 부지 및 설비를 제공하며, 동일하거나 동등한 강좌를 수강할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남학생 및 여학생을 위해 개별적인 교육 체계 또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

(b) 그 교육 체계 또는 기관에의 참가 여부가 선택 가능한 경우, 그리고 제공되는 교육이 관계 당국이 동일한 단계의 교육에 대해 규정하거나 승인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학생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희망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별개의 교육 체계 또는 기관을 종교적 또는 언어적 이유로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

(c) 그 교육기관의 목적이 어떠한 집단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적 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교육시설 이외의 교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 경우, 그 교육기관이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는 경우, 그리고 제공되는 교육이 관계 당국이 동일한 단계의 교육에 대해 규정하거나 승인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사립 교육기관의 설립 또는 유지

<sup>16</sup>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의 고등교육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1997) 참조.

<sup>17</sup> 본 항을 작성함에 있어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 2항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의 해석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해석 등 국제 인권 체제의 다른 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는 관행에 주목하였다.



- <sup>18</sup> 본 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제26조 2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작성자는 인격의 존엄성을 모든 교육이 지향하여야 하는 의무적 목표 중 하나로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음을 주목한다(제13조 1항).
- <sup>19</sup> 본 위원회 일반논평 3의 제1항 참조.
- <sup>20</sup> 본 위원회 일반논평 3의 제2항 참조.
- <sup>21</sup> 본 위원회 일반논평 3의 제9항 참조.
- <sup>22</sup> 본 위원회 일반논평 3의 제9항 참조.
- <sup>23</sup> 이에 관해서는, 당사국에 도움이 되는 다수의 자료가 있으며 그 중 하나는 유엔교육 과학문화기구의 “국제적인 교육에 있어서의 교과과정 및 교과서를 위한 지침”(ED/ECS/HCI)이다. 제13조 1항의 목표 중 하나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러한 특정한 맥락에서 당사국은 유엔 인권교육 10개년의 틀 안에서 개발된 이니셔티브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중 특히 유용한 것은 1996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인권교육 10개년을 위한 행동계획, 그리고 당사국이 유엔 인권교육 10개년을 위한 행동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인권고등판무관이 개발한 “인권교육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위한 지침”이다.
- <sup>24</sup> “의무적” 및 “무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14조에 대한 일반논평 11의 6항과 7항을 참조.
- <sup>25</sup> 적절한 경우, 이러한 장학제도는 제2조 1항에 규정된 국제 지원 및 국제협력의 대상으로 매우 적절할 것이다.
- <sup>26</sup> 기초교육의 맥락에서 유엔아동기금은 “오직 국가만이 모든 구성요소를 일관되면서 유연한 교육 제도로 통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유엔아동기금, 세계 아동의 현황, 1999, “교육혁명”, 77쪽).
- <sup>27</sup> 제7조 2항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아동노동을 근절함에 있어서 교육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c)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서 벗어난 모든 아동을 위하여 무상의 기초교육 및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직업 훈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1999)
- <sup>28</sup> 본 위원회 일반논평 3의 제13항 및 제14항 참조.
- <sup>29</sup> 본 위원회 일반논평 2의 제9항 참조.

# 3-1.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3

UNITED  
NATIONS

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Distr.  
GENERAL

E/C.12/1999/10  
8 December 1999

Original: ENGLISH

---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wenty-first session  
15 November-3 December 1999

##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3 (Twenty-first session, 1999)

### The right to education (article 13 of the Covenant)

1. Education is both a human right in itself and an indispensable means of realizing other human rights. As an empowerment right, education is the primary vehicle by which economically and socially marginalized adults and children can lift themselves out of poverty and obtain the means to participate fully in their communities. Education has a vital role in empowering women, safeguarding children from exploitative and hazardous labour and sexual exploitation, promot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controlling population growth. Increasingly, education is recognized as one of the best financial investments States can make. But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s not just practical: a well-educated, enlightened and active mind, able to wander freely and widely, is one of the joys and rewards of human existence.

2.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devotes two articles to the right to education, articles 13 and 14. Article 13, the longest provision in the Covenant, is the most wide-ranging and comprehensive article on the right to education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Committee has already adopted General Comment 11 on article 14 (plans of action for primary education); General Comment 11 and the present general comment are complementary and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The Committee is aware that for millions of people throughout the world,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education remains a distant goal. Moreover, in many cases, this goal is becoming increasingly remote. The Committee is also conscious of the formidable structural and other obstacles impeding the full implementation of article 13 in many States parties.

GE.99-46216 (E)

3. With a view to assisting States parties' implementation of the Covenant and the fulfilment of their reporting obligations, this general comment focuses on the normative content of article 13 (Part I, paras. 4-42), some of the obligations arising from it (Part II, paras. 43-57), and some illustrative violations (Part II, paras. 58-59). Part III briefly remarks upon the obligations of actors other than States parties. The general comment is based upon the Committee's experience in examining States parties, reports over many years.

## I. NORMATIVE CONTENT OF ARTICLE 13

### Article 13 (1): Aims and objectives of education

4. States parties agree that all education, whether public or private, formal or non-formal, shall be directed towards the aims and objectives identified in article 13 (1). The Committee notes that these educational objectives reflect the fundamental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as enshrined in Articles 1 and 2 of the Charter. For the most part, they are also found in article 26 (2)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lthough article 13 (1) adds to the Declaration in three respects: education shall be directed to the human personality's "sense of dignity", it shall "enable all persons to participate effectively in a free society", and it shall promote understanding among all "ethnic" groups, as well as nations and racial and religious groups. Of those educational objectives which are common to article 26 (2)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rticle 13 (1) of the Covenant, perhaps the most fundamental is that "education shall be directed to the full development of the human personality".

5. The Committee notes that since the General Assembly adopted the Covenant in 1966,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have further elaborated the objectives to which education should be directed. Accordingly, the Committee takes the view that States parties are required to ensure that education conforms to the aims and objectives identified in article 13 (1), as interpreted in the light of the 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 (Jomtien, Thailand, 1990) (art. 1),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 29 (1)),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Part I, para. 33 and Part II, para. 80), and the Plan of Action for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para. 2). While all these texts closely correspond to article 13 (1) of the Covenant, they also include elements which are not expressly provided for in article 13 (1), such as specific references to gender equality and respect for the environment. These new elements are implicit in, and reflect a contemporary interpretation of article 13 (1). The Committee obtains support for this point of view from the widespread endorsement that the previously mentioned texts have received from all regions of the world.<sup>1</sup>

### Article 13 (2): The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 some general remarks

6. While the precise and appropriate application of the terms will depend upon the conditions prevailing in a particular State party, education in all its forms and at all levels shall exhibit the following interrelated and essential features:<sup>2</sup>

(a) Availability - functioning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rogrammes have to be available in sufficient quantity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party. What they require to function depends upon numerous factors, including the developmental context within which they

operate; for example, all institutions and programmes are likely to require buildings or other protection from the elements, sanitation facilities for both sexes, safe drinking water, trained teachers receiving domestically competitive salaries, teaching materials, and so on; while some will also require facilities such as a library, computer facilities and information technology;

(b) Accessibility -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rogrammes have to be accessible to everyone, without discrimination,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party. Accessibility has three overlapping dimensions:

- (i) Non-discrimination - education must be accessible to all, especially the most vulnerable groups, in law and fact, without discrimination on any of the prohibited grounds (see paras. 31-37 on non-discrimination);
- (ii) Physical accessibility - education has to be within safe physical reach, either by attendance at some reasonably convenient geographic location (e.g. a neighbourhood school) or via modern technology (e.g. access to a “distance learning” programme);
- (iii) Economic accessibility - education has to be affordable to all. This dimension of accessibility is subject to the differential wording of article 13 (2) in relation to primary,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whereas primary education shall be available “free to all”, States parties are required to progressively introduce free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c) Acceptability - the form and substance of education, including curricula and teaching methods, have to be acceptable (e.g. relevant, culturally appropriate and of good quality) to students and, in appropriate cases, parents; this is subject to the educational objectives required by article 13 (1) and such minimum educational standards as may be approved by the State (see art. 13 (3) and (4));

(d) Adaptability - education has to be flexible so it can adapt to the needs of changing societies and communities and respond to the needs of students within their diverse social and cultural settings.

7. When considering the appropriate application of these “interrelated and essential features” the best interests of the student 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

#### Article 13 (2) (a): The right to primary education

8. Primary education includes the elements of availability, accessibility, acceptability and adaptability which are common to education in all its forms and at all levels.<sup>3</sup>

9. The Committee obtains guidance on the proper interpretation of the term “primary education” from the 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 which states: “The main delivery system for the basic education of children outside the family is primary schooling. Primary education must be universal, ensure that the basic learning needs of all children are satisfied, and

take into account the culture, needs and opportunities of the community” (art. 5). “[B]asic learning needs” are defined in article 1 of the World Declaration.<sup>4</sup> While primary education is not synonymous with basic education, there is a close correspondence between the two.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endorses the position taken by UNICEF: “Primary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component of basic education.”<sup>5</sup>

10. As formulated in article 13 (2) (a), primary education has two distinctive features: it is “compulsory” and “available free to all”. For the Committee’s observations on both terms, see paragraphs 6 and 7 of General Comment 11 on article 14 of the Covenant.

#### Article 13 (2) (b): The right to secondary education

11. Secondary education includes the elements of availability, accessibility, acceptability and adaptability which are common to education in all its forms and at all levels.<sup>6</sup>

12. While the content of secondary education will vary among States parties and over time, it includes completion of basic education and consolidation of the foundations for life-long learning and human development. It prepares students for vocational and higher educational opportunities.<sup>7</sup> Article 13 (2) (b) applies to secondary education “in its different forms”, thereby recognizing that secondary education demands flexible curricula and varied delivery systems to respond to the needs of students in different social and cultural settings. The Committee encourages “alternative” educational programmes which parallel regular secondary school systems.

13. According to article 13 (2) (b), secondary education “shall be made generally available and accessible to all by every appropriate means, and in particular by the progressive introduction of free education”. The phrase “generally available” signifies, firstly, that secondary education is not dependent on a student’s apparent capacity or ability and, secondly, that secondary education will be distributed throughout the State in such a way that it is available on the same basis to all. For the Committee’s interpretation of “accessible”, see paragraph 6 above. The phrase “every appropriate means” reinforces the point that States parties should adopt varied and innovative approaches to the delivery of secondary education in different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14. “[P]rogressive introduction of free education” means that while States must prioritize the provision of free primary education, they also have an obligation to take concrete steps towards achieving free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For the Committee’s general observations on the meaning of the word “free”, see paragraph 7 of General Comment 11 on article 14.

####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15.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TVE) forms part of both the right to education and the right to work (art. 6 (2)). Article 13 (2) (b) presents TVE as part of secondary education, reflecting the particular importance of TVE at this level of education. Article 6 (2), however, does not refer to TVE in relation to a specific level of education; it comprehends that TVE has a wider role, helping “to achieve stead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and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ls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states that

“[t]echnical and professional education shall be made generally available” (art. 26 (1)). Accordingly, the Committee takes the view that TVE forms an integral element of all levels of education.<sup>8</sup>

16. An introduction to technology and to the world of work should not be confined to specific TVE programmes but should be understood as a component of gener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UNESCO Convention on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1989), TVE consists of “all forms and levels of the educational process involving, in addition to general knowledge, the study of technologies and related sciences and the acquisition of practical skills, know-how, attitudes and understanding relating to occupations in the various sectors of economic and social life” (art. 1 (a)). This view is also reflected in certain ILO Conventions.<sup>9</sup> Understood in this way, the right to TVE includes the following aspects:

(a) It enables students to acquire knowledge and skills which contribute to their personal development, self-reliance and employability and enhances the productivity of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including the State party’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 It takes account of the educational, cultural and social background of the population concerned; the skills, knowledge and levels of qualification needed in the various sectors of the economy; and occupational health, safety and welfare;

(c) Provides retraining for adults whose current knowledge and skills have become obsolete owing to technological, economic, employment, social or other changes;

(d) It consists of programmes which give students, especially those from developing countries, the opportunity to receive TVE in other States, with a view to the appropriate transfer and adaptation of technology;

(e) It consists, in the context of the Covenant’s 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provisions, of programmes which promote the TVE of women, girls, out-of-school youth, unemployed youth, the children of migrant workers, refugees,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ther disadvantaged groups.

Article 13 (2) (c): The right to higher education

17. Higher education includes the elements of availability, accessibility, acceptability and adaptability which are common to education in all its forms at all levels.<sup>10</sup>

18. While article 13 (2) (c) is formulated on the same lines as article 13 (2) (b), there are thre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rovisions. Article 13 (2) (c) does not include a reference to either education “in its different forms” or specifically to TVE. In the Committee’s opinion, these two omissions reflect only a difference of emphasis between article 13 (2) (b) and (c). If higher education is to respond to the needs of students in different social and cultural settings, it must have flexible curricula and varied delivery systems, such as distance learning; in practice, therefore, both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have to be available “in different forms”. As for

the lack of reference in article 13 (2) (c) to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given article 6 (2) of the Covenant and article 26 (1)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TVE forms an integral component of all levels of education, including higher education.<sup>11</sup>

19. The third and mos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rticle 13 (2) (b) and (c) is that while secondary education “shall be made generally available and accessible to all”, higher education “shall be made equally accessible to all, on the basis of capacity”. According to article 13 (2) (c), higher education is not to be “generally available”, but only available “on the basis of capacity”. The “capacity” of individuals should be assessed by reference to all their relevant expertise and experience.

20. So far as the wording of article 13 (2) (b) and (c) is the same (e.g. “the progressive introduction of free education”), see the previous comments on article 13 (2) (b).

Article 13 (2) (d): The right to fundamental education

21. Fundamental education includes the elements of availability, accessibility, acceptability and adaptability which are common to education in all its forms and at all levels.<sup>12</sup>

22. In general terms, fundamental education corresponds to basic education as set out in the 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sup>13</sup> By virtue of article 13 (2) (d), individuals “who have not received or completed the whole period of their primary education” have a right to fundamental education, or basic education as defined in the 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

23. Since everyone has the right to the satisfaction of their “basic learning needs” as understood by the World Declaration, the right to fundamental education is not confined to those “who have not received or completed the whole period of their primary education”. The right to fundamental education extends to all those who have not yet satisfied their “basic learning needs”.

24.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enjoyment of the right to fundamental education is not limited by age or gender; it extends to children, youth and adults, including older persons. Fundamental education, therefore, is an integral component of adult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Because fundamental education is a right of all age groups, curricula and delivery systems must be devised which are suitable for students of all ages.

Article 13 (2) (e): A school system; adequate fellowship system; material conditions of teaching staff

25. The requirement that the “development of a system of schools at all levels shall be actively pursued” means that a State party is obliged to have an overall developmental strategy for its school system. The strategy must encompass schooling at all levels, but the Covenant requires States parties to prioritize primary education (see para. 51). “[A]ctively pursued” suggests that the overall strategy should attract a degree of governmental priority and, in any event, must be implemented with vigour.

26. The requirement that “an adequate fellowship system shall be established” should be read with the Covenant’s non-discrimination and equality provisions; the fellowship system should enhance equality of educational access for individuals from disadvantaged groups.

27. While the Covenant requires that “the material conditions of teaching staff shall be continuously improved”, in practice the general working conditions of teachers have deteriorated, and reached unacceptably low levels, in many States parties in recent years. Not only is this inconsistent with article 13 (2) (e), but it is also a major obstacle to the full realization of students’ right to education. The Committee also notes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s 13 (2) (e), 2 (2), 3 and 6-8 of the Covenant, including the right of teachers to organize and bargain collectively; draws the attention of States parties to the joint UNESCO-ILO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eachers (1966) and the 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Higher-Education Teaching Personnel (1997); and urges States parties to report on measures they are taking to ensure that all teaching staff enjoy the conditions and status commensurate with their role.

#### Article 13 (3) and (4): The right to educational freedom

28. Article 13 (3) has two elements, one of which is that States parties undertake to respect the liberty of parents and guardians to ensure the religious and moral education of their children in conformity with their own convictions.<sup>14</sup> The Committee is of the view that this element of article 13 (3) permits public school instruction in subjects such as the general history of religions and ethics if it is given in an unbiased and objective way, respectful of the freedoms of opinion, conscience and expression. It notes that public education that includes instruction in a particular religion or belief is inconsistent with article 13 (3) unless provision is made for non-discriminatory exemptions or alternatives that would accommodate the wishes of parents and guardians.

29. The second element of article 13 (3) is the liberty of parents and guardians to choose other than public schools for their children, provided the schools conform to “such minimum educational standards as may be laid down or approved by the State”. This has to be read with the complementary provision, article 13 (4), which affirms “the liberty of individuals and bodies to establish and direct educational institutions”, provided the institutions conform to the educational objectives set out in article 13 (1) and certain minimum standards. These minimum standards may relate to issues such as admission, curricula and the recognition of certificates. In their turn, these standards must be consistent with the educational objectives set out in article 13 (1).

30. Under article 13 (4), everyone, including non-nationals, has the liberty to establish and direct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liberty also extends to “bodies”, i.e. legal persons or entities. It includes the right to establish and direct all type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ncluding nurseries, universities and institutions for adult education. Given the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equal opportunity and effective participation in society for all, the State has an obligation to ensure that the liberty set out in article 13 (4) does not lead to extreme disparities of educational opportunity for some groups in society.



Article 13: Special topics of broad application

Non-discrimination and equal treatment

31. The prohibition against discrimination enshrined in article 2 (2) of the Covenant is subject to neither progressive realization nor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it applies fully and immediately to all aspects of education and encompasses all internationally prohibited grounds of discrimination. The Committee interprets articles 2 (2) and 3 in the light of the UNESCO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ILO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1989 (Convention No. 169), and wishes to draw particular attention to the following issues.

32. The adoption of temporary special measures intended to bring about de facto equality for men and women and for disadvantaged groups is not a violation of the right to non-discrimination with regard to education, so long as such measures do not lead to the maintenance of unequal or separate standards for different groups, and provided they are not continued after the objectives for which they were taken have been achieved.

33. In some circumstances, separate educational systems or institutions for groups defined by the categories in article 2 (2) shall be deemed not to constitute a breach of the Covenant. In this regard, the Committee affirms article 2 of the UNESCO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1960).<sup>15</sup>

34. The Committee takes note of article 2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article 3 (e) of the UNESCO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and confirms that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extends to all persons of school age residing in the territory of a State party, including non-nationals, and irrespective of their legal status.

35. Sharp disparities in spending policies that result in differing qualities of education for persons residing in different geographic locations may constitute discrimination under the Covenant.

36. The Committee affirms paragraph 35 of its General Comment 5, which addresses the issu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the context of the right to education, and paragraphs 36-42 of its General Comment 6, which address the issue of older persons in relation to articles 13-15 of the Covenant.

37. States parties must closely monitor education - including all relevant policies, institutions, programmes, spending patterns and other practices - so as to identify and take measures to redress any de facto discrimination. Educational data should be disaggregated by the prohibited grounds of discrimination.

Academic freedom and institutional autonomy<sup>16</sup>

38. In the light of its examination of numerous States parties' reports, the Committee has formed the view that the right to education can only be enjoyed if accompanied by the academic freedom of staff and students. Accordingly, even though the issue is not explicitly mentioned in article 13, it is appropriate and necessary for the Committee to make some observations about academic freedom. The following remarks give particular attention to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because, in the Committee's experience, staff and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are especially vulnerable to political and other pressures which undermine academic freedom. The Committee wishes to emphasize, however, that staff and students throughout the education sector are entitled to academic freedom and many of the following observations have general application.

39. Members of the academic community, individually or collectively, are free to pursue, develop and transmit knowledge and ideas, through research, teaching, study, discussion, documentation, production, creation or writing. Academic freedom includes the liberty of individuals to express freely opinions about the institution or system in which they work, to fulfil their functions without discrimination or fear of repression by the State or any other actor, to participate in professional or representative academic bodies, and to enjoy all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pplicable to other individuals in the same jurisdiction. The enjoyment of academic freedom carries with it obligations, such as the duty to respect the academic freedom of others, to ensure the fair discussion of contrary views, and to treat all without discrimination on any of the prohibited grounds.

40. The enjoyment of academic freedom requires the autonomy of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Autonomy is that degree of self-governance necessary for effective decision-making by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relation to their academic work, standards, management and related activities. Self-governance, however, must be consistent with systems of public accountability, especially in respect of funding provided by the State. Given the substantial public investments made in higher education, an appropriate balance has to be struck between institution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While there is no single model, institutional arrangements should be fair, just and equitable, and as transparent and participatory as possible.

Discipline in schools<sup>17</sup>

41. In the Committee's view, corporal punishment is inconsistent with the fundamental guiding principl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enshrined in the Preambles 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both Covenants: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sup>18</sup> Other aspects of school discipline may also be inconsistent with human dignity, such as public humiliation. Nor should any form of discipline breach other rights under the Covenant, such as the right to food. A State party is required to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discipline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e Covenant does not occur in any public or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 within its jurisdiction. The Committee welcomes initiatives taken by some States parties which actively encourage schools to introduce "positive", non-violent approaches to school discipline.

Limitations on article 13

42. The Committee wishes to emphasize that the Covenant's limitations clause, article 4, is primarily intended to be protective of the rights of individuals rather than permissive of the imposition of limitations by the State. Consequently, a State party which closes a university or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 on grounds such as national security or the preservation of public order has the burden of justifying such a serious measure in relation to each of the elements identified in article 4.

II. STATES PARTIES' OBLIGATIONS AND VIOLATIONS

General legal obligations

43. While the Covenant provides for progressive realization and acknowledges the constraints due to the limits of available resources, it also imposes on States parties various obligations which are of immediate effect.<sup>19</sup> States parties have immediate obligations in relation to the right to education, such as the "guarantee" that the right "will be exercised without discrimination of any kind" (art.2 (2)) and the obligation "to take steps" (art. 2 (1)) towards the full realization of article 13.<sup>20</sup> Such steps must be "deliberate, concrete and targeted" towards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44.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over time, that is "progressively",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depriving States parties' obligations of all meaningful content. Progressive realization means that States parties have a specific and continuing obligation "to move as expeditiously and effectively as possible" towards the full realization of article 13.<sup>21</sup>

45. There is a strong presumption of impermissibility of any retrogressive measures taken in relation to the right to education, as well as other rights enunciated in the Covenant. If any deliberately retrogressive measures are taken, the State party has the burden of proving that they have been introduced after the most careful consideration of all alternatives and that they are fully justified by reference to the totality of the rights provided for in the Covenant and in the context of the full use of the State party's maximum available resources.<sup>22</sup>

46. The right to education, like all human rights, imposes three types or levels of obligations on States parties: the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In turn, the obligation to fulfil incorporates both an obligation to facilitate and an obligation to provide.

47. The obligation to respect requires States parties to avoid measures that hinder or prevent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education. The obligation to protect requires States parties to take measures that prevent third parties from interfering with the enjoyment of the right to education. The obligation to fulfil (facilitate) requires States to take positive measures that enable and assist individuals and communities to enjoy the right to education. Finally, States parties have an obligation to fulfil (provide) the right to education. As a general rule, States parties are obliged to fulfil (provide) a specific right in the Covenant when an individual or group is unable, for reasons beyond their control, to realize the right themselves by the means at their disposal. However, the extent of this obligation is always subject to the text of the Covenant.

48. In this respect, two features of article 13 require emphasis. First, it is clear that article 13 regards States as having principal responsibility for the direct provision of education in most circumstances; States parties recognize, for example, that the “development of a system of schools at all levels shall be actively pursued” (art. 13 (2) (e)). Secondly, given the differential wording of article 13 (2) in relation to primary, secondary, higher and fundamental education, the parameters of a State party's obligation to fulfil (provide) are not the same for all levels of education. Accordingly, in light of the text of the Covenant, States parties have an enhanced obligation to fulfil (provide) regarding the right to education, but the extent of this obligation is not uniform for all levels of education. The Committee observes that this interpretation of the obligation to fulfil (provide) in relation to article 13 coincides with the law and practice of numerous States parties.

#### Specific legal obligations

49. States parties are required to ensure that curricula, for all levels of the educational system, are directed to the objectives identified in article 13 (1).<sup>23</sup> They are also obliged to establish and maintain a transparent and effective system which monitors whether or not education is, in fact, directed to the educational objectives set out in article 13 (1).

50. In relation to article 13 (2), States have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each of the “essential features” (availability, accessibility, acceptability, adaptability) of the right to education. By way of illustration, a State must respect the availability of education by not closing private schools; protect the accessibility of education by ensuring that third parties, including parents and employers, do not stop girls from going to school; fulfil (facilitate) the acceptability of education by taking positive measures to ensure that education is culturally appropriate for minorities and indigenous peoples, and of good quality for all; fulfil (provide) the adaptability of education by designing and providing resources for curricula which reflect the contemporary needs of students in a changing world; and fulfil (provide) the availability of education by actively developing a system of schools, including building classrooms, delivering programmes, providing teaching materials, training teachers and paying them domestically competitive salaries.

51. As already observed, the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in relation to primary, secondary, higher and fundamental education are not identical. Given the wording of article 13 (2), States parties are obliged to prioritize the introduction of compulsory, free primary education.<sup>24</sup> This interpretation of article 13 (2) is reinforced by the priority accorded to primary education in article 14. The obligation to provide primary education for all is an immediate duty of all States parties.

52. In relation to article 13 (2) (b)-(d), a State party has an immediate obligation “to take steps” (art. 2 (1)) towards the realization of secondary, higher and fundamental education for all those within its jurisdiction. At a minimum, the State party is required to adopt and implement a national educational strategy which includes the provision of secondary, higher and fundamental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venant. This strategy should include mechanisms, such as indicators and benchmarks on the right to education, by which progress can be closely monitored.

53. Under article 13 (2) (e), States parties are obliged to ensure that an educational fellowship system is in place to assist disadvantaged groups.<sup>25</sup> The obligation to pursue actively the “development of a system of schools at all levels” reinforces the principal responsibility of States parties to ensure the direct provis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in most circumstances.<sup>26</sup>

54. States parties are obliged to establish “minimum educational standards” to which all educational institution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3) and (4) are required to conform. They must also maintain a transparent and effective system to monitor such standards. A State party has no obligation to fund institution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3) and (4); however, if a State elects to make a financial contribution to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it must do so without discrimination on any of the prohibited grounds.

55. States parties have an obligation to ensure that communities and families are not dependent on child labour. The Committee especially affirms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n eliminating child labour and the obligations set out in article 7 (2)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Convention No. 182).<sup>27</sup> Additionally, given article 2 (2), States parties are obliged to remove gender and other stereotyping which impedes the educational access of girls, women and other disadvantaged groups.

56. In its General Comment 3, the Committee drew attention to the obligation of all States parties to take steps, “individually and through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especially economic and technical”, towards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e Covenant, such as the right to education.<sup>28</sup> Articles 2 (1) and 23 of the Covenant, Article 56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10 of the 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 and Part I, paragraph 34 of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all reinforce the obligation of States parties in relation to the provision of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for the full realiz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In relation to the negotiation and ratific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States parties should take steps to ensure that these instruments do not adversely impact upon the right to education. Similarly, States parties have an obligation to ensure that their actions as member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ake due account of the right to education.

57. In its General Comment 3, the Committee confirmed that States parties have “a minimum core obligation to ensure the satisfaction of, at the very least, minimum essential levels” of each of the rights enunciated in the Covenant, including “the most basic forms of education”. In the context of article 13, this core includes an obligation: to ensure the right of access to public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programmes on a non-discriminatory basis; to ensure that education conforms to the objectives set out in article 13 (1); to provide primary education for all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2) (a); to adopt and implement a national educational strategy which includes provision for secondary, higher and fundamental education; and to ensure free choice of education without interference from the State or third parties, subject to conformity with “minimum educational standards” (art. 13 (3) and (4)).

### Violations

58. When the normative content of article 13 (Part I) is applied to the general and specific obligations of States parties (Part II), a dynamic process is set in motion which facilitates

identification of violations of the right to education. Violations of article 13 may occur through the direct action of States parties (acts of commission) or through their failure to take steps required by the Covenant (acts of omission).

59. By way of illustration, violations of article 13 include: the introduction or failure to repeal legislation which discriminates against individuals or groups, on any of the prohibited grounds, in the field of education; the failure to take measures which address de facto educational discrimination; the use of curricula inconsistent with the educational objectives set out in article 13 (1); the failure to maintain a transparent and effective system to monitor conformity with article 13 (1); the failure to introduce, as a matter of priority, primary education which is compulsory and available free to all; the failure to take “deliberate, concrete and targeted” measures towards the progressive realization of secondary, higher and fundamental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2) (b)-(d); the prohibition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failure to ensure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conform to the “minimum educational standards” required by article 13 (3) and (4); the denial of academic freedom of staff and students; the closure of educational institutions in times of political tension in non-conformity with article 4.

### III. OBLIGATIONS OF ACTORS OTHER THAN STATES PARTIES

60. Given article 22 of the Covenant,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agencies, including at the country level through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 (UNDAF), is of special importance in relation to the realization of article 13. Coordinated efforts for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should be maintained to improve coherence and interaction among all the actors concerned, including the various components of civil society. UNESCO,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ICEF, ILO, the World Bank, the regional development bank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other relevant bodies within the United Nations system should enhance their cooper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at the national level, with due respect to their specific mandates, and building on their respective expertise.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notably the World Bank and IMF, should pay greater attention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in their lending policies, credit agreements,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s and measures taken in response to the debt crisis.<sup>29</sup> When examining the reports of States parties, the Committee will consider the effects of the assistance provided by all actors other than States parties on the ability of States to meet their obligations under article 13. The adoption of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by United Nations specialized agencies, programmes and bodies will greatly facilitate implementation of the right to education.

Notes

<sup>1</sup> The World Declaration on Education for All was adopted by 155 governmental delegations;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was adopted by 171 governmental delegation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s been ratified or acceded to by 191 States parties; the Plan of Action of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was adopted by a consensus resol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49/184).

<sup>2</sup> This approach corresponds with the Committee's analytical framework adopted in relation to the rights to adequate housing and food, as well as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In its General Comment 4, the Committee identified a number of factors which bear upon the right to adequate housing, including "availability", "affordability", "accessibility" and "cultural adequacy". In its General Comment 12, the Committee identified elements of the right to adequate food, such as "availability", "acceptability" and "accessibility". In her preliminary report to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sets out "four essential features that primary schools should exhibit, namely availability, accessibility, acceptability and adaptability", (E/CN.4/1999/49, para. 50).

<sup>3</sup> See para. 6.

<sup>4</sup> The Declaration defines "basic learning needs" as: "essential learning tools (such as literacy, oral expression, numeracy, and problem solving) and the basic learning content (such as knowledge, skills, values, and attitudes) required by human beings to be able to survive, to develop their full capacities, to live and work in dignity, to participate fully in developm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lives, to make informed decisions, and to continue learning" (art. 1).

<sup>5</sup> Advocacy Kit, Basic Education 1999 (UNICEF), section 1, page 1.

<sup>6</sup> See para. 6.

<sup>7</sup> See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Education 1997, UNESCO, para. 52.

<sup>8</sup> A view also reflected in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nvention 1975 (Convention No. 142) and the Social Policy (Basic Aims and Standards) Convention 1962 (Convention No. 117)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sup>9</sup> See note 8.

<sup>10</sup> See para. 6.

<sup>11</sup> See para. 15.

<sup>12</sup> See para. 6.

<sup>13</sup> See para. 9.

<sup>14</sup> This replicates article 18 (4)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and also relates to the freedom to teach a religion or belief as stated in article 18 (1) ICCPR. (See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22 on article 18 ICCPR, forty-eighth session, 1993.) The Human Rights Committee notes that the fundamental character of article 18 ICCPR is reflected in the fact that this provision cannot be derogated from, even in time of public emergency, as stated in article 4 (2) of that Covenant.

<sup>15</sup> According to article 2:

“When permitted in a State, the following situations shall not be deemed to constitute discrimina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 of this Convention:

(a) The establishment or maintenance of separate educational systems or institutions for pupils of the two sexes, if these systems or institutions offer equivalent access to education, provide a teaching staff with qualifications of the same standard as well as school premises and equipment of the same quality, and afford the opportunity to take the same or equivalent courses of study;

(b) The establishment or maintenance, for religious or linguistic reasons, of separate educational systems or institutions offering an education which is in keeping with the wishes of the pupil’s parents or legal guardians, if participation in such systems or attendance at such institutions is optional and if the education provided conforms to such standards as may be laid down or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particular for education of the same level;

(c) The establishment or maintenance of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if the object of the institutions is not to secure the exclusion of any group but to provide educational facilities in addition to those provided by the public authorities, if the institutions ar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at object, and if the education provided conforms with such standards as may be laid down or approv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particular for education of the same level.”

<sup>16</sup> See UNESCO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Higher-Education Teaching Personnel (1997).

<sup>17</sup> In formulating this paragraph, the Committee has taken note of the practice evolving elsewhere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such as the interpretation given by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article 28 (2)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s well as the Human Rights Committee’s interpretation of article 7 of ICCPR.

<sup>18</sup> The Committee notes that, although it is absent from article 26 (2) of the Declaration, the drafters of ICESCR expressly included the dignity of the human personality as one of the mandatory objectives to which all education is to be directed (art. 13 (1)).

<sup>19</sup> See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3, para. 1.

<sup>20</sup> See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3, para. 2.



<sup>21</sup> See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3, para. 9.

<sup>22</sup> See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3, para. 9.

<sup>23</sup> There are numerous resources to assist States parties in this regard, such as UNESCO's Guidelines for Curriculum and Textbook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Education (ED/ECS/HCI). One of the objectives of article 13 (1) is to "strengthen the respect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in this particular context, States parties should examine the initiatives develop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 especially instructive is the Plan of Action for the Decade,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in 1996, and the Guidelines for National Plans of Ac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 developed by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o assist States in responding to 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sup>24</sup> On the meaning of "compulsory" and "free", see paragraphs 6 and 7 of General Comment 11 on article 14.

<sup>25</sup> In appropriate cases, such a fellowship system would be an especially appropriate target for the international assistance and cooperation anticipated by article 2 (1).

<sup>26</sup> In the context of basic education, UNICEF has observed: "Only the State ... can pull together all the components into a coherent but flexible education system".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1999, "The education revolution", p. 77.

<sup>27</sup> According to article 7 (2), "(e)ach Member shall, taking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n eliminating child labour, take effective and time-bound measures to: (c) ensure access to free basic education, and, wherever possible and appropriate, vocational training, for all children removed from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ILO Convention 182, Worst Forms of Child Labour, 1999).

<sup>28</sup> See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3, paras. 13-14.

<sup>29</sup> See the Committee's General Comment 2, para. 9.

-----

## 4. 중화인민공화국 헌법(부분 발췌)

(1982년 12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기 제5차 회의 통과, 1982년 12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포, 시행을 공고함. 1988년 4월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7기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개정안”, 1993년 3월 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8기 제1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개정안”, 1999년 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9기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개정안”, 2004년 3월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0기 제2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헌법 개정안”에 근거하여 개정)

### 제2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제33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자는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법률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어떠한 공민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향유하며 동시에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4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서 만 18세에 달한 자는 민족·인종·성별·직·가정출신·종교신앙·교육수준·재산·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법률에 의해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자는 제외한다.

**제35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행진·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제36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어떠한 국가기관·사회단체·개인도 공민이 종교를 믿거나 믿지 못하

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를 가진 공민과 종교를 갖지 않는 공민을 차별할 수 없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든지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치고 국가의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

**제3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신체의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어떠한 공민도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 또는 인민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公安기관의 집행으로 체포되지 않는다.

불법구금 및 기타 방법으로 공민의 신체자유를 불법으로 박탈 또는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민의 신체를 불법으로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8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인격의 존엄성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공민에 대하여 모욕·비방 및 무고·모함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9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주택의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 공민의 주택을 불법 수색하거나 불법 침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40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법률로 보호 받는다. 국가의 안전이나 형사범죄수사상의 필요로 公安기관이나 검찰기관에서 법률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 이외에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떠한 이유로든 공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

**제4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모든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비판하고 건의할 권리를 가진다. 어떠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상의 과실에 대해 유관 국가기관에 고발·고소하거나 검거(檢擧)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하여 무고·모함을 하여서는 안된다.

공민의 청원, 고소 또는 고발에 대하여 유관국가기관은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할 책임이 있다. 어떠한 자도 이를 억압하거나 보복할 수 없다.

국가기관과 공무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공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배상 받을 권리가 있다.

**제42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각종 방법을 통하여 취업조건을 조성하고 노동보호를 강화하며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또한 생산성 향상의 기반 위에서 노동보수를 인상하고 복지와 대우를 향상시킨다.

노동은 노동능력을 가진 모든 공민의 영광스러운 직무이다. 국유기업과 도시, 농촌의 집단경제조직의 노동자는 모두 국가의 주인공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노동에 임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적 노동경쟁을 권장하고 모범적인 노동자와 선진적인 활동가를 장려한다.

국가는 공민이 의무노동에 종사할 것을 권장한다.

국가는 취업 전 공민에 대하여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제4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노동자는 휴식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노동자의 휴식 및 휴양을 위한 시설을 발전시키고 직원 노동자의 취업시간과 휴식제도를 확립한다.

**제44조** 국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업사업체의 직원 노동자와 국가기관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년제를 실시한다. 정년퇴직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보장을 받는다.

**제4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노령·질병·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공민의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는데 필요한 사회보험·사회구제·의료보건사업을 발전시킨다.

국가와 사회는 장애 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열사의 유족을 보조하고 군인가족을 우대한다.

국가와 사회는 맹인·맹인·기타 장애인의 노동·생활 및 교육을 배려하고 원조한다.

**제4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청년·소년·아동의 덕성·지력·체력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4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과학연구, 문화예술창조와 기타문화활동을 진행하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교육, 과학, 기술, 문학, 예술과 기타 문화사업에 종사하는 공민의 인민적 창작활동성에 이익을 주는데 대하여 격려와 도움을 준다.

**제48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부녀는 정치·경제·사회·문화·가정생활 등의 모든 면에서 남자와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부녀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남녀의 동일보수 원칙을 실행하며 여성간부를 양성, 등용한다.

- 제49조** 혼인·가정·모친과 아동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부부 쌍방은 가족계획을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  
부모는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교육할 의무를 지니며, 성년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가진다.  
혼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인·부녀·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제50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귀국화교 및 화교권속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 제5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국가·사회·단체의 이익과 다른 공민의 합법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 제52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국가의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 제53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의 기밀을 지키며 공공재산을 애호하며 노동규율을 지키며 사회공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54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조국의 안전·영예 및 이익을 수호할 의무가 있으며 조국의 안전·영예 및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55조** 조국을 보위하며 침략을 물리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다.  
법률에 따라 병역 복무와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영예로운 의무이다.

**제56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법률에 따라 납세의 의무가 있다.

## 4-1. 中華人民共和國 憲法

(1982年12月4日第五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五次會議通過 1982年12月4日全國人民代表大會公告公布施行)

根據1988年4月12日第七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一次會議通過的《中華人民共和國憲法修正案》、1993年3月29日第八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一次會議通過的《中華人民共和國憲法修正案》、1999年3月15日第九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二次會議通過的《中華人民共和國憲法修正案》和2004年3月14日第十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二次會議通過的《中華人民共和國憲法修正案》修正)

### 第二章 公民的基本權利和義務

**第三十三條** 凡具有中華人民共和國國籍的人都是中華人民共和國公民。

中華人民共和國公民在法律面前一律平等。

國家尊重和保障人權。

任何公民享有憲法和法律規定的權利，同時必須履行憲法和法律規定的義務。

**第三十四條** 中華人民共和國年滿十八周歲的公民，不分民族、種族、性別、職業、家庭出身、宗教信仰、教育程度、財產狀況、居住期限，都有選舉權和被選舉權；但是依照法律被剝奪政治權利的人除外。

**第三十五條** 中華人民共和國公民有言論、出版、集會、結社、游行、示威的自由。

**第三十六條** 中華人民共和國公民有宗教信仰自由。

任何國家機關、社會團體和個人不得強制公民信仰宗教或者不信仰宗



教，不得歧視信仰宗教的公民和不信仰宗教的公民。

國家保護正常的宗教活動。任何人不得利用宗教進行破壞社會秩序、損害公民身體健康、妨礙國家教育制度的活動。

宗教團體和宗教事務不受外國勢力的支配。

**第三十七條** 中華人民共和國公民的人身自由不受侵犯。

任何公民，非經人民檢察院批准或者決定或者人民法院決定，并由公安機關執行，不受逮捕。

禁止非法拘禁和以其他方法非法剝奪或者限制公民的人身自由，禁止非法搜查公民的身體。

**第三十八條** 中華人民共和國公民的人格尊嚴不受侵犯。禁止用任何方法對公民進行侮辱、誹謗和誣告陷害。

**第三十九條** 中華人民共和國公民的住宅不受侵犯。禁止非法搜查或者非法侵入公民的住宅。

**第四十條** 中華人民共和國公民的通信自由和通信秘密受法律的保護。除因國家安全或者追查刑事犯罪的需要，由公安機關或者檢察機關依照法律規定的程序對通信進行檢查外，任何組織或者個人不得以任何理由侵犯公民的通信自由和通信秘密。

**第四十一條** 中華人民共和國公民對於任何國家機關和國家工作人員，有提出批評和建議的權利；對於任何國家機關和國家工作人員的違法失職行爲，有向有關國家機關提出申訴、控告或者檢舉的權利，但是不得捏造或者歪曲事實進行誣告陷害。

對於公民的申訴、控告或者檢舉，有關國家機關必須查清事實，負責處理。任何人不得壓制和打擊報復。

由于國家機關和國家工作人員侵犯公民權利而受到損失的人，有依照法律規定取得賠償的權利。

#### **第四十二條** 中華人民共和國公民有勞動的權利和義務。

國家通過各種途徑，創造勞動就業條件，加強勞動保護，改善勞動條件，並在發展生產的基礎上，提高勞動報酬和福利待遇。

勞動是一切有勞動能力的公民的光榮職責。國有企業和城鄉集體經濟組織的勞動者都應當以國家主人翁的態度對待自己的勞動。國家提倡社會主義勞動競賽，獎勵勞動模範和先進工作者。國家提倡公民從事義務勞動。

國家對就業前的公民進行必要的勞動就業訓練。

#### **第四十三條** 中華人民共和國勞動者有休息的權利。

國家發展勞動者休息和休養的設施，規定職工的工作時間和休假制度。

**第四十四條** 國家依照法律規定實行企業事業組織的職工和國家機關工作人員的退休制度。退休人員的生活受到國家和社會的保障。

**第四十五條** 中華人民共和國公民在年老、疾病或者喪失勞動能力的情況下，有從國家和社會獲得物質幫助的權利。國家發展為公民享受這些權利所需要的社會保險、社會救濟和醫療衛生事業。

國家和社會保障殘廢軍人的生活，撫恤烈士家屬，優待軍人家屬。

國家和社會幫助安排盲、聾、啞和其他有殘疾的公民的勞動、生活和教育。

**第四十六條** 中華人民共和國公民有受教育的權利和義務。

國家培養青年、少年、兒童在品德、智力、體質等方面全面發展。

**第四十七條** 中華人民共和國公民有進行科學研究、文學藝術創作和其他文化活動的自由。國家對於從事教育、科學、技術、文學、藝術和其他文化事業的公民的有益于人民的創造性工作，給以鼓勵和幫助。

**第四十八條** 中華人民共和國婦女在政治的、經濟的、文化的、社會的和家庭的生活等各方面享有同男子平等的權利。

國家保護婦女的權利和利益，實行男女同工同酬，培養和選拔婦女幹部。

**第四十九條** 婚姻、家庭、母親和兒童受國家的保護。

夫妻双方有實行計劃生育的義務。

父母有撫養教育未成年子女的義務，成年子女有贍養扶助父母的義務。

禁止破壞婚姻自由，禁止虐待老人、婦女和兒童。

**第五十條** 中華人民共和國保護華僑的正當的權利和利益，保護歸僑和僑眷的合法的權利和利益。

**第五十一條** 中華人民共和國公民在行使自由和權利的時候，不得損害國家的、社會的、集体的利益和其他公民的合法的自由和權利。

**第五十二條** 中華人民共和國公民有維護國家統一和全國各民族團結的義務。

**第五十三條** 中華人民共和國公民必須遵守憲法和法律，保守國家秘密，

愛護公共財產，遵守勞動紀律，遵守公共秩序，尊重社會公德。

**第五十四條** 中華人民共和國公民有維護祖國的安全、榮譽和利益的義務，不得有危害祖國的安全、榮譽和利益的行爲。

**第五十五條** 保衛祖國、抵抗侵略是中華人民共和國每一個公民的神聖職責。  
依照法律服兵役和參加民兵組織是中華人民共和國公民的光榮義務。

**第五十六條** 中華人民共和國公民有依照法律納稅的義務。

## 5.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1980년 9월 10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통과,  
1980년 9월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령 제8호 공포)

-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취득·상실·회복은 본 법을 적용한다.
-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며, 각 민족의 구성원은 모두 중국국적을 보유한다.
-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민의 이중국적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 제 4 조**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공민인 자로서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한 경우 중국국적을 보유한다.
- 제 5 조**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공민인 자로서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중국국적을 보유한다; 다만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공민인 자로서 출생당시 외국에 거주하여 본인의 출생과 동시에 외국국적을 보유한 자는 중국국적을 보유하지 못한다.
- 제 6 조** 부모가 모두 무국적 혹은 국적불명인 자로서 중국에 장기거주하며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한 경우 중국국적을 보유한다.
- 제 7 조** 외국인 혹은 무국적자가 지원하여 중국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아래 열거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절차를 거쳐 비준을 받아 중국국적을 가질 수 있다.

- (1) 중국인의 근친속;
- (2) 중국에서 장기 거주;
- (3)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8조** 중국국적을 얻고자 신청하여 비준을 받으면, 즉시 중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중국국적을 취득하면 외국국적을 보유할 수 없다.

**제9조** 외국장기거주 중국공민이 자원해서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즉시 중국국적을 상실한다.

**제10조** 중국공민이 아래 열거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에 의해 중국국적 퇴출을 허가받을 수 있다.

- (1) 외국인의 근친속;
- (2) 외국에서 장기거주;
- (3)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1조** 중국국적 퇴출을 신청하여 비준을 받으면 즉시 중국국적을 상실한다.

**제12조** 국가의 공무를 하는 자와 현역군인은 중국국적퇴출을 할 수 없다.

**제13조** 과거 중국국적이었던 외국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중국국적 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중국국적 회복 비준을 받으면, 외국국적을 보유할 수 없다.

**제14조** 중국국적의 취득·상실·회복은 제9조 규정을 제외하고, 반드시 신청수속을 해야 한다. 만18세 미만자는 부모 혹은 기타 법정대리인이 대리

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국적신청을 접수 처리하는 기관은 중국내 현지 시(市)·현(縣) 공안국, 국외에서는 중국외교대표기관과 영사기관이다.

**제16조** 중국국적의 가입·퇴출·회복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가 심사하며 비준 후 공안부가 증서를 발급한다.

**제17조** 본법 공포 전 이미 중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5-1. 中華人民共和國 國籍法

(1980年9月10日第五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三次會議通過  
1980年9月10日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委員長令第八號公布)

**第一條** 中華人民共和國國籍的取得、喪失和恢夏，都適用本法。

**第二條** 中華人民共和國是統一的多民族的國家，各民族的人都具有中國國籍。

**第三條** 中華人民共和國不承認中國公民具有雙重國籍。

**第四條** 父母雙方或一方為中國公民，本人出生在中國，具有中國國籍。

**第五條** 父母雙方或一方為中國公民，本人出生在外國，具有中國國籍；但父母雙方或一方為中國公民并定居在外國，本人出生時即具有外國國籍的，不具有中國國籍。

**第六條** 父母無國籍或國籍不明，定居在中國，本人出生在中國，具有中國國籍。

**第七條** 外國人或無國籍人，願意遵守中國憲法和法律，并具有下列條件之一的，可以經申請批准加入中國國籍：

- 一、中國人的近親屬；
- 二、定居在中國的；
- 三、有其他正當理由。



**第八條** 申請加入中國國籍獲得批准的，即取得中國國籍；被批准加入中國國籍的，不得再保留外國國籍。

**第九條** 定居外國的中國公民，自願加入或取得外國國籍的，即自動喪失中國國籍。

**第十條** 中國公民具有下列條件之一的，可以經申請批准退出中國國籍：

- 一、外國人的近親屬；
- 二、定居在外國的；
- 三、有其他正當理由。

**第十一條** 申請退出中國國籍獲得批准的，即喪失中國國籍。

**第十二條** 國家工作人員和現役軍人，不得退出中國國籍。

**第十三條** 曾有過中國國籍的外國人，具有正當理由，可以申請恢夏中國國籍；被批准恢夏中國國籍的，不得再保留外國國籍。

**第十四條** 中國國籍的取得、喪失和恢夏，除第九條規定的以外，必須辦理申請手續。未滿十八周歲的人，可由其父母或其他法定代理人代為辦理申請。

**第十五條** 受理國籍申請的機關，在國內為當地市、縣公安局，在國外為中國外交代表機關和領事機關。

**第十六條** 加入、退出和恢夏中國國籍的申請，由中華人民共和國公安部

審批。經批准的，由公安部發給証書。

**第十七條** 本法公布前，已經取得中國國籍的或已經喪失中國國籍的，繼續有效。

**第十八條** 本法自公布之日起施行。

## 6.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1986.4.12 제6기 전인대 제4차 회의 통과, 1987.7.1 시행)  
(2006.6.29 제10기 전인대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 통과, 2006.9.1 시행)

### 제1장 총 칙

**제 1 조** 적령 아동과 소년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교육의 실시를 보증하며, 전체 민족의 소질을 제고하기 위해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본 법률을 제정한다.

**제 2 조** 국가는 9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행한다.  
의무교육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실시하는 적령기의 모든 아동과 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국가가 필수적으로 보장하는 공익성 사업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학비와 잡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국가는 의무교육경비 보장 기제를 수립하여 의무교육제도 실시를 보증한다.

**제 3 조** 의무교육은 반드시 국가의 교육방침을 관철하여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하며, 적령 아동과 소년이 품덕, 지력, 체력 등 전체적으로 발전하게 하여 이상, 도덕, 지식, 기술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의 기초 양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지닌 모든 적령 아동과 소년은 성별, 민족, 종족, 가정 재산상황, 종교신앙 등에 관계없이 법에 의해 평등하게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아울러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5조** 각급 인민정부 및 기타 유관부문은 본 법에 규정한 각각의 직무와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적령 아동과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적령 아동과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정보호자는 법이 정한 시기에 학교에 입학시켜 의무교육을 완성하게 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규정된 표준에 따라 교학 임무를 완성해야 하며, 교학의 질을 보증해야 한다.

사회조직과 개인은 적령 아동과 소년이 양호한 환경에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해야한다.

**제6조** 국무원과 현급(縣及)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교육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의무교육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열악한 학교 운영 여건을 개선해야 하며, 아울러 조치를 취해 농촌, 민족지구,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과 소년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 미발전 지역의 의무교육 실시를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제7조** 의무교육의 실행은 국무원이 영도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며, 현급 인민정부가 주관하는 체제이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은 의무교육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유관부문은 각자의 직무와 책임 이내에서 의무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인민정부의 교육감독기관은 의무교육업무와 관련된 법규 상황, 교학 질량 및 의무교육의 균형발전 상황 등에 대해 감독하며, 그 보고는 사회에 공표한다.

**제9조** 어떠한 사회조직이나 개인은 본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 유관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본 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건, 의무교육 시행 장애,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한 경우에는 인민정부 또는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의 책임자가 책임을 지며 책임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직해야 한다.

**제10조** 의무교육 실시 업무 중 특출한 공헌을 한 사회조직 및 개인에 대해서는 각급 인민정부 및 기타 유관 부문이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하고 장려한다.

## 제2장 학생

**제11조** 만 6세 아동은 그 부모 또는 기타 법정보호자가 입학의 시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여건이 구비되지 않은 지방의 아동은 7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적령 아동과 소년이 건강상의 이유로 입학의 연기하거나 휴학을 하는 경우 그 부모 또는 기타 법정보호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현지 향진(鄉鎮) 인민정부 또는 현급 인민정부의 교육행정부문을 이를 비준한다.

**제12조** 적령 아동과 소년은 시험 없이 입학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적령 아동과 소년이 호적소재지와 가까운 학

교에 입학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부모 또는 기타 법정보호자가 호적소재지가 아닌 지역에서 일하거나 거주하여 적령 아동과 소년이 부모 또는 기타 법정보호자 거주지에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 현지 인민정부는 의무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현급 인민정부의 교육행정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의 군인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제13조**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과 향진 인민정부는 적령 아동과 소년의 입학을 감독하고 의무교육을 받는데 있어 어려움을 해결해 주며, 학업 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는 정부가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적령 아동과 소년의 입학을 독촉한다.

**제14조** 고용 기관은 의무교육을 받는 적령 아동과 소년을 채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령 아동과 소년을 모집해 문예·체육 등 전문적인 훈련을 하도록 비준을 받은 사회조직은 모집한 적령 아동과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스스로 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장 학 교

**제15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행정구역내 거주한 적령 아동과 소년수의

분포상황 등에 근거하여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설립계획을 제정·조정한다.

새로 건설한 주민지구에 학교 설립이 필요한 경우 주민지구 건설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제16조** 학교 건립은 국가가 규정한 학교설립운영 표준에 부합하고 교육교학 수요에 적합해야 한다; 국가가 정한 부지선정 요구와 건설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제17조** 현급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기숙제 학교를 설립하여 주거지에서 떨어져 있는 적령 아동과 소년이 입학후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8조** 국무원 교육행정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경제발전지역에서 소수 민족의 적령 아동과 소년을 수용하는 학교(학급)를 설립한다.

**제19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학교(학급)를 설치하며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와 지능장애의 적령 아동, 소년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특수교육학교(학급)는 장애아동과 소년의 학습, 건강회복, 생활 특성에 적합한 장소와 시설을 구비해야한다.

일반학교는 일반교육능력을 갖춘 장애 적령 아동과 소년을 입학시키고 그들의 학습, 건강회복을 위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제20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필요에 따라 미성년자범죄예방방법이 정한

중대한 불량행위를 한 적령 소년을 위해 전문적인 학교를 설치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제21조**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미성년범죄자와 강제적인 교육을 받는 미성년자에게 의무교육을 수행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인민정부가 보장한다.

**제2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교육행정부문은 학교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학교간 격차를 줄여야 하며, 학교를 중점학교(일류학교)와 비중점학교로 나누거나 학교 내에서 학급을 중점반과 비중점반으로 나눠서는 안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교육행정부문은 임의로 명칭을 바꾸거나 공립학교의 성격을 바꿀 수 없다.

**제23조**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문은 법에 의해 학교주변의 질서를 유지하고 학생, 교사, 학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학교를 위해 안전 보장을 제공한다.

**제24조** 학교는 건전한 안전제도와 응급상황 처리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시켜 사고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정기적으로 학교건물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한다; 수리·개조가 필요한 부분은 즉시 수리하고 개조한다.

학교는 고의적인 범죄로 인해 정치적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의무 교육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된다.

**제25조** 학교는 국가규정에 위반된 비용을 받거나 학생에게 상품·서비스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취해서는 안 된다.

**제26조** 학교는 교장책임제를 실행한다. 교장은 국가가 정한 직무담당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교장은 현금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이 법에 따라 초빙한다.

**제27조** 학교는 학교관리제도를 위반하는 학생에 대해 비판교육을 시켜야 하며, 퇴학시킬 수 없다.

## 제4장 교 사

**제28조** 교사는 법률이 정한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인민의 모범으로서 인민 교육사업에 충성해야 한다.  
전 사회는 교사를 존중해야 한다.

**제29조** 교사는 교과목 수업중 학생을 평등하게 대하며 학생의 개인적 차이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적성에 맞게 가르쳐서 학생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학생을 경시하지 않으며, 학생에게 차별 또는 기타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거나 학생의 합리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30조** 교사는 국가가 정한 교사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국가는 통일된 의무교육 교사직무제도를 수립한다. 교사직무는 초급 직무, 중급직무와 고급직무로 구분된다.

**제31조** 각급인민정부는 교사의 임금, 복리 및 사회보험 제도를 보장해야하며 교사업무와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농촌교사의 임금을 보장하는 체제를 완비한다.

교사의 평균 임금수준은 현지공무원의 평균 임금수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특수교육 교사는 특수보조수당을 받는다. 민족지구와 빈곤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빈곤지역 보조수당을 받는다.

**제3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교사양성업무를 강화하고 교사교육 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현급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은 구역내 학교의 교사자원과 역량을 균형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교장과 교사에 대한 연수와 전근을 조직하여 취약한 학교 건설을 강화한다.

**제33조** 국무원과 지방 각급인민정부는 도시학교 교사와 대학 졸업생이 농촌 지역, 민족지구에서 의무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지지하고 격려한다.

국가는 대학 졸업생이 지원자 방식으로 농촌지역, 민족지구의 교사가 부족한 학교에 교육업무를 맡는 것에 대해 격려한다.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은 법에 의해 교사 자격을 인정하고 근무시간은 재직 한 연수에 포함한다.

## 제5장 교육교학

**제34조** 교과목 수업은 교육규율과 학생의 심신발전에 부합해야하며 전체학생들에게 교과서를 통해 덕육·지육·체육·미육(美育) 등을 유기적이

고 통일적으로 가르쳐 학생들의 독립적 사고력, 창의력과 실천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으로써 학생의 발전을 촉진한다.

**제35조**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은 적령 아동의 심신상태와 실제 상황에 따라 교과목의 제도 내용과 과정을 확정하며, 시험제도를 개혁하고 고등 학생 모집방법을 개선하여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촉진한다.

학교와 교사는 확정된 교과목 내용과 절차에 따라 수업을 해야 하며 국가가 정한 기본적인 수준에 부합하도록 해야한다.

국가는 학교와 교사가 계발교육 등의 수업 방식을 채택하여 교과목 수업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장려한다.

**제36조** 학교는 정치사상과 도덕적 소양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 교과목 수업 중에 정치사상과 도덕적 소양을 양성하며 학생 연령에 맞는 사회활동을 통해 학교·가정·사회에서 사상과 도덕 교육체제를 형성시켜 학생이 양호한 사상품성과 행위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을 촉진한다.

**제37조** 학교는 학생의 과외활동시간을 보장하고 문화오락 등 과외활동을 조직해야 한다. 사회 공공 문화체육시설은 학교가 과외활동을 하는 데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38조** 교과서는 국가교육방침과 교육과정표준에 따라 편집하며, 내용은 정확하고 간결하게 하여 기초지식, 기초기능, 경제적 실용, 질적 보장이 되어야한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직원과 교과서 심사위원은 교과서를 편집하는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제39조** 국가는 교과서 심의제도를 시행한다. 교과서 심의방법은 국무원교육 행정부문이 정한다.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교과서는 출판, 사용할 수 없다.

**제40조** 교과서는 국무원 가격행정부문과 출판행정부문이 적은 이윤 원칙에 따라 기준가격을 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행정부문과 출판행정부문의 가격기준에 따라 판매가격을 정한다.

**제41조** 국가는 교과서 순환사용을 장려한다.

## 제6장 경비보장

**제42조** 국가는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재정보장 범위에 포함시켜 의무교육 경비는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본 법 규정에 따라 보장한다. 국무원과 지방 각급인민정부는 의무교육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교직원 편제기준 공급기준과 학교건설기준, 학생 일인평균 공용 경비기준 등에 따라 적시에 의무교육경비를 지불하며, 학교의 정상 운영과 학교건물 안전과 교직원 임금을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것을 확보하도록 한다.

국무원과 지방 각급인민정부는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재정지불 증가 비율을 재정정상수입 증가비율보다 높게하여 재학생수에 따라 평균 의무교육비용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교직원의 임금과 학생 일인당 공용경비의 점진적 증가를 보증한다.

**제43조** 학교의 학생일인당 공용경비의 기본 기준은 국무원 재정부문과 교육 행정부문이 정하며, 경제와 사회발전 상황에 따라 적시에 조정한다.

학생일인당 공용경비의 기본 기준을 제정하여 조정하는 것은 교육교학의 기본수요를 충족하도록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국가기준보다 낮지 않은 수준에서 학교학생일인당 공용경비기준을 정한다.

특수교육학교(학급)의 학생일인당 공용경비기준은 보통학교 학생일인당 공용경비기준보다 높아야 한다.

**제44조** 의무교육경비 투입은 국무원과 지방 각급인민정부가 직무와 책임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전체적으로 실행가능하도록 책임지는 체제이다. 농촌의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각급 인민정부가 국무원이 정한 항목별로 비례적으로 부담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생활형편이 어려운 적령 아동과 소년에게 무상으로 교과서를 제공하고 기숙생 생활비를 보조한다.

의무교육 경비보장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4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재정예산중에 의무교육경비 항목을 따로 정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예산을 편성하여 농촌지역 학교와 취약한 학교에 대해 많이 지원하는 것 이외에는 의무교육경비를 균형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제46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제정이전 지불제도를 규범에 맞게 일반적 이전지불규모를 늘리고 의무교육 전문이전지불을 규범에 맞도록 하며, 지방 각급인민정부가 의무교육 투입을 증가시키는 것을 지지하고 유도한다. 지방 각급인민정부는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에 사용하는 상위 인민정부의 의무교육 이전(轉移)지불자금을 확보한다.

**제47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실제수요에 따라 전문적 항목별 자금을 만들어 농촌지역, 민족지구의 의무교육 실시를 지원한다.

**제48조** 국가는 사회조직과 개인이 의무교육에 기부하는 것을 장려하며 국가유관기금회가 관리하는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49조** 의무교육경비는 예상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의무교육에 사용한다; 어떤 조직과 개인이든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전용할 수 없으며, 학교에 대해 법이 정하지 않은 비용을 받거나 할당할 수 없다.

**제50조**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건전한 의무교육경비 심사감독과 통계공고제도를 수립한다.

## **제7장 법률 책임**

**제51조** 공무원 유관부문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본 법 제6장의 규정을 위반하고, 의무교육경비를 보장하는 직무와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 또는 상위 지방인민정부의 명령으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중대한 경우에는 직접 담당하는 주관직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5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아래 열거된 조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인민정부의 명령으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한다; 중대한 경우에는 직접 담당하는 주관직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수 있다;

- (1) 국가 유관규정에 의하지 않고 학교의 설치계획을 제정, 조정하는 경우
- (2) 학교건설이 국가가 정한 학교설립기준, 부지선정 및 건설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 (3) 정기적으로 학교 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적시 수리 및 개조를 하지 않은 경우
- (4) 본 법 규정에 따라 균형적으로 의무교육경비를 분배하지 않은 경우

**제53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그 교육행정부문에 아래에 열거된 조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인민정부 또는 그 교육행정부문의 명령에 의해 기한 내에 시정하고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중대한 경우 직접 담당하는 주관직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1) 학교를 중점학교와 비중점학교로 나누는 경우
- (2) 공립학교의 성질을 변경하는 경우

현급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 또는 향진인민정부가 적령 아동, 소년의 입학이나 중도에 중퇴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는다면 앞 규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54조** 아래에 열거된 조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인민정부 또는 그 교육행정부문, 재정부문, 가격행정부문과 심사기관이 직무와 책임에 따라 명령하여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한다; 중대한 경우에는 직접 담당하는 주관직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1) 의무교육경비를 불법적으로 점유, 전용하는 경우
- (2) 학교에 대해 법이 정하지 않은 비용을 받거나 비용을 할당한 경우

**제55조** 학교 또는 교사가 의무교육 업무 중에 교육법·교사법을 위반하면 교육법·교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6조** 학교가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취한 경우 현금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의 명령으로 받은 비용을 돌려주도록 한다; 직접 담당하는 주관 직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는 법에 의해 처분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상품·서비스를 판매하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이윤을 얻는 경우는 현금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이 통보하여 비판한다; 불법소득이 있으면 몰수한다; 직접 담당하는 주관 직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는 법에 의해 처분한다.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직원과 교과서 심사위원이 교과서를 편집하는 데에 참여하는 경우 현금 이상 인민정부 또는 교육행정부문이 직책에 따라 명령하여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하며, 법에 의해 행정처분한다; 불법소득이 있으면 몰수한다.

**제57조** 학교가 아래에 열거된 정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현금 인민정부 교육행정부문이 명령하여 기한 내에 고치도록 한다; 심각한 경우 직접 담당하는 주관 직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는 법에 따라 처분한다.

- (1) 일반교육을 받을 능력을 구비한 장애 적령 아동과 소년의 입학과 학업 접수를 거절한 경우
- (2) 중점반과 비중점반을 나누어 설치한 경우
- (3)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학생을 제명한 경우
- (4) 심의를 거치지 않는 교과서를 사용하는 경우

**제58조** 적령 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정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법 규정에 의거 적령 아동, 소년을 입학시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는 경우 현지 향진 인민정부 또는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 문이 비판교육을 하고 명령하여 기한 내에 고치도록 한다.

**제59조** 아래 열거된 조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 (1)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적령 아동, 소년의 학업을 중단하도록 협박하거나 유인하는 경우
- (2) 불법적으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적령 아동, 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 (3) 법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과서를 출판하는 경우

**제60조**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가 구성되는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제8장 부 칙

**제61조** 의무교육을 받는 적령 아동, 소년에게는 잡비를 받지 않는 시행 절차는 국무원이 정한다.

**제62조** 사회조직 또는 개인이 법에 의해 설립·운영하는 사립학교에서 의무교육 실시는 사립교육촉진법의 유관 규정에 의해 집행한다; 사립교육촉진법에 정하지 않은 경우 본 법을 적용한다.

**제63조** 본 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 6-1. 中華人民共和國 義務教育法

(1986年4月12日第六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四次會議通過  
2006年6月29日第十屆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第二十二次會議修訂)

### 第一章 總 則

**第一條** 爲了保障適齡兒童、少年接受義務教育的權利，保證義務教育的實施，提高全民族素質，根據憲法和教育法，制定本法。

**第二條** 國家實行九年義務教育制度。

義務教育是國家統一實施的所有適齡兒童、少年必須接受的教育，是國家必須予以保障的公益性事業。

實施義務教育，不收學費、雜費。

國家建立義務教育經費保障機制，保證義務教育制度實施。

**第三條** 義務教育必須貫徹國家的教育方針，實施素質教育，提高教育質量，使適齡兒童、少年在品德、智力、體質等方面全面發展，爲培養有理想、有道德、有文化、有紀律的社會主義建設者和接班人奠定基礎。

**第四條** 凡具有中華人民共和國國籍的適齡兒童、少年，不分性別、民族、種族、家庭財產狀況、宗教信仰等，依法享有平等接受義務教育的權利，並履行接受義務教育的義務。

**第五條** 各級人民政府及其有關部門應當履行本法規定的各項職責，保障適齡兒童、少年接受義務教育的權利。

适齡兒童、少年的父母或者其他法定監護人應當依法保證其按時入學接受并完成義務教育。

依法實施義務教育的學校應當按照規定標準完成教育教學任務，保證教育教學質量。

社會組織和個人應當為适齡兒童、少年接受義務教育創造良好的環境。

**第六條** 國務院和縣級以上地方人民政府應當合理配置教育資源，促進義務教育均衡發展，改善薄弱學校的辦學條件，并採取措施，保障農村地區、民族地區實施義務教育，保障家庭經濟困難的和殘疾的适齡兒童、少年接受義務教育。

國家組織和鼓勵經濟發達地區支援經濟欠發達地區實施義務教育。

**第七條** 義務教育實行國務院領導，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統籌規劃實施，縣級人民政府為主管理的體制。

縣級以上人民政府教育行政部門具體負責義務教育實施工作；縣級以上人民政府其他有關部門在各自的職責範圍內負責義務教育實施工作。

**第八條** 人民政府教育督導機構對義務教育工作執行法律法規情況、教育教學質量以及義務教育均衡發展狀況等進行督導，督導報告向社會公布。

**第九條** 任何社會組織或者個人有權對違反本法的行為向有關國家機關提出檢舉或者控告。

發生違反本法的重大事件，妨礙義務教育實施，造成重大社會影響的，負有領導責任的人民政府或者人民政府教育行政部門負責人應當引咎辭職。

**第十條** 對在義務教育實施工作中做出突出貢獻的社會組織和個人，各級

人民政府及其有關部門按照有關規定給予表彰、獎勵。

## 第二章 學 生

**第十一條** 凡年滿六周歲的兒童，其父母或者其他法定監護人應當送其入學接受並完成義務教育；條件不具備的地區的兒童，可以推遲到七周歲。適齡兒童、少年因身體狀況需要延緩入學或者休學的，其父母或者其他法定監護人應當提出申請，由當地鄉鎮人民政府或者縣級人民政府教育行政部門批准。

**第十二條** 適齡兒童、少年免試入學。地方各級人民政府應當保障適齡兒童、少年在戶籍所在地學校就近入學。

父母或者其他法定監護人在非戶籍所在地工作或者居住的適齡兒童、少年，在其父母或者其他法定監護人工作或者居住地接受義務教育的，當地人民政府應當為其提供平等接受義務教育的條件。具體辦法由省、自治區、直轄市規定

縣級人民政府教育行政部門對本行政區域內的軍人子女接受義務教育予以保障。

**第十三條** 縣級人民政府教育行政部門和鄉鎮人民政府組織和督促適齡兒童、少年入學，幫助解決適齡兒童、少年接受義務教育的困難，採取措施防止適齡兒童、少年輟學。

居民委員會和村民委員會協助政府做好工作，督促適齡兒童、少年入學。

**第十四條** 禁止用人單位招用應當接受義務教育的適齡兒童、少年。

根據國家有關規定經批准招收適齡兒童、少年進行文藝、體育等專業訓練

的社會組織，應當保證所招收的適齡兒童、少年接受義務教育；自行實施義務教育的，應當經縣級人民政府教育行政部門批准。

### 第三章 學 校

**第十五條** 縣級以上地方人民政府根據本行政區域內居住的適齡兒童、少年的數量和分布狀況等因素，按照國家有關規定，制定、調整學校設置規劃。新建居民區需要設置學校的，應當與居民區的建設同步進行。

**第十六條** 學校建設，應當符合國家規定的辦學標準，適應教育教學需要；應當符合國家規定的選址要求和建設標準，確保學生和教職工安全。

**第十七條** 縣級人民政府根據需要設置寄宿制學校，保障居住分散的適齡兒童、少年入學接受義務教育。

**第十八條** 國務院教育行政部門和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根據需要，在經濟發達地區設置接收少數民族適齡兒童、少年的學校（班）。

**第十九條** 縣級以上地方人民政府根據需要設置相應的實施特殊教育的學校（班），對視力殘疾、听力語言殘疾和智力殘疾的適齡兒童、少年實施義務教育。特殊教育學校（班）應當具備適應殘疾兒童、少年學習、康復、生活特點的場所和設施。

普通學校應當接收具有接受普通教育能力的殘疾適齡兒童、少年隨班就讀，並為其學習、康復提供幫助。

**第二十條** 縣級以上地方人民政府根據需要，為具有預防未成年人犯罪法

規定的嚴重不良行爲的適齡少年設置專門的學校實施義務教育。

**第二十一條** 對未完成義務教育的未成年犯和被採取強制性教育措施的未成年人應當進行義務教育，所需經費由人民政府予以保障。

**第二十二條** 縣級以上人民政府及其教育行政部門應當促進學校均衡發展，縮小學校之間辦學條件的差距，不得將學校分爲重點學校和非重點學校。學校不得分設重點班和非重點班。

縣級以上人民政府及其教育行政部門不得以任何名義改變或者變相改變公辦學校的性質。

**第二十三條** 各級人民政府及其有關部門依法維護學校周邊秩序，保護學生、教師、學校的合法權益，爲學校提供安全保障。

**第二十四條** 學校應當建立、健全安全制度和應急機制，對學生進行安全教育，加強管理，及時消除隱患，預防發生事故。

縣級以上地方人民政府定期對學校校舍安全進行檢查；對需要維修、改造的，及時予以維修、改造。

學校不得聘用曾經因故意犯罪被依法剝奪政治權利或者其他不適合從事義務教育工作的人擔任工作人員。

**第二十五條** 學校不得違反國家規定收取費用，不得以向學生推銷或者變相推銷商品、服務等方式謀取利益。

**第二十六條** 學校實行校長負責制。校長應當符合國家規定的任職條件。校長由縣級人民政府教育行政部門依法聘任。

**第二十七條** 對違反學校管理制度的學生，學校應當予以批評教育，不得開除。

#### 第四章 教 師

**第二十八條** 教師享有法律規定的權利，履行法律規定的義務，應當爲人師表，忠誠于人民的教育事業。

全社會應當尊重教師。

**第二十九條** 教師在教育教學中應當平等對待學生，關注學生的个体差异，因材施教，促進學生的充分發展。

教師應當尊重學生的人格，不得歧視學生，不得對學生實施體罰、變相體罰或者其他侮辱人格尊嚴的行爲，不得侵犯學生合法權益。

**第三十條** 教師應當取得國家規定的教師資格。

國家建立統一的義務教育教師職務制度。教師職務分爲初級職務、中級職務和高級職務。

**第三十一條** 各級人民政府保障教師工資福利和社會保險待遇，改善教師工作和生活條件；完善農村教師工資經費保障机制。

教師的平均工資水平應當不低於當地公務員的平均工資水平。

特殊教育教師享有特殊崗位補助津貼。在民族地區和邊遠貧困地區工作的教師享有艱苦貧困地區補助津貼。

**第三十二條** 縣級以上人民政府應當加強教師培養工作，採取措施發展教師教育。

縣級人民政府教育行政部門應當均衡配置本行政區域內學校師資力量，組織校長、教師的培訓和流動，加強對薄弱學校的建設。

**第三十三條** 國務院和地方各級人民政府鼓勵和支持城市學校教師和高等學校畢業生到農村地區、民族地區從事義務教育工作。

國家鼓勵高等學校畢業生以志愿者的方式到農村地區、民族地區缺乏教師的學校任教。縣級人民政府教育行政部門依法認定其教師資格，其任教時間計入工齡。

## 第五章 教育教學

**第三十四條** 教育教學工作應當符合教育規律和學生身心發展特點，面向全體學生，教書育人，將德育、智育、體育、美育等有機統一在教育教學活動中，注重培養學生獨立思考能力、創新能力和實踐能力，促進學生全面發展。

**第三十五條** 國務院教育行政部門根據適齡兒童、少年身心發展的狀況和實際情況，確定教學制度、教育教學內容和課程設置，改革考試制度，並改進高級中等學校招生辦法，推進實施素質教育。

學校和教師按照確定的教育教學內容和課程設置開展教育教學活動，保證達到國家規定的基本質量要求。

國家鼓勵學校和教師採用啟發式教育等教育教學方法，提高教育教學質量。

**第三十六條** 學校應當把德育放在首位，寓德育於教育教學之中，開展與學生年齡相適應的社會實踐活動，形成學校、家庭、社會相互配合的思想道德教育體系，促進學生養成良好的思想品德和行為習慣。



**第三十七條** 學校應當保證學生的課外活動時間，組織開展文化娛樂等課外活動。社會公共文化體育設施應當為學校開展課外活動提供便利。

**第三十八條** 教科書根據國家教育方針和課程標準編寫，內容力求精簡，精選必備的基礎知識、基本技能，經濟實用，保證質量。  
國家機關工作人員和教科書審查人員，不得參與或者變相參與教科書的編寫工作。

**第三十九條** 國家實行教科書審定制度。教科書的審定辦法由國務院教育行政部門規定。  
未經審定的教科書，不得出版、選用。

**第四十條** 教科書由國務院價格行政部門會同出版行政部門按照微利原則確定基準價。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價格行政部門會同出版行政部門按照基準價確定零售價。

**第四十一條** 國家鼓勵教科書循環使用。

## 第六章 經費保障

**第四十二條** 國家將義務教育全面納入財政保障範圍，義務教育經費由國務院和地方各級人民政府依照本法規定予以保障。  
國務院和地方各級人民政府將義務教育經費納入財政預算，按照教職工編制標準、工資標準和學校建設標準、學生人均公用經費標準等，及時足額撥付義務教育經費，確保學校的正常運轉和校舍安全，確保教職工工資按照規定發放。

國務院和地方各級人民政府用于實施義務教育財政撥款的增長比例應當高于財政經常性收入的增長比例，保證按照在校學生人數平均的義務教育費用逐步增長，保證教職員工資和學生人均公用經費逐步增長。

**第四十三條** 學校的學生人均公用經費基本標準由國務院財政部門會同教育行政部門制定，并根據經濟和社會發展狀況適時調整。制定、調整學生人均公用經費基本標準，應當滿足教育教學基本需要

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可以根據本行政區域的實際情況，制定不低于國家標準的學校學生人均公用經費標準。

特殊教育學校（班）學生人均公用經費標準應當高于普通學校學生人均公用經費標準。

**第四十四條** 義務教育經費投入實行國務院和地方各級人民政府根據職責共同負擔，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負責統籌落實的體制。農村義務教育所需經費，由各級人民政府根據國務院的規定分項目、按比例分擔。

各級人民政府對家庭經濟困難的適齡兒童、少年免費提供教科書并補助寄宿生生活費。

義務教育經費保障的具體辦法由國務院規定。

**第四十五條** 地方各級人民政府在財政預算中將義務教育經費單列。

縣級人民政府編制預算，除向農村地區學校和薄弱學校傾斜外，應當均衡安排義務教育經費。

**第四十六條** 國務院和省、自治區、直轄市人民政府規範財政轉移支付制度，加大一般性轉移支付規模和規範義務教育專項轉移支付，支持和引導地方各級人民政府增加對義務教育的投入。地方各級人民政府確保將上級

人民政府的義務教育轉移支付資金按照規定用于義務教育。

**第四十七條** 國務院和縣級以上地方人民政府根據實際需要，設立專項資金，扶持農村地區、民族地區實施義務教育。

**第四十八條** 國家鼓勵社會組織和個人向義務教育捐贈，鼓勵按照國家有關基金會管理的規定設立義務教育基金。

**第四十九條** 義務教育經費嚴格按照預算規定用于義務教育；任何組織和個人不得侵占、挪用義務教育經費，不得向學校非法收取或者攤派費用。

**第五十條** 縣級以上人民政府建立健全義務教育經費的審計監督和統計公告制度。

## 第七章 法律責任

**第五十一條** 國務院有關部門和地方各級人民政府違反本法第六章的規定，未履行對義務教育經費保障職責的，由國務院或者上級地方人民政府責令限期改正；情節嚴重的，對直接負責的主管人員和其他直接責任人員依法給予行政處分。

**第五十二條** 縣級以上地方人民政府有下列情形之一的，由上級人民政府責令限期改正；情節嚴重的，對直接負責的主管人員和其他直接責任人員依法給予行政處分：

- (一) 未按照國家有關規定制定、調整學校的設置規劃的；
- (二) 學校建設不符合國家規定的辦學標準、選址要求和建設標準的；

(三) 未定期對學校校舍安全進行檢查，並及時維修、改造的；

(四) 未依照本法規定均衡安排義務教育經費的。

**第五十三條** 縣級以上人民政府或者其教育行政部門有下列情形之一的，由上級人民政府或者其教育行政部門責令限期改正、通報批評；情節嚴重的，對直接負責的主管人員和其他直接責任人員依法給予行政處分：

(一) 將學校分為重點學校和非重點學校的；

(二) 改變或者變相改變公辦學校性質的。

縣級人民政府教育行政部門或者鄉鎮人民政府未採取措施組織適齡兒童、少年入學或者防止輟學的，依照前款規定追究法律責任。

**第五十四條** 有下列情形之一的，由上級人民政府或者上級人民政府教育行政部門、財政部門、價格行政部門和審計機關根據職責分工責令限期改正；情節嚴重的，對直接負責的主管人員和其他直接責任人員依法給予處分：

(一) 侵占、挪用義務教育經費的；

(二) 向學校非法收取或者攤派費用的。

**第五十五條** 學校或者教師在義務教育工作中違反教育法、教師法規定的，依照教育法、教師法的有關規定處罰。

**第五十六條** 學校違反國家規定收取費用的，由縣級人民政府教育行政部門責令退還所收費用；對直接負責的主管人員和其他直接責任人員依法給予處分。

學校以向學生推銷或者變相推銷商品、服務等方式謀取利益的，由縣級人民政府教育行政部門給予通報批評；有違法所得的，沒收違法所得；對直接負責的主管人員和其他直接責任人員依法給予處分。

國家機關工作人員和教科書審查人員參與或者變相參與教科書編寫的，由縣級以上人民政府或者其教育行政部門根據職責權限責令限期改正，依法給予行政處分；有違法所得的，沒收違法所得。

**第五十七條** 學校有下列情形之一的，由縣級人民政府教育行政部門責令限期改正；情節嚴重的，對直接負責的主管人員和其他直接責任人員依法給予處分：

- (一) 拒絕接收具有接受普通教育能力的殘疾適齡兒童、少年隨班就讀的；
- (二) 分設重點班和非重點班的；
- (三) 違反本法規定開除學生的；
- (四) 選用未經審定的教科書的。

**第五十八條** 適齡兒童、少年的父母或者其他法定監護人無正當理由未依照本法規定送適齡兒童、少年入學接受義務教育的，由當地鄉鎮人民政府或者縣級人民政府教育行政部門給予批評教育，責令限期改正。

**第五十九條** 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有關法律、行政法規的規定予以處罰：

- (一) 脅迫或者誘騙應當接受義務教育的適齡兒童、少年失學、輟學的；
- (二) 非法招用應當接受義務教育的適齡兒童、少年的；
- (三) 出版未經依法審定的教科書的。

**第六十條** 違反本法規定，構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責任。

## 第八章 附 則

**第六十一條** 對接受義務教育的適齡兒童、少年不收雜費的實施步驟，由

國務院規定。

**第六十二條** 社會組織或者個人依法舉辦的民辦學校實施義務教育的，依照民辦教育促進法有關規定執行；民辦教育促進法未作規定的，適用本法。

**第六十三條** 本法自2006年9月1日起施行。

##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1963년 10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2호로 채택  
1995년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7호로 수정보충  
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은 공화국국민으로 되는 조건을 정하고 그들의 자주적 권리를 옹호보장하는 데 이바지한다.

**제 2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은 다음과 같다.

1. 공화국 창건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소유하였던 조선사람과 그의 자녀로서 그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자
2. 다른 나라 국민 또는 무국적자로 있다가 합법적절차로 공화국국적을 취득한자

**제 3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은 거주지나 체류지에 관계없이 공화국의 법적보호를 받는다.

**제 4 조**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은 공화국으로 귀국하거나 자유로이 오갈 수 있다.

**제 5 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한다.

1. 공화국국민사이에 출생한자
2.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공화국국민과 다른 나라 국민 또는 무국적자 사이에 출생한자

3. 공화국령역에 거주하는 무국적자사이에 출생한자
4. 공화국령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가 확인되지 않은 자

**제 6 조** 무국적자 또는 다른 나라 공민은 청원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제 7 조**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 사이에 출생한자의 국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4살에 이르지 못한 자의 국적은 부모의 의사에 따라 정하며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정한다. 이 경우 출생 후 3개월 이 되도록 부모나 후견인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공화국국적을 가진다.
2. 14살 이상 미성인의 국적은 부모의 의사와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정하며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후견인의 의사와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가 부모의 의사 또는 후견인의 의사와 다르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한다.
3. 성인으로 되는 자의 국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한다.

**제 8 조**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과 다른 나라 공민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국적을 공화국국적으로 정하려 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자녀가 거주하는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 외교 또는 령사 대표기관에 해당한 문건을 내야 한다. 공화국 외교 또는 령사 대표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 외교 또는 령사 대표기관이나 거주하는 나라의 해당 기관에 문건을 내야 한다.



**제9조** 부모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입적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제적되는 경우 자녀의 국적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1. 14살에 이르지 못한 자녀의 국적은 부모의 국적을 따라 변경된다.
2. 14살 이상 16살에 이른 자녀의 국적은 부모의 의사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된다. 이 경우 부모의 의사가 없거나 본인의 의사와 다르면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부모 중 어느 일방의 국적이 변경 되어도 그 자녀의 국적은 변경되지 않는다.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은 결혼이나 리혼 또는 립양이나 파양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제1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는 청원에 의하여 공화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에서 제적된 자는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상실한다.

**제1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국적과 관련한 실무적인 사업은 공민등록 기관이 한다. 공화국 령역 밖에서는 해당 나라에 주재하는 공화국 외교 또는 령사 대표기관이 한다.

**제15조** 공화국국적에로의 입적청원 또는 공화국국적에서의 제적청원에 대한 결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제16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적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에서 이 법의 내용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조약에 따른다.

## 8. 대한민국 국적법

법률 제10275호, 2010. 5.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인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자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수반 취득)** ①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부 또는 모에게

귀화를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隨伴)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準用)한다.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제11조(국적의 재취득)**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

여야 한다.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第一國民役)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 요건,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1.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제14조의4(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통보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관보 고시)**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뜻을 관보에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9조(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이 법에 규정된 신청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이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제20조(국적 판정)**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판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칙 <제10275호, 2010.5.4>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3항 중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4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국적선택 불이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에 대한 특례)**

①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다만, 남자는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였던 자가 이 법 공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때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국적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외국 국적의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6호 중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국적법』 제13조제1항”을 “『국적법』 제13조”,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한다.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이중국적자(二重國籍者)”를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로 한다.

## 9. 대한민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88호, 2010. 3.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기준 등)**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은 나이,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를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4.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호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체류국(滯留國)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5.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체류국이나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제13조·제14조·제19조·제19조의2·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및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는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안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등록대장)**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 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기록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학력 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14조(자격 인정)** ①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게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① 통일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생활정보제공·취업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지역적응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직업훈련)** ①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취업보호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보호 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때에는 그 취업보호대상자가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 담당 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상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

을 할 수 있다.

⑥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①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1.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2.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제17조제3항의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게 영농 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 실습 등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4(세제혜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특별임용)** ①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②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구·읍·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①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은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서울가정법원이 제2항에 따른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에게 송달을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른 공시송달(公示送達)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첫 공시송달 후에 하는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제4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제19조의3(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①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20조(주거지원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날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은 양도나 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및 생계 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착금품과 보로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문

상담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보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半期)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① 통일부장관은 탈북 청소년의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착 지원시설 내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교육기간,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료급여)**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사람: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의 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

③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다.

**제26조의3(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의4(자금의 대여 등)** 보호대상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상한액 등에 있어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7조(보호의 변경)**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신고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企圖)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나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하거나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보호변경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신고의무 등)**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5년간 주소, 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신고서 사본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비용 부담)**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호 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며,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임직원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 적응 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사업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7.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8.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 ⑤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에 제청으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명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⑦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 ⑧ 재단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항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⑨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⑩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8항에 따른 차입금
  3. 제9항에 따른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익금
- ⑪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 ⑫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 ⑬ 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⑭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⑮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⑯ 그 밖에 재단의 설립·구성·운영과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3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업무 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30조제14항을 위반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칙 <제10188호, 2010.3.26>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 제17조의4, 제18조제1항, 제18조의2, 제20조제2항, 제22조의2, 제24조의2, 제26조의4, 제27조제4항·제5항, 제30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북한이탈주민후원회 및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30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민법」 중 법인의 청산 및 해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0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해산된 후원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포괄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밖의 공부에 표시된 후원회의 명의를 재단의 명의로 본다.

③ 제30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선임된 후원회의 임직원은 재단의 임직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연구총서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리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중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외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김규륜 외	13,000원
2011-01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전성훈	14,500원
2011-02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이교덕 외	11,000원
2011-03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최진욱, 김진하	5,500원
2011-04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정영태	16,000원
2011-05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이규창, 정광진	8,000원
2011-06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김수암 외	12,000원
2011-07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박중철 외	10,000원
2011-08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홍우택 외	6,000원
2011-09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허문영, 마민호	10,000원
2011-10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배정호 외	11,000원
2011-11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박영호 외	13,500원
2011-12(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황병덕 외	15,500원
2011-12(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황병덕 외	13,500원
2011-12(III)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황병덕 외	18,000원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용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 학술회의총서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2011-01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4,000원
2011-02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8,500원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 협동연구총서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조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전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2011-14-01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500원
2011-14-02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황병덕 외	13,000원
2011-14-03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황병덕 외	12,000원
2011-14-04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황병덕 외	13,500원

2011-15-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1-15-02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박형중 외	10,000원
2011-15-03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박영호 외	13,000원
2011-15-04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장형수 외	9,500원
2011-15-05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이중무 외	9,500원
2011-15-06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이상준 외	9,000원

## 논총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1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2 (2011)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	박영호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1	김국신 외	17,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	김국신 외	17,500원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	손기웅 외	23,500원

## 기타

2010	김정일 현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박형중 외	17,000원

2011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임강택 외	6,500원
2011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조민 외	6,000원
2011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박종철 외	13,000원
2011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최진욱 외	13,000원
2011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최진욱 편저	12,0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김규륜 외	19,000원
2011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조한범 외	10,500원
2011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임강택 외	9,500원
2011	2011년 통일예측시계구축	박영호, 김형기	8,000원
2011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6,500원
2011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배정호 편	8,000원
2011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편	12,000원
2011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Ho, Kim Hyeong Ki	4,000원
2011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허문영 외	35,000원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 연례정보보고서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2011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6,000원

## 통일정보분석

## 비매품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 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2011-04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이규창
2011-05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임순희
2011-06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임강택, 최진욱
2011-07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2011-08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2011-09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최진욱 외
2012-01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외
2012-02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2012-03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배정호 외
2012-04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분석	박형중 외
2012-05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이금순, 한동호

### KINU 정책연구시리즈

### 비매품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2011-01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종철 외
2011-02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림금숙
2011-03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박종철 외
2011-04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조정현
2011-05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이윤식
2011-06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손기웅 외
2011-07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손기웅 외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의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룡,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 비매품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 Studies Series

### 비매품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 Wook, Lee Kyo Duk, Cho Jeong Ah, Lee Jin Yeong, Cha Moon Seok
---------	---

-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Am et al.

## 기타

## 비매품

-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e Meet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신청서

성 명		입금자 (입금일자)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		
연 락 처	전 화		내선 전화
	핸드폰		FAX
	전자메일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학생회원 (     )    일반회원 (     )    기관회원 (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보내주십시오.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E-Mail: pcm@kinu.or.kr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 김수암 · 조정현 · 유현정 편

 통일연구원

